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중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임길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김용오 예산분석관
김지수 예산분석관

지 원 | 정진아 행정실무관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 02) 6788-3770 | i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정무위원회 】

2026.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 예산안 개요 /3

- 1. 현 황 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6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7

II. 주요 사업 분석 / 9

〈일반회계〉

- 1. 이미 운영되고 있는 민정현장팀 및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 재검토 필요 9
- 2. 예비비를 사용한 신규 임시조직 설치 최소화 필요 13

[국가보훈부]

I. 예산안 개요 / 19

1. 현 황	1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6

II. 주요 사업 분석 / 28

〈일반회계〉

1.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 시내버스 미지급금 정산 완료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8
2. 청년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실수요를 고려한 예산 규모 재검토 필요 등	34
3. 보훈문화콘텐츠 제작비 지원대상 공익성 점검 및 중소 제작사 우선지원을 위한 제도설계 필요	39
4. 2027년으로 착공이 연기된 중앙보훈병원 시설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43
5. 독립의 전당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한 예산안 일부 조정 필요	47
6.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필요	51

[공정거래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55

- 1. 현 황 5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56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57

II. 주요 사업 분석 / 59

〈일반회계〉

- 1.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59

〈공익신고장려기금〉

- 2. 공익신고장려기금 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사업 편성 재검토 필요 등 64
- 3. 중소기업 소송대리지원 예산의 중복 편성 문제 69

[금융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75

- 1. 현 황 7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79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81

II. 주요 사업 분석 / 83

〈일반회계〉

1. K-민생지킴대출 사업의 지원대상 소득요건 설계 필요성 검토 83
2.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지원대상 세부기준 마련 필요 등 .. 87
3.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기준 구체화
필요 등 92

〈미래대응기금〉

4. 청년미래저축 사업의 지원대상 소득요건 폐지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등 98
5. 청년기회자금 사업의 기존 보증 상품(햇살론유스) 이용자 형평성 문제 등 ... 104
6. 청년미래보증자리론 공급 대상 주택유형(비아파트) 제한 계획 재검토
필요 111
7.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역별 우대금리 차등 적용 계획 재검토 필요 116
8. 우리아이자립펀드 가입요건(출생시점)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 보완
필요 등 121
9.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지원대상 사업장 사업화 가능성 점검 및
재구조화 절차 지원 필요 128
10. 국민성장펀드 운용 현황 관련 분석 133
 - 10-1. 국민성장펀드 운용 규모 확대에 따른 세부계획 마련 필요 134
 - 10-2. 유사 목적의 정책펀드·사업 간 중복투자 가능성 검토 필요 136
 - 10-3. 지역별·산업 분야별 균형 투자 및 중소기업 우선 지원 필요 140
 - 10-4. 국민성장펀드 운용 성과 점검을 위한 실효적인 성과지표 개발 필요 145

[국민권익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149

- 1. 현 황 14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50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5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155

- 1. 현 황 15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58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60

II. 주요 사업 분석 / 162

〈회계·기금 공통〉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익신고장려기금 사업의 문제점 162
 - 1-1.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 ... 163
 - 1-2.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편성의 부적절성 및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166
 - 1-3. 타 부처 유사사업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업운영 필요 172

〈일반회계〉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연사업 수행체계 개선 필요	175
2-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의 출연 비중 축소를 위한 형식적 사업분할 지양 및 사업수행 체계의 전반적 개편 필요	176
2-2. 출연사업비와 출연기관 기관운영경비를 구분한 예산편성 필요	187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R&D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90
3-1.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의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구체화 및 과제 중첩 방지 필요	191
3-2. 개인정보 R&D 전문기관의 KISA 단일 지정·운영체계 재검토 필요	195
4.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사업의 수행체계 및 예산편성 개선 필요	198
5.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사업의 ‘AX 플랫폼 구축 및 정보시스템 통합’ ISP의 추진시기 및 과업범위 재검토 필요	205
6. 개인정보 교육지원 사업의 수행 및 운영방식 개선 필요	212
6-1. 개인정보 교육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자부담 도입 검토 필요	213
6-2. 교육사업 영역의 계약금액 산정·관리체계 및 수행방식 개선 필요	219
7.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의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AX·결합지원 기능의 단계적 확대 필요	224
8.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정보화) 사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과제 선정 시 신규 분야 및 이용자 편익 고려 필요	228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3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원(12.5%) 증가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45	279	279	314	35	12.5
합 계	445	279	279	314	35	12.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9,157억 1,3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27억 5,700만원(7.4%)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2억 4,300만원(10.7%) 증가하였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어 254억 8,600만원 감소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43,588	827,470	827,470	915,713	88,243	10.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910	25,486	25,486	-	△25,486	순감
합 계	655,498	852,956	852,956	915,713	62,757	7.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세입·세출예산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3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원(12.5%) 증가하였다.

[202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45	279	279	314	35	12.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합 계	445	279	279	314	35	12.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9,158억 9,200만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625억 9,800만원(7.3%)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0억 8,400만원(10.6%) 증가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54억 8,600만원 감소하였다.

[202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38,286	827,808	827,808	915,892	88,084	10.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1,910	25,486	25,486	-	△25,486	순감
합 계	650,196	853,294	853,294	915,892	62,598	7.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다.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
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1억 7,900만원이 전출된다.

(단위: 억원)

일반회계	
수입 3	지출 9,159

→ 전출 1.7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 총계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정부출연금과 인건비·기본경비의 비중이 높고(전체 9,158억 9,200만원 중 7,585억 7,800만원(82.8%)이 정부출연금 예산이며, 그 외 본부 예산은 1,573억 1,400만원 이고 이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878억 9,600만원으로 55.9%의 비중을 차지) ② 5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인재·공간을 연계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14억 4,700만원), ③ 존속기한이 만료된 검찰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다(2026년 17억 3,700만원).

202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무총리비서실 경비성 예산과 기존 세부사업의 현장 청문 예산을 활용하여 민정현장팀과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 세출사업을 별도로 편성할 실익은 크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예비비 사용을 통한 새로운 임시조직 설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배정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6개 사업, 70억 5,600만원 규모이다.

그 중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사업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항공사고 조사 및 분석,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항공사고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2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사업은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인재·공간을 연계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4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6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2,750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단 운영	242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	1,559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1,447
	통합특별지원단 운영	636
	민정·민원 대응체계 강화	422
합 계		7,056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사업 등이 있다.

①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은 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증액되었고 ②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사업은 신규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와 클라우드 사용료가 반영되어 증액되었으며, ③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존속기한이 연장(~'31.2월)됨에 따라 전년 2개월 대비 12개월 예산분을 편성한 내역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개)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303	303	1,848	1,545	509.9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87	87	457	370	425.3
	규제 정보화(정보화)	899	899	1,831	932	103.7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9,354	9,354	13,270	3,916	41.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I

주요 사업 분석

1

이미 운영되고 있는 민정현장팀 및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민정·민원 대응체계 강화 사업¹⁾은 국무총리비서실 내 민정실의 민정 현장 청문 및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운영 업무를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4억 2,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민정·민원 대응체계 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민정·민원 대응체계 강화	-	-	-	422	422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8월말 기준 16명으로 구성된 민정현장팀을 운영하고 있다. 민정현장팀의 주요 역할은 민생현안 및 국정과제 등에 대한 현장·국민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수렴하여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것이다.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는 정책적 영향력이 큰 미해결 민원의 합리성 검토 및 개선 권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11월 제1차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2026년 9월말 기준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2027년 예산안 4억 2,200만원은 민정현장팀 업무 확대에 필요한 경비성 예산 3억 700만원과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월 1회 운영을 위한 실무 인건비와 경비성 예산 1억 1,5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된 것이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7037-304

[민정·민원 대응체계 강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민정·민원 대응체계 강화: 4억 2,200만원
 = 민정 현장 청문 3억 700만원 +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운영 1억 1,500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분석의견

국무총리비서실 경비성 예산과 기존 세부사업의 현장 청문 예산을 활용하여 민정현장팀과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 세출사업을 별도로 편성할 실익은 크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등 기존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국정과제 현장 점검·청문 업무와의 중복 방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은 신상필벌을 위한 감사 기능 강화 및 부처 후속조치 점검 필요성 등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사항²⁾에 대한 조치로서 민정 현장 청문 업무를 확대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 청문의 빈도와 범위가 늘어나면서 현장팀의 관외출장이 증가³⁾하였고, 관련 예산으로 9월말 기준 6,200만원이 집행되었다.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의 경우 민원 대응을 강조한 국무회의⁴⁾ 내용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총 다섯 차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기초수급자 전입 시 도시가스 감면료 신청 지원, 고용노동부 지정·시행 정부인정훈련 학원공제보험 가입 대체 등의 안건을 논의·처리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에서 1,020만원을 집행하였다.

2) “신상필벌이 정말로 중요하다.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유능한 감사 인력을 투입해 최대한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25.12.16. 제54회 국무회의)

“별도 지시가 잘 전달됐는지, 소속 기관과 부처·부서들의 업무보고 후속 조치를 잘 챙겨달라”(‘25.12.23. 제55회 국무회의)

3) (‘24) 월평균 2일 → (‘25) 월평균 20일 → (‘26) 월평균 29일

4) “국민 민원을 경시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 한다”(‘25.6.19. 제26회 국무회의)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자문회의 개최내역]

회차	주요 안건	집행내역
1차 (‘25.11.27.)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요건 폐지, 자동차 차대번호 타각 수수료 인하 등 주요 민원(5건)의 개선방안 권고	일반수용비 210만원
2차 (‘26.1.26.)	기초수급자 전입시 도시가스 감면료 신청 지원, 국립·공공기관 운영시설 관람권 차별표기 폐지 등 주요 민원(4건) 개선	일반수용비 210만원
3차 (‘26.3.27.)	고용노동부가 지정하여 시행중인 정부인정훈련(비위탁교육)은 학원공제보험 가입으로 대체하도록 행정지도 즉시시정, LH공사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조정 기준 사전공고 및 객관적 기준 마련 등 주요 민원(2건) 개선	일반수용비 210만원
4차 (‘26.5.26.)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응시료 개선, 휴대폰 없는 14세 이상 청소년의 본인확인 개선, 전기요금 카드결제 수납 범위 확대 등 주요 민원(4건) 개선	일반수용비 210만원
5차 (‘26.9.1.)	무인발급기 등기사항 증명서 카드결제 시범운영, 국내 휴대전화 없는 해외 장기체류자 및 재외동포가 온라인으로도 피해구제 신청 가능토록 적용, 14년 경력 결혼이주여성의 전문성·근속 반영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 주요 민원(3건) 개선	일반수용비 180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처럼 국무총리비서실이 국무회의 안건을 비롯한 정책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청문 업무를 수행하고 자문회의를 운영한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다만 살펴본 바와 같이 별도 세부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5년부터 이미 민정 현장 청문 및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운영 업무가 수행되어 온 상황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 세출사업으로 신규 편성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비서실은 민정현장팀 업무를 확대하고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를 활성화(월 1회 운영 계획)하기 위한 신규사업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무총리비서실은 민정 현장 청문 업무와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운영 업무를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조직 운영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비서실 기본경비 등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는데,⁵⁾ 이는 국

5)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이 필요해진 상황에 대응하여 2025년 예비비로 검찰개혁추진단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6년 예비비로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 사업과 통합특별시지원단 사업을 신규 편성한 바 있다.

무회의 안전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등은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한 민정실의 통상적인 역할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판단으로 민정실의 경비성 예산을 집행하여 현장 청문 및 위원회 운영 업무를 수행해온 것을 고려할 때 현장 청문 기능 확대와 자문회의 개최 활성화 등을 위해 민정실의 경비성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성과는 별개로, 해당 업무를 별도의 세출사업으로 분리하여 신규 편성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세부사업에 국정과제 현장점검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으며,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세부사업에도 주요 국정과제 집행현장 청문 예산이 편성⁶⁾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무 중복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무회의 안전 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현정부 국정과제와 유사한 취지로 제기 되는 경우 같은 안전에 대해 개별 사업부서의 현장 청문이 각각 진행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 편성된 기존 사업의 현장 청문 결과를 민정실에 공유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은 그 외 안전에 대한 현장 청문을 담당하는 등 업무를 구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현장 청문 예산]

소관	세부사업	주요 내용	예산 규모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국정과제 현장 점검	여비 3,200만원 업무추진비 1,800만원
국무총리비서실 정부협력비서관실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주요국정과제 집행현장 청문	여비 1,191만원 업무추진비 2,268만원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신규) 민정·민원 대응체계 강화	민정 현장 청문	여비 1억 3,200만원 업무추진비 6,800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결론적으로 민정 현장 청문 확대 및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활성화 취지는 인정되나,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위한 별도의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무총리비서실의 민정 현장 청문 업무와 국무조정실 기존 사업의 국정과제 현장 점검 업무 사이의 중복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연계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실제로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사업에 편성된 주요 국정과제 집행현장 청문 예산 중 일부를 2026년 민정 현장 청문에 사용하였다.

가. 현 황

국토공간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사업¹⁾은 국가균형성장 정책 실무를 지원하는 임시조직 운영 예산으로, 2027년 예산안은 14억 4,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국토공간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토공간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	-	1,054 (예비비)	1,447	1,447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2월 6일 제정된 「국토공간 대전환 범 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근거하여 2026년 5월 4일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을 출범하였다. 추진단은 국토공간 재설계, 전략 산업 육성, 지역 자립기반 강화 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실무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지원단 운영 사업²⁾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실무를 처리하는 임시조직 운영 예산으로, 2027년 예산안은 6억 3,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통합특별시지원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통합특별시지원단 운영	-	-	367 (예비비)	636	636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3월 5일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26년 7월 1일 통합특별시지원단을 출범하였다. 지원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사무처리, 중앙-지방간 정책 조정 지원 등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예비비 사용을 통한 새로운 임시조직 설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배정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토공간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과 통합특별시지원단(이하 “지원단”) 출범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집행하였다. 2026년 8월말 기준 추진단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10억 5,400만원 중 2억 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지원단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3억 6,700만원 중 1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다.

2) 코드: 일반회계 7035-329

[추진단 및 지원단 2026년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배정일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률
추진단	2026.3.23	1,054	209	19.8
지원단	2026.6.30.	367	124	33.8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예비비 편성·집행 필요성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토공간대전환 추진전략과 정부의 행정통합 계획 등은 2026년 연내 발표된 것으로서 2026년 예산안 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소요이며,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신속한 실무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통한 조직 신설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균형성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예산안에 없던 지출 소요를 충당할 불가피성이 있더라도, 신규 조직 출범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보인다.

예비비 편성 요건으로 예측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을 요구하는 것은 예비비가 본예산과 달리 국회의 사전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비로 기존 사업 부족액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을 편성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신규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관련하여 추진단과 지원단 신설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가 주로 회의 개최, 현장방문, 간담회 등에 집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예비비 편성의 시급성과 보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은 법정 의무지출 소요나 지원이 시급한 사업 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국무총리 통상 업무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비성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6년 예비비를 활용한 추진단·지원단 주요 활동내역]

구분	활동내역
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주재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협의회 개최(4회) - 포스텍 현장 방문(5.22.) - 국토대전환 관련 광역단체장 당선자 간담회(6.15.) - 충청권 지자체장 오찬간담회(7.30.) - 대전 나노과학기술원 현장방문(7.30.) - 국토균형성장×AI성장 해법 토론회(7.2.) - 국책연구기관 간담회(7.7.) -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9.2.)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특별시지원단 출범(7.1.) -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7.1.) - 지원·실무 위원 소통 및 의견 수렴(7.15~7.16.) - 통합시·교육청 면담 및 업무 협의(7.15.) -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실무위원회 개최(8.27.) -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개최(8.31.) - 지원위·실무위원회 간담회 개최(9.17)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따라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본예산에 없던 신규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국회 재정통제의 필요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재정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국가보훈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으로 구성된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890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136억원(56.1%)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0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억원, 보훈기금 668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13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8,778	10,014	10,014	10,836	822	8.2
- 일반회계	8,718	9,846	9,846	10,735	889	9.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	67	67	-	△67	순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4	101	101	101	0	0.0
기 금	75,097	192,522	192,522	78,115	△114,407	△59.4
- 보훈기금	63,890	183,015	183,015	66,795	△116,220	△63.5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1,207	9,507	9,507	11,320	1,813	19.1
합 계	83,875	202,536	202,536	88,951	△113,585	△56.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7조 2,190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314억원(7.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조 9,860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5억원, 보훈기금 1,256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048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303,580	6,463,271	6,463,871	6,988,574	524,703	8.1
- 일반회계	6,291,954	6,451,530	6,452,130	6,986,032	533,902	8.3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242	9,288	9,288	-	△9,288	순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84	2,453	2,453	2,542	89	3.6
기 금	231,534	223,745	223,745	230,456	6,711	3.0
- 보훈기금	123,620	121,763	121,763	125,617	3,854	3.2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07,914	101,982	101,982	104,839	2,857	2.8
합 계	6,535,114	6,687,016	6,687,616	7,219,030	531,414	7.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국가보훈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국가보훈부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0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8억원(8.2%)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억원이다.

[2027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718	9,846	9,846	10,735	889	9.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	67	67	-	△67	순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4	101	101	101	0	0.0
합 계	8,778	10,014	10,014	10,836	822	8.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84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270억원(8.0%)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조 820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5억원이다.

[2027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384,537	6,545,284	6,545,884	7,082,039	536,155	8.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242	9,288	9,288	-	△9,288	순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84	2,453	2,453	2,542	89	3.6
합 계	6,396,163	6,557,025	6,557,625	7,084,581	526,956	8.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국가보훈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으로 구성된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667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1,367억원(19.4%) 감소하였다. 기금별로는 보훈기금 4,100억원,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1,567억원이다.

[2027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보훈기금	305,256	552,035	552,035	409,961	△142,074	△25.7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181,090	151,369	151,369	156,714	5,345	3.5
합 계	486,346	703,404	703,404	566,675	△136,729	△19.4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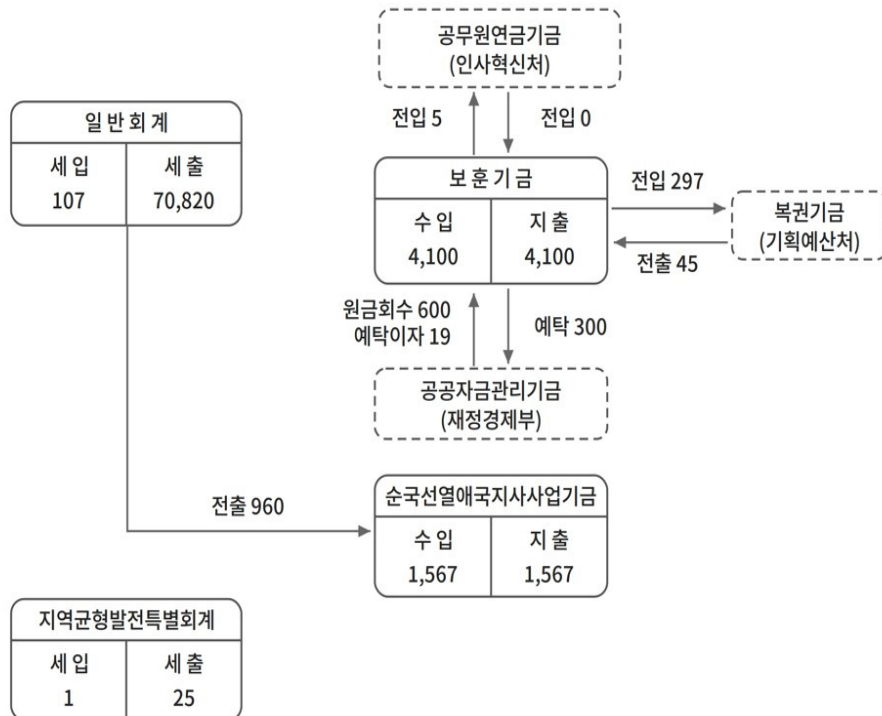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국가보훈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960억원이 전출된다.

보훈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00억원을 예탁하고, 619억원의 예탁 원금 및 예탁이자를 상환받는다. 또한 복권기금으로 45억원을 전출하고, 297억원을 전입받는 한편, 공무원연금기금으로 5억원이 전입된다.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2027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보상금 인상과 함께 보상격차 완화를 위한 추가인상 및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범위를 최소 2대(代)까지 확대하는 등 합당한 보상 실현을 위해 보상금·수당 예산이 증액되었고(2026년 5.2조원 → 2027년 5.6조원), ② 위탁병원 확대 및 준보훈병원 지정에 따른 진료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169억원), 특히 준보훈병원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다(94억원). ③ 효창공원 일대를 일상·문화·보훈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6억원), ④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각 묘지별 묘역관리 예산을 통합하고 유족 등 방문객을 위한 안전관리 등도 강화한다(89억원). ⑤ 또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역과 동시에 실손보험 가입을 지원한다(75억원).

2027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은 정부의 관행적 예산 편성으로 누적되어 온 시내버스 보조금 미지급액 우선 정산으로 인해 2026년에도 예산 부족에 따른 추가 미지급액 발생이 확실한 상황이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 예산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가보훈부는 청년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예상 가입자를 2025년 전역자의 절반(하반기 예상 전역인원)으로 설정하면서 가입율을 100%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므로, 국가보훈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의 적정 재원 규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역병 복무 현황과 잔여 복무기간 등을 바탕으로 전역 예정자 수를 보다 면밀하게 추산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인원의 가입 수요를 사전적으로 조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6년 착공이 예정되어 있던 중앙보훈병원 시설개선 사업의 설계가 지연되면서 착공 시점이 2027년으로 연기되고 2026년 예산에 편성된 공사비 전액이 불용될 예정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착공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과정 전반에 걸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신규 공사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26년 6월 착수한 독립의 전당 건립 공사가 2026년 7월 중단되어 완공 시점이 연기되고 이월액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황임에도 공사 중단 이전에 수립된 연차별 투입계획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27년 예산 투입 규모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123억원 규모이다.

보훈문화생태계기반활성화 사업은 민간의 보훈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보훈문화의 경쟁력·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국민친화적국립묘지전환 사업은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묘역관리 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AI보훈심사지원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은 신속한 보훈심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절차를 지능화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5개)	보훈문화생태계기반활성화	1,450
	국립효창독립공원조성	620
	국민친화적국립묘지전환	8,902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개최지원	627
	AI보훈심사지원시스템구축(정보화)	728
합 계		12,327

자료: 국가보훈부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보상금,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국립4.19묘지, 보훈복지시설건립 등이 있다.

① 보상금 사업은 지급단가 인상과 함께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범위를 최소 2대(代)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위탁병원진료 사업은 독립유공자 등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지원연령을 10세(75→65세) 하향하고, 강원·제주지역 준보훈병원의 조기정착을 위해 증액되었다. ③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사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묘역조성 및 디지털 추모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고, ④ 국립4.19묘지 사업은 묘지 내 생태호수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⑤ 제대군인사회복지지

원 사업은 청년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역과 동시에 실손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증액되었다.

[국가보훈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0개)	보상금	3,717,505	3,717,505	3,976,418	258,913	7.0
	생활조정수당	120,134	120,134	136,122	15,988	13.3
	6.25자녀수당	419,803	419,803	471,435	51,632	12.3
	보훈병원진료	450,483	450,483	568,253	117,770	26.1
	위탁병원진료	269,486	269,486	336,538	67,052	24.9
	제대군인의료지원	2,301	2,301	3,601	1,300	56.5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1,286	1,286	3,017	1,731	134.6
	국립4.19묘지	851	851	2,095	1,244	146.2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15,233	15,233	22,434	7,201	47.3
	보훈정책개발	1,161	1,161	2,086	925	79.7
보훈기금 (1개)	보훈복지시설건립	6,031	6,031	12,331	6,300	104.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1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 시내버스 미지급금 정산 완료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¹⁾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7억 3,100만원이 감액된 210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교통시설 이용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통시설 이용지원	11,258	21,776	21,776	21,045	△731	△3.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동 사업은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의 버스·고속열차·내항여객선 감면이용에 따른 비용을 국비로 보조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생하는 민간의 경영 손실 등의 부담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PSO 사업²⁾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교통수단에 따라 신용카드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철도공사, 개별 내항여객선사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2139-318

2) 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의무 보상제도

시내버스는 대상자의 등급에 관계없이 무임이고, 시외·고속버스 및 내항여객선의 경우 등급에 따라 무임 또는 감면액이 적용되며, 고속열차의 경우 연간 6회 무임 이용 후 50% 감면액이 적용된다.

[교통시설 이용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대상	감면율	비고
버스	시내(농어촌)버스 *좌석·광역(급행) ·마을버스 제외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무임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시외버스	·애국지사 ·1~5급 상이 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70% 감면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6~7급 상이 국가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30% 감면	
	고속버스 * 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	·애국지사 ·1~5급 상이 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50% 감면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6~7급 상이 국가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30% 감면	
	열차 (KTX·SRT 포함)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지원공상, 재해부상자	연간 6회 무임 후 50% 감면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장해)자는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내항 여객선		·애국지사 ·1~5급 상이 국가유공자 ·1~7급 5·18민주부상자	무임	육상거주자: 연 6회 도서거주자: 연 12회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6~7급 상이 국가유공자 ·8~14급 5·18민주부상자	50% 감면	

자료: 국가보훈부

2027년도 예산안 210억 4,500만원은 민영버스 이용 지원금 188억원, 고속철도 이용 지원금 21억 6,300만원, 내항여객선 이용 지원금 8,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민간경상보조(320-01) : 21,045백만원
 - 가. 민영버스 (18,800백만원)
 - 무임이용 지원

$$119,748\text{원}(1\text{인당 버스지원액}) \times 109,588\text{명}(\text{대상자 수})$$

$$= 13,123\text{백만원}$$
 - 시내버스 정산 소요액

$$= 5,677\text{백만원}('25\text{년 정산})$$
 - 나. 고속철도 (2,163백만원, '26년 동)
 - 무임이용지원

$$6,877('25\text{년 감면액}) \times 1(\text{운임인상률}) \times 0.3145(\text{결손금 보전율}) = 2,163\text{백만원}$$
 - 다. 내항여객선 (82백만원, '26년 동)

자료: 국가보훈부

나. 분석의견

정부의 관행적 예산 편성으로 누적되어 온 시내버스 보조금 미지급액 우선 정산으로 인해 2026년에도 예산 부족에 따른 추가 미지급액 발생이 확실한 상황이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 예산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 이용대상 중 민영버스는 시외·고속버스와 시내버스로 구분된다. 국가보훈부는 2022년까지 민영버스 전체에 대한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을 통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을 통해 감면액 전액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즉,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민영버스 이용액 중 시내버스 이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확인 가능한 실제 이용액 100%를 정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영버스 이용 보조 방식 간 비교]

연도	시외·고속버스	시내버스
~ 2022	계약에 의한 정액 보조	
2023 ~	계약에 의한 정액 보조	이용액 전액 사후 보전

자료: 국가보훈부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시내버스 이용액 보전 방식이 과거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이용액 전체를 사후 보전하는 것으로 변경된 후에도 민영버스 이용지원 예산을 종전과 같은 규모로 2025년까지 편성해왔다.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따로 구분하여 1인당 지원액과 대상자 수 예상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매년 같은 규모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온 것은 사실상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예산 규모를 바탕으로 산출 근거를 역산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민영버스 보조 예산 편성 내역 및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산출내역
2022	8,484	2019년 버스감면액 × 평균운임인상률 × 보조율 0.43346
2023	8,484 (7,200)	전년 동 (1인당 지원액 63,112원 × 이용자 수 114,083명)
2024	8,484 (7,200)	전년 동 (1인당 지원액 64,248원 × 이용자 수 112,066명)
2025	8,484 (7,200)	전년 동 (1인당 지원액 65,097원 × 이용자 수 110,604명)

주: 괄호 안은 민영버스 중 시내버스 지원 방식 변경 후 시내버스 지원액을 별도 편성한 규모임

자료: 국가보훈부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신용카드사에 지급해야 할 사후 정산 보전금의 미지급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지급금 발생 규모는 2023년 40억 1,700만원, 2024년 59억 900만원, 2025년 56억 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내버스 보조금 미지급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급 소요 발생 규모	보조금 집행액		미지급액
		전년도 미지급액 우선 집행액	당해연도 지급 소요 집행액	
2023	11,154	-	7,137	4,017
2024	13,088	4,017	3,163	9,926
2025	12,867	7,190	-	15,603

자료: 국가보훈부

매년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도 미지급액을 우선 정산함에 따라 당해연도 지급소요를 감당하지 못해 미지급액이 누적되자, 국가보훈부는 2023년, 2024년 미지급액 정산 규모에 해당하는 40억 1,700만원과 59억 900만원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5년도 미지급액 정산 규모에 해당하는 56억 7,700만원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즉 이번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된다면 2025년까지의 미지급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되어 누적된 부족액은 충당된다.³⁾

[2026·2027년 시내버스 보조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규모	산출내역
2026년도 예산	18,247	무임이용 지원: 8,321백만원 시내버스 정산 소요액: 4,017백만원('23년 미지급) + 5,909백만원('24년 미지급) = 9,926백만원
2027년도 예산안	17,516	무임이용 지원: 11,839백만원 시내버스 정산 소요액 = 5,677백만원('25년 미지급)

주: 괄호 안은 민영버스 중 시내버스 지원 방식 변경 후 시내버스 지원액을 별도 편성한 규모임

자료: 국가보훈부

다만, 2026년 예산에도 이전까지의 미지급액 정산 소요 외 당해연도 지급을 위한 예산은 최근 실적에 비해 과소편성되었기 때문에 2026년에도 미지급액 발생이 반복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시내버스 이용지원 지급 소요는 2024

3) 2023년 미지급액과 2024년 미지급액을 2026년에 정산하고 2025년도 미지급액을 2027년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전년도 미지급액을 우선 정산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액을 2026년과 2027년에 나누어 충당하고자 각 연도 미지급액 규모만큼을 구분하여 반영한 것이다.

년 130억 8,800만원, 2025년 128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026년 당해연도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83억 2,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미지급액 예상치를 약 46억 3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은 2027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시내버스 요금 감면분을 우선 부담하고 국가로부터 사후 보전을 받아야 하는 민간사업자(신용카드사)에 대한 미지급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2026년 역시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액 발생이 분명함에도 이를 정산하기 위한 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보훈행정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국가보훈부로 하여금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2026년 발생한 미지급금을 조속히 정산하라는 시정요구가 채택된 상황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통시설이용지원 사업 관련 정무위원회 시정요구]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국가보훈부는 기획예산처와 즉각 협의하여 2026년 발생한 미지급금을 조속히 정산할 것	시정	국가보훈부

자료: 2025회계연도 결산 정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내버스 보조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운용실적과 2026년도 예상 미지급액 등에 대한 제반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수반되는 재원 규모 증가가 확실한 상황에서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온 예산 편성 방식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실수요를 고려한 예산 규모 재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¹⁾은 중·장기복무 군인이 전역 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무료법률구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72억 100만원이 증액(47.3%)된 224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다.

내역사업인 청년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제대군인의 실손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7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청년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16,606	15,233	15,233	22,434	7,201	47.3
청년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	-	-	7,500	7,5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가 전역과 동시에 5세대 실손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정부 지원이 제공되는 실손보험 가입기간은 현역병 최저 복무기간²⁾인 1년 6개월로 설계되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4160-390

2) 육군·해병대(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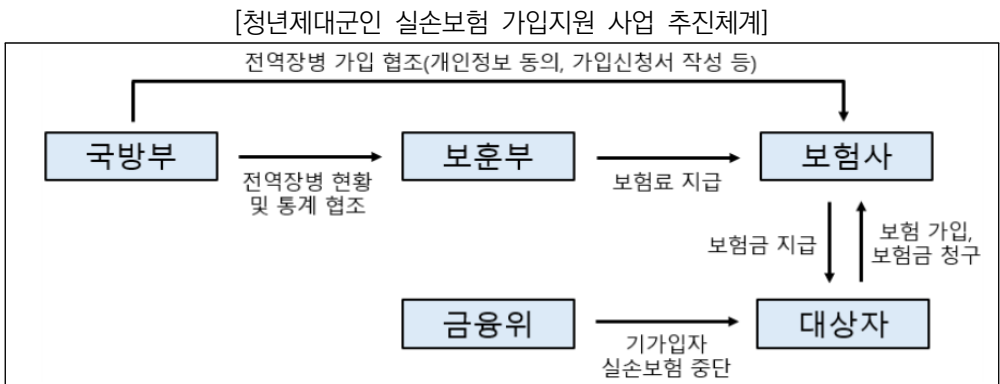
동 사업의 2027년 예산안 75억원은 의무복무 군인 17만 8,575명의 절반을 대상으로 1년 6개월치 보험료 8만 4,000원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

[청년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 보험금(320-04) : 7,500,000천원
-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7,500,000천원 = 178,575명×1/2×84,000원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전역 대상 의무복무 군인의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전역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사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 국가보훈부

나. 분석의견

첫째, 국가보훈부는 청년제대군인 실손보험 예상 가입자 수를 2025년 전역자의 절반(하반기 예상 전역인원)으로 설정하면서 가입률을 100%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의 적정 재원 규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역병 복무 현황과 잔여 복무기간 등을 바탕으로 전역 예정자 수를 보다 면밀하게 추산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인원의 가입 수요를 사전적으로 조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매년 초 국방부로부터 전년도 전역 인원 현황을 회신받고 있는데, 동 사업 2027년 예산안의 편성 근거로 사용된 지원대상 인원 17만 8,575명은 2025년 현역병·상근예비역 전역 인원이 적용되었다. 즉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 지원 대상인 2027년 7월 이후 전역 인원을 추산하기 위해 현재 기준 현역병·상근예비역의 복무 현황과 해당 인원의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과거의 통계 자료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연도별 의무복무 군인 전역 현황]

(단위: 명)

연도	전역 인원			2027 지원 인원
	2023	2024	2025	
현역병	188,634	184,456	174,518	174,518
상근예비역	7,861	5,022	4,057	4,057
합 계	196,495	189,478	178,575	178,575

자료: 국가보훈부

또한, 2027년 7월 이후 전역 예정인 의무복무 군인 중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기존 실손보험이 없더라도 전역과 동시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 군인에 대한 고려 없이, 앞서 살펴본 방식으로 추산한 17만 8,575명 중 하반기 전역(1/2 적용) 예정 인원 전체를 가입 지원 대상으로 설계하였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법정 가입 의무가 없는 자율 가입 대상 보험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역 예정 인원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초기('26.5. 출시)인 시점으로 아직 가입 통계가 확보되지 않아 모든 의무복무 군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나, 향후 가입률 통계 등을 기반으로 지원대상 인원 추계를 보완해나갈 예정으로 설명하였다. 가입을 원하지 않는 전역 예정자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 22세 남성의 76.4%가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다는 통계³⁾를 참고하였으며, 1년 6개월간의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해주는 혜택을 고려할 때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3) 보험개발원 통계자료(2026.10.)

다만 2025년말 기준 현역병의 86.3%가 21세 이하로 나타나는 등 지원대상 평균연령이 2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전역 예정자의 전체 가입을 전제로 동 사업에 대한 수요를 추산하는 것은 여전히 무리가 있다. 전역 예정자 중에는 실손보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소득이 보장되는 취업 이후 시점으로 가입을 유보하고 싶은 인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현역병의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3		2024		202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9세	4,697	5.5	5,824	7.0	7,391	8.5
20세	54,382	63.7	50,046	60.0	50,553	58.2
21세	14,853	17.4	16,251	19.5	17,052	19.6
22세	4,576	5.4	4,696	5.6	5,041	5.8
23세	2,507	2.9	2,321	2.8	2,399	2.8
24세	1,501	1.8	1,445	1.7	1,413	1.6
25세 이상	2,808	3.3	2,810	3.4	3,040	3.5
합계	85,324	100.0	83,393	100.0	86,889	10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이처럼 전역 예정 의무복무 군인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설계하게 되면 실적 달성을 위해 사실상 가입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우려도 있다. 전역 예정자 가입 독려 업무는 국방부가 수행하기 때문에 의무복무 군인 신분인 전역 예정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실제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의 적정 재원 규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현역병 복무 현황과 잔여 복무기간, 장기복무 지원율 등을 바탕으로 전역 예정자 수를 보다 면밀하게 추산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인원의 가입 수요를 사전적으로 조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⁴⁾

4)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보다 면밀한 가입 수요 예측을 위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가입 의향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둘째, 법적 근거 마련, 사업자 선정 및 보험 상품 개발 등 사전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때문에 2027년 7월 이후 전역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한정된 생활공간에서 같은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함께 희생하고 있는 현역병들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업 지원대상 인원의 실손보험 가입비(18개월 보험료)는 하반기 전역자에 대해서만 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실손보험 가입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⁵⁾이 필요하고, 2027년도 예산안 확정 후 보험상품 운용 사업자 선정, 보험 상품 개발 및 국방부를 통한 가입 협조 등의 사전절차 진행을 고려할 때 2027년 7월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전역 예정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수행하는 지원 사업의 경우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 있긴 하나, 동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설정된 전역 예정자는 현시점에서 의무복무 군인이라는 동일한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음에도 전역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한정된 공간에서 신분상의 제약을 바탕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현역병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 사업의 지원 기준인 ‘2027년 7월 이후 전역자’라는 설계는 일반적으로 정책지원 사업에서 주로 설정하는 연령, 소득수준 등의 요건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 마련, 사업자 선정 및 상품 개발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희생을 치르고 있음에도 먼저 입영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무복무 중인 군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2027년 7월 이후 전역자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신규 지원사업 추진 시 대상자 간 지원 필요성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요건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실손보험 가입 지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훈문화콘텐츠 제작비 지원대상 공익성 점검 및 중소 제작사 우선지원을 위한 제도설계 필요

가. 현 황

보훈문화생태계기반활성화 사업¹⁾의 내역사업인 민간보훈콘텐츠 발굴 및 지원 사업은 민간 제작자가 직접 기획·추진하는 보훈콘텐츠 제작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제작비용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2억 5,000 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²⁾

[2027년도 민간보훈콘텐츠 발굴 및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훈문화생태계기반활성화	-	-	-	1,450	1,450	순증
민간보훈콘텐츠 발굴 및 지원	-	-	-	1,250	1,25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공익적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보훈콘텐츠가 콘텐츠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훈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을 편성하였다. 보훈콘텐츠는 일반 문화콘텐츠에 비해 시장성, 수익성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추진된 것이다.

동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문화콘텐츠 진흥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위탁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자가 민간의 콘텐츠 제작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3145-406

2) 동 내역사업 외 나머지 예산은 사업 홍보,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기타 경비성 사업비다.

제작 지원은 방송영상콘텐츠, 콘텐츠 IP 기획·개발, 공연예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 4개 분야에 나누어 지원될 예정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5,000만원, 콘텐츠 IP 기획·개발비 3,000만원, 공연예술 제작비 3,000만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비 1,500만원이 각 10팀에 대해 반영되었다.

[민간보훈콘텐츠 발굴 및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민간보훈콘텐츠 발굴 및 지원: 1,250백만원
- 방송영상콘텐츠: 50백만원 × 10팀
- 콘텐츠 IP 기획·개발: 30백만원 × 10팀
- 공연예술: 30백만원 × 10팀
-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15백만원 × 10팀

자료: 국가보훈부

나. 분석의견

국가보훈부가 동 사업을 통해 보훈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훈콘텐츠가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적·교육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는 작품을 선별하되, 상대적으로 제작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작사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가 보훈문화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은 2024년과 2025년 이미 수행된 바 있다. 당시 민간위탁사업자로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되었으며, 2년간 32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총 29억 5,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2024·2025년도 보훈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분야	지원액
2024	IP 기획 개발 지원	193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	576
	영화·드라마 유통 마케팅 지원	400
	웹툰	140
	뮤지컬, 연극	208
2025	IP 기획 개발 지원	100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658
	영화·드라마 후반제작 및 유통 마케팅 지원	528
	공연예술 제작 지원	154
합 계		2,957

자료: 국가보훈부

그러나 2026년 예산안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과의 중복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정부 재정투입 우선 순위 조정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었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시장성과 수익성이 낮은 보훈 관련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기 어렵고, 보훈문화콘텐츠 지원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2027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보훈문화콘텐츠 확산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이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해당 분야 콘텐츠 제작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동 사업 지원을 통해 보훈문화콘텐츠의 자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작품 선정 과정에서 공익적·교육적 가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중소 제작사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으로 보훈문화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려는 목적은 보훈문화콘텐츠가 시장에서 갖는 상업적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한계를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제작 역력이 충분한 상업적 콘텐츠나 대형 제작사·배급사의 콘텐츠를 지원하게 되면 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보훈문화와 관련성이 작은 일반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은 모태펀드 내 문화계정·영화계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조사업을 통한 지원이 이미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의 동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선정작 중 보훈문화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³⁾에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보훈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체적인 제작비 확보가 어려운 중소 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2024년과 2025년에는 제작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콘텐츠 성격만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였는데, 이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일부 제작사에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

[2024·2025년 대기업 대상 지원 현황]

분야	제작사	2025년 매출액	지원규모
영화	OO O&O (엔터테인먼트)	3조 4,369억원	2억원
교양·예능	(주)OOOOO방송	7,186억원	0.9억원
영화	(주)OOO스튜디오	1,191억원	2억원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 자료 및 각 제작사 공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결론적으로 보훈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 지원을 통해 공익적 성격의 문화콘텐츠 공급을 확산하고, 장기적으로 보훈콘텐츠가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적·교육적 가치를 담은 작품을 선별하되, 상대적으로 제작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작사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선정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중소 제작사에 대한 가점 부여, 대/중소 제작사 간 지원요건 및 한도 차등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훈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요구된다.

3) 국가보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기간 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콘텐츠 지원 선정작 415개 중 보훈 관련 콘텐츠는 6개(약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으로 착공이 연기된 중앙보훈병원 시설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중앙보훈병원 시설개선 사업¹⁾은 중앙보훈병원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 시설 개선 및 진료실 재배치 등에 필요한 공사비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5억 9,100만원이 감액된 3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중앙보훈병원 시설개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앙보훈병원 시설개선	405	3,941	3,941	3,350	△591	△15.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중앙보훈병원의 치과병원 완공('23)에 따른 진료실 이전, 중앙관 4~5층 증축 공사와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을 재배치하는 공사를 위하여 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7년 예산안에는 중앙보훈병원 시설 재배치에 필요한 공사비와 감리비 62억원 중 33억 5,000만원의 국비 지원액이 반영되었다.

[중앙보훈병원 시설개선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3,350백만원 = 2027년 중앙보훈병원 시설 재배치 공사비 중 국가 부담액

자료: 국가보훈부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2156-398

나. 분석의견

2026년 착공이 예정되어 있던 중앙보훈병원 시설개선 사업의 설계가 지연되면서 착공 시점이 2027년으로 연기되고 2026년 예산에 편성된 공사비 전액이 불용될 예정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착공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과정 전반에 걸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신규 공사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당초 동 사업의 설계를 2026년 5월까지 완료하고 2026년 6월부터는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예산에는 1년차 설계비 중 국가부담액 4억 2,900만원과 공사비 중 국가부담액 35억 1,200만원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진료과별 의견수렴, 재배치안 조정 등으로 계획설계가 5개월 이상 지연되고,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절차가 1개월 지연됨에 따라 실시설계가 순연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2026년 내 착공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중앙보훈병원 시설개선 사업 당초 추진계획 및 실제 진행현황]

구분	당초 추진계획	실제 진행현황
사업기간	2024년 1월~2028년 5월	2024년 1월~2029년 3월
총사업비	29,397백만원	32,244백만원
계획수립	2024년 1월~2월	2024년 1월~2월
타당성조사	-	-
건축기획 심의 및 조달약정 체결 등	2024년 3월~11월	2024년 3월~11월
계획설계	2024년 11월~2026년 5월	2024년 11월~2025년 7월
중간설계		2025년 7월~2026년 1월
실시설계		2026년 2월~11월 예정
공사 입찰 및 계약	2026년 5월~2026년 6월	2026년 11월~2027년 3월 예정
착공	2026년 6월	2027년 4월 예정
준공	2028년 5월	2029년 3월 예정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도 4차례 변경되었다. 최초로 사업을 계획하던 당시 총사업비는 293억 9,700만원이었으나, 2026년 5월 4차 변경을 통해 322억 4,4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규모도 205억 7,800만원에서 225억 7,10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중앙보훈병원 시설개선 사업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당초	29,397 (20,578)	510 (273)	1,825 (1,090)	5,412 (3,534)	10,825 (8,000)	10,825 (7,681)
1차 변경 (2024.11.)	29,000 (20,300)	510 (273)	608 (405)	6,042 (3,941)	10,840 (8,000)	11,000 (7,681)
2차 변경 (2025.12.)	29,032 (20,322)	510 (273)	608 (405)	6,042 (3,941)	10,872 (8,022)	11,000 (7,681)
3차 변경 (2026.2.)	29,022 (20,315)	510 (273)	608 (405)	6,032 (3,934)	10,872 (8,022)	11,000 (7,681)
4차 변경 (2026.5.)	32,244 (22,571)	510 (273)	608 (405)	6,039 (3,941)	6,200 (3,350)	18,887 (14,602)

주: 괄호 안은 국비 지원 규모임

자료: 국가보훈부

설계 지연으로 2026년 착공이 불가능해지면서 2026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39억 4,100만원 중 설계비 4억 2,900만원을 제외한 공사비 35억 1,200만원 전액이 불용될 예정이다. 공사 사전절차가 지연되면서 편성된 예산을 연내 활용하지 못하는 등 재원 배분과 집행상의 효율성이 저해된 것이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동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 2027년 4월 착공을 목표로 2027년도 예산안에 공사비 3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²⁾ 2026년 2월 시작된 실시설계

2) 통합재정성과평가에 따라 2026년 대비 15% 감액 편성된 규모로, 국가보훈부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연내 전액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가 9월말 기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설계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후속 절차인 입찰 및 계약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착공이 재차 연기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중앙보훈병원 시설개선 공사를 위한 사전절차가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과정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신규 공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진행하는 등 설계변경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현충시설 건립 사업¹⁾의 내역사업인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위패보안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100만원 증액된 4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현충시설건립	4,756	5,909	5,909	4,260	△1,649	△27.9
독립의 전당 건립	4,032	4,259	4,259	4,260	1	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기존의 순국선열 위패보안관이 협소하고 노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08년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에 이르러서야 서대문 독립공원에 새로운 위패보안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사업이 추진되었고, 2022년 12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독립의 전당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 내용	순국선열 위패를 모시고 있는 기존의 '독립관'이 노후·협소하여 현대적인 위패보관실 및 미래세대 체험공간을 갖추도록 확대·건립
사업 규모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333.03㎡
위치	서대문독립공원 내(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407)
시행 방법 및 주체	국가 직접 건립
소요 자원	13,348백만원
사업기간	2022~2025년 → 2022~2028년

자료: 국가보훈부

2027년 예산안은 당초 계획상의 3년차 공사비와 감리비 등이 반영되었다.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독립의 전당: 4,260백만원
* (공사비) 3년차 공사비 3,723백만원
*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3년차 감리비 484백만원
* (시설부대비) 조달수수료 등 53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나. 분석의견

2026년 6월 착수한 독립의 전당 건립 공사가 2026년 7월 중단되어 완공 시점이 연기되고 이월액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황임에도 공사 중단 이전에 수립된 연차별 투입계획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27년 예산 투입 규모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착공 사전절차의 반복적인 지연으로 계획대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예산 집행이 지연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²⁾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국가보훈부는 2026년 6월에 이르러서야 실제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정무위원회)」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완공 계획을 2025년 12월에서 2027년 9월로 연기하였으며, 연기된 계획에 따라 2027년 예산안에는 잔여 사업비 42억 6,000만원을 반영하는 연차별 투입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독립의 전당 연차별 재정 투입 계획 제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최초 계획 수립 (2022)	11,900	226	494	4,526	6,654	-	-
계획 변경 (2026 상반기)	13,348	226	491	80	4,032	4,259	4,260

자료: 국가보훈부

그러나 착공 이후 시점인 2026년 7월 실시한 표본·시굴조사 결과 매장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정밀발굴조사가 결정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12월까지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립의 전당 건립 공사비를 비롯한 2026년 예산 42억 5,900만원 중 37억 9,200만원이 2027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2026년 예산 미집행 예상 규모]

(단위: 백만원)

예산	8월말 집행액	12월말 예상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4,259	44	467	3,792	-

자료: 국가보훈부

그런데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7월 공사가 중단되기 전에 수립한 연차별 투입계획과 같은 규모로 편성되었다. 즉 연차별 투입계획 수립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2026년 예산의 이월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2027년 공사 재개 시 2026년 이월 예산과 2027년 편성 예산을 모두 집행할 계획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밀발굴조사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완공 예상 시점이 2028년 상반기로 재차 연기된 점을 고려할 때, 2027년 공사 종료를 목표로 잔여 사업비를 모두 반영했던 투입계획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2027년도 공사비는 2026년 예산 이월액으로 우선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연차별 공정률에 따른 최소 규모가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잔여 사업비는 2028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연차별 투입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립의 전당 완공 계획 변경 현황]

구분	최초 수립계획	2026년 상반기 계획	2026년 하반기 계획
공사 계약 체결	2024.3.	2025.12.	2025.12.
착공	2024 상반기	2026.6.	2026.6.
준공(예정)	2025.12.	2027.9.	2028 상반기

자료: 국가보훈부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완공이 연기된 공사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소요 예산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7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한 조정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¹⁾은 2029 대전 인빅터스 게임 개최를 위한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6억 2,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지원	-	-	-	627	627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는 영국의 헨리 왕자의 후원으로 2014년 발족한 대회로, 군사상 공무 중에 상이를 입은 현역·퇴역 군인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종합 스포츠 대회이다.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는 휠체어 농구·럭비, 수영 등 다양한 적응형 스포츠를 통해 상이군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격년제로 개최한다. 2025년 캐나다 대회에는 23개국 534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동계 스포츠가 처음 도입되는 등 국제적인 상이군인 스포츠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9년에 열리는 제9회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의 개최지가 대전으로 확정(2026.7.20.)됨에 따라 대회 개최를 위해 활동할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이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4161-371

나. 분석의견

동 사업 신규 예산안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이 편성된 것이므로, 국가보훈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 예산안 편성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 6억 2,700만원은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320-01)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 627,000천원 |
| -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운영비 지원 (627,000천원) |
| · 조직위원회 지원 : 627,000천원×1식=627,000천원 |

자료: 국가보훈부

그런데 대회 개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위원회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 대상인 조직위원회는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직위원회의 출범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3월 조직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국가보훈부 제출 자료를 통해서는 위원회 규모와 구성, 기능과 역할, 활동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 예산안 편성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출범 및 운영 계획의 세부내용과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속히 확정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1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6,231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34억원(2.2%) 증가하였다.

[202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77,948	609,684	609,684	623,108	13,424	2.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2,252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360억원(19.0%) 증가하였다.

[202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60,425	189,199	189,199	225,211	36,012	19.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2026년 두 차례에 걸친 조직증원에 따라 조사역량 강화 및 사건처리 인프라 보강을 위하여 조사 공무원의 즉각적인 사건처리 투입을 위한 교육 예산을 반영(24.8억원)하였고, 위원회 사건처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경제분석 예산을 확대 반영(+10억원)하였으며, 사건처리 이후 제기되는 행정소송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송수행 예산을 증액 반영(+19.9억원)하였다. 또한, ②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 시행(‘26.12.31.)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시스템 고도화 12.9억원, 사업 수행 2.9억원)하였고, ③ 기술 발전 등에 따른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로 폭증하고 있는 신유형 소비자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AI 시장감시시스템 신규 구축 예산을 반영(85.6억원)하였다.

202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사업으로 구성된 계정을 공익신고장려기금에 편성하였는데, 불공정거래행위 피해구제와 공익신고포상금 지급은 목적과 성격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피해구제 계정의 주요 업무인 소송지원을 위한 사업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사업으로 수행해왔으므로, 공익신고장려기금 내 별도 계정을 만들어 신규 지출사업으로 편성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규 지출사업과 기존 세출사업에 중복 편성되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 및 신규사업 편성 여부에 따라 중복 편성된 예산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23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전반(조사자료분석, 법리 검토, 보고서 초안작성 등)에 대해 AI로 지원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능형 사건처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해외 소비자단체 연계 다국적 소비자피해 대응활동 사업은 Consumers International(CI) 등을 포함한 해외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소비자피해를 공동 모니터링하고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 및 운영(정보화)	1,662
	해외 소비자단체 연계 다국적 소비자피해 대응활동	670
합 계		2,33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지원, 행정소송수행, 정책연구개발사업, 대외활동 강화, 조사지원 및 경제분석,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갑을분야 거래행태개선 시스템 운영(정보화) 및 한국소비자원 출연 등이 있다.

① 공정거래지원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정책에 대한 홍보를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였고, ② 정책연구개발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정책의 개발 및 정책심포지엄을 보다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 증액 반영되었으며, ③ 대외활동 강화 사업은 격년제 시행하는 서울국제경쟁포럼을 2027년 개최하기 위하여 새롭게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④ 행정소송수행 사업과 ⑤ 조사지원 및 경제분석 사업은 사건처리 전·중·후 단계에서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개)	공정거래지원	1,132	1,132	2,594	1,462	129.2
	행정소송수행	3,888	3,888	5,880	1,992	51.2
	정책연구개발	349	349	856	507	145.3
	대외활동 강화	435	435	578	143	32.9
	조사지원 및 경제분석	2,319	2,319	4,025	1,706	73.6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872	872	1,319	447	51.3
	갑을분야 거래행태개선 시스템 운영(정보화)	1,190	1,190	1,646	456	38.3
	한국소비자원 출연	57,146	57,146	70,609	13,463	23.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가. 현 황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¹⁾은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비자원의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4억 6,300만원이 증액된 706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소비자원 출연	53,646	57,146	57,146	70,609	13,463	23.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수지차보전 기관으로 지출 소요 중 자체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7년 지출 계획은 총 739억 7,600만원이며, 이 중 33억 6,700만원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나머지 706억 900만원의 정부출연금¹⁾이 편성된 것이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1461-630

[2027년도 한국소비자원 수입 및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결산	2026 예산	2027 예산안
정부출연금	53,646	57,146	70,609
자체수입	2,727	2,972	3,367
수입 계	56,373	60,118	73,976
인건비	37,945	39,613	42,848
경상운영비	4,375	4,623	4,614
사업비	11,859	14,448	24,996
예비비	981	1,434	1,518
처분 전 결산잉여금	1,213	-	-
지출 계	56,373	60,118	73,97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결과 도출된 2027년 재정 소요 중 일부만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므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능 제한 및 시스템 고도화·지능화 등 후속 개발 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의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5억 4,800만원 증액되었는데,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을 2027년 신규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 85억 6,000만원이 증액분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은 딥페이크·다크패턴 및 허위광고 등 고도화된 온라인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실시간으로 적발·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시장감시, 사업자 자율 개선 권고, 신고 챗봇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 주요 기능]

주요 기능	내용
AI 시장감시	언론, SNS,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비자피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SNS 플랫폼의 다크패턴, 딥페이크 광고 등 부당행위를 판별 ⇒ 인공지능을 활용해 감시 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함으로써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영역의 온라인 부당행위에 신속하게 대응
사업자 자율 개선	사업자의 약관, 계약서, 광고 등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개선점 제공 ⇒ 표시·광고, 약관 등의 부당성 자율 검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자의 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고 시장의 부당거래 행위를 저감
AI 신고 챗봇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거나 포착한 부당광고 등 사례를 챗봇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부당성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 받을 수 있는 24시간 상시 소통 채널 운영 ⇒ 소비자의 신고를 실시간 접수하고, AI가 부당성 여부를 판단, 신속하게 사업자 개선으로 연계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

자료: 한국소비자원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는 2026년 완료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2027년 시스템 도입, 2028년 지능화, 2029년 기능 통합·확산 등의 단계로 3개년에 걸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 도입 계획]

단계	추진 내용	
1단계 도입 (2027)	시스템 활용 기반 구축	① 시장 이슈 수집·분석 자동화 ② 허위광고 등 모니터링 지원 ③ 사업자 개선 실적 관리 연계
2단계 지능화 (2028)	지능화 추진	① 허위광고 등 의심사례 분석 ② AI 챗봇형 신고 기능 도입 ③ AI 사업자 가이드봇 구축
3단계 통합·확산 (2029)	감시업무 지능화 확산	① 정보 수집·분석 체계 고도화 ② AI 생성형 정보제공 기능 ③ 시장조사DB 구축·연계 확대

자료: 한국소비자원

그런데 ISP 결과 도출된 전략과제별·연차별 소요 예산 중 2027년 투입 소요 (122억 9,800만원)의 일부(85억 6,000만원)만 예산안에 반영되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정부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결정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 ISP 결과 전략과제별·연차별 소요 예산]

구분	2027	2028	2029	총계
AI 기반 시장감시 모니터링 역량 강화	3,330	1,293	240	4,863
AI 기반 부당행위 판별 지능화	3,367	1,667	420	5,454
학습DB 구축 및 보안성 확보	2,610	1,132	320	4,062
AI 인프라 최적화	1,991	880	300	3,171
감리비	700	-	-	700
합계	11,998	4,972	1,280	18,250

자료: AI 시장감시시스템 ISP 결과보고서

물론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급성이 크지 않은 사업의 연차별 재원 중 일부를 우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후 예산 반영 규모를 검토하는 예산 편성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다만 시스템 활용 기반 구축을 포함한 핵심 기능 도입을 위해 사업 초기 집중적인 재원 투입을 제시한 ISP 결과에 비해 부족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필수적인 기능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년차에 계획한 기능이 도입되지 못하는 경우 기능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구축 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사업지연 요인이 되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ISP 결과 제시된 연차별 재정 소요의 일부만 우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기능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발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한국소비자원 자체수입 항목 중 수탁용역 수입에 수탁할 수 없는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입액은 한국소비자원 예결산의 정합성을 위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7년도 자체수입 중 수탁용역 수입 예산안은 18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이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확대에 따른 인증수수료 예상 증가분 2억원과 재정경제부 신규 연구용역과제(“생활밀착서비스 개선분야 진단”, 2억원 예정) 수주 예정에 따른 수입 확보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2027년도 한국소비자원 자체수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결산	2027 예산안	주요 증액 사유
수탁용역 수입	1,483	1,883	- CCM 인증기업 확대에 따른 수수료 2억원 - 재정경제부 신규 용역과제 수행 2억원
전년도이월금 수입	880	880	-
교육연수 수입	5	-	-
이자수입	248	248	-
임대·기타수입	356	356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그런데 재정경제부 신규 과제가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취소되었음에도 한국소비자원 자체수입을 구성하는 수탁용역 수입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즉 수탁이 불가능한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수입액이 한국소비자원 수입-지출 계획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다.

연구과제 수행을 예정한 2억원은 지출 예산 사업비에도 똑같이 반영되어 있어 수지차 계상에 따른 정부출연금 규모 자체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경위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은 한국소비자원의 확정적인 수입 결손과 지출 잔액을 유발하여 예결산의 정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정부는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면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공익신고 포상금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신규 기금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편성하였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포상금계정과 불공정행위등피해자간접구제계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27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액 구성되어 있다.

동 기금 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업은 포상금계정의 담합 등 신고포상금(3010-369)과 불공정행위등피해자간접구제계정의 소비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3131-381),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3131-382) 등이 편성되어 있다.

[2027년도 공익신고장려기금 내 공정거래위원회 지출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계정	세부사업명	2027 계획안
포상금계정	담합 등 신고포상금	24,817
불공정행위등 피해자간접구제계정	소비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3,110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1,500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분석의견

첫째, 정부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사업으로 구성된 계정을 공익신고장려기금에 편성하였는데, 불공정거래행위 피해구제와 공익신고포상금 지급은 목적과 성격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피해구제 계정의 주요 업무인 소송지원을 위한 사업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사업으로 수행해왔으므로, 공익신고장려기금 내 별도 계정을 만들어 신규 지출사업으로 편성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정부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조성을 국정과제¹⁾로 채택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금 조성을 추진해왔으며, 2025년 9월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²⁾도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공정거래 관련 범위반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과 그 밖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며,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 피해자 권익증진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주요 내용 요약]

수입 재원	지출 용도
<p>제107조의3(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과징금</p> <p>2. 제4항에 따른 동의를결 이행사업자의 출연금</p> <p>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p> <p>4.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p>	<p>제107조의4(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p> <p>2.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p> <p>3. 제107조의3제4항에 따라 동의를결 이행사업자가 위탁한 사업</p> <p>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p> <p>5. 그 밖에 피해자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p>

자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9.2.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위와 같은 기금 재원의 성격과 용도는 기금 설치의 요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³⁾ 불공정거래행

1) 국정과제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 5. 불공정피해구제 기금 조성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9.2.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3)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위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수입 재원의 성격과 지출 목적 관점에서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단일 기금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이 공익신고장려기금 내 ‘불공정거래행위등피해자간접구제계정’으로 편입되었다.

정부가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중복 방지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려는 취지가 타당한지와는 별개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목적의 사업으로 구성된 계정을 공익신고장려기금에 편성할 필요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두 계정의 사업유형 간 성격 차이가 존재한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은 다양한 유형의 위법·부당한 행위, 부패행위,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건전한 신고문화를 장려하는 것에 있으나, 불공정거래피해자간접구제계정의 사업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소송지원 등의 방법으로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업무가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통합 편성되면서 재원 구조가 변경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구제만을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 계획에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사업에 사용될 주요 재원이 불공정거래 사업자가 납부한 과징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정부출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대부분 정부 재정으로 운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기금 신설의 실익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편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주요 피해구제 사업인 ‘소비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사업⁴⁾과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사업⁵⁾은 각각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4) 코드: 공익신고장려기금 3131-381

5) 코드: 공익신고장려기금 3131-382

하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세부사업을 통해 각 기관에 대한 사업출연금으로 계속 수행해온 업무이기 때문이다.⁶⁾ 즉 소송지원 업무 확대를 위한 출연금 증액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징금을 주요 재원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수행해온 업무를 공익신고장려기금이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신규 기금 내 별도 계정을 만들어 신규 지출사업으로 편성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이다.

종합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송지원 업무를 확대하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공익신고 장려를 위한 포상금 지급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자 신설하는 기금에 피해구제 사업으로 구성된 계정을 만드는 것은 각 계정에 편성된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 과징금을 주요 재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면 기존 지원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법적근거가 미비한 사업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 편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⁷⁾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 기금을 편성하였는데, 정부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당시 발의되어 있던 법률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송지원 업무 수행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금 설치·운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로 편성한 사업의 근거는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⁸⁾

6)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기존에도 자체 사업으로 소송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까지 일반회계 세출사업인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을 통해 소송지원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7)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2026.9.1.

8)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이후 시점인 2026년 9월 30일, 기금 용도에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이 추가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이 새롭게 발의되었다.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관련 계정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②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신고활성화사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기금은 사인 간 손해배상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자료: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2026.9.1.

이처럼 기금 지출사업의 법적 근거가 사전에 마련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금 설치·운용의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된 법률안에도 내용이 없는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능에 비추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국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신규사업을 예산안에 먼저 반영한 후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법률 심사를 요청하는 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 편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사업¹⁾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변경(A)		B-A	(B-A)/A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	-	-	1,500	1,500	순증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대리점 등 6개 분야 중소기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대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사업을 공익신고장려기금에 신규로 편성하였다.

소송대리지원서비스 제공 주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027년도 예산안 15억원은 2025년 분쟁조정 처리건수의 약 7%에 해당하는 300건을 대상으로 건당 500만원의 소송대리지원금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공익신고장려기금 3131-382

[2027년도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사업 계획안 편성 세부내역]

소송대리지원: 1,500백만원 = 5,000천원 × 300건

- 5,000천원: 기존 가맹·대리점 분야 소송지원에 건당 약 300만원이 지원되어왔으나, 업종(일반불공정거래, 하도급 등 추가) 및 범위(반 대상(경고 이상 건 추가))이 확대됨에 따라 건당 약 300~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점을 참고
- 300건: 2025년 분쟁조정 처리건수의 약 7% 반영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규 지출사업과 기존 세출사업에 중복 편성되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 및 신규사업 편성 여부에 따라 중복 편성된 예산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신고장려기금에 신규로 편성한 동 사업 예산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하는 소송대리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전액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사업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에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즉 같은 목적의 예산이 신규 기금 지출사업과 기존 일반회계 세출사업에 모두 반영된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송대리 지원 예산 편성(안)]

세부사업	편성내역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규 지출사업)	소송대리지원금 1,500백만원 (순증)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출연 (일반회계 기존 세출사업)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 1,479백만원(전년 대비 +482) - 소송대리지원금 및 소송지원심의회 안전검토비 등: 316백만원 (전년 대비 +150) - 소송지원심의회 및 연석회의, 간담회 등 개최·추진: 70백만원 (전년 대비 +10)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이는 일반소비자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는 소송대리 업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익신고장려기금에 편성된 다른 지출사업인 ‘소비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일반회계 세출사업 ‘한국소비자원 출연’에 편성되어 온 소송대리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도 상반된다.

[한국소비자원 소송대리 지원 예산 편성(안)]

세부사업	편성내역
소비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규 지출사업)	소비자 소송지원: 2,580백만원 (순증) - 일반사건 소송대리: 1,920백만원 - 집단사건 소송대리: 660백만원
한국소비자원 출연 (일반회계 기존 세출사업)	소비자 소송지원: 전액 삭감 - 일반사건 소송대리: 순감(전년대비 △120) - 집단사건 소송대리: 순감(전년대비 △100)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사업(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은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건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반면, 신규 사업(기금)은 분쟁조정 절차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범위반이라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불공정행위 피해 중소기업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각 사업 내용상 차이가 있어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사업수행 주체와 목적, 주요 내용 등이 사실상 같은 두 예산이 신규 설치 여부가 불확실한 기금 지출사업과 기존 일반회계 세출사업으로 나누어 편성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여부에 따라 중복 편성된 예산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금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6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3조 7,0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94억원(25.2%)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645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3조 5,420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25,070	155,827	155,827	164,503	8,676	5.6
- 일반회계	125,070	155,827	155,827	164,503	8,676	5.6
기 금	3,200,666	4,800,000	4,800,000	3,541,953	△1,258,047	△26.2
- 공적자금상환기금	3,200,666	4,800,000	4,800,000	3,541,953	△1,258,047	△26.2
합 계	3,325,736	4,955,827	4,955,827	3,706,456	△1,249,371	△25.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조 2,992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537억원(△39.7%)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2,992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0.03억원이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2027년도 예산안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168,816	2,152,832	2,152,832	1,299,165	△853,667	△39.7
- 일반회계	3,168,816	2,152,832	2,152,832	1,299,165	△853,667	△39.7
기 금	1	4	4	3	△1	△25.0
- 공적자금상환기금	1	4	4	3	△1	△25.0
합 계	3,168,817	2,152,836	2,152,836	1,299,168	△853,668	△39.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나. 세입·세출예산안

금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645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7억원(5.6%) 증가하였다.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5,070	155,827	155,827	164,503	8,676	5.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5조 6,610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조 93억원(21.7%) 증가하였다.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668,816	4,651,626	4,651,626	5,660,967	1,009,341	21.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다. 기금운용계획안

금융위원회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0조 7,277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5,275억원(1.8%)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 8조 272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조 961억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418억원, 신용보증기금 11조 4,67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조 5,492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조 5,465억원이다.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적자금상환기금	5,950,405	7,420,637	7,420,637	8,027,155	606,518	8.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37,578	2,224,917	2,224,917	2,096,118	△128,799	△5.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49,130	46,509	46,509	41,787	△4,722	△10.2
신용보증기금	9,381,044	10,701,510	10,751,510	11,467,018	715,508	6.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434,340	4,886,680	4,886,680	3,549,178	△1,337,502	△27.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173,277	4,869,986	4,869,986	5,546,478	676,492	13.9
합 계	26,225,774	30,150,239	30,200,239	30,727,734	527,495	1.8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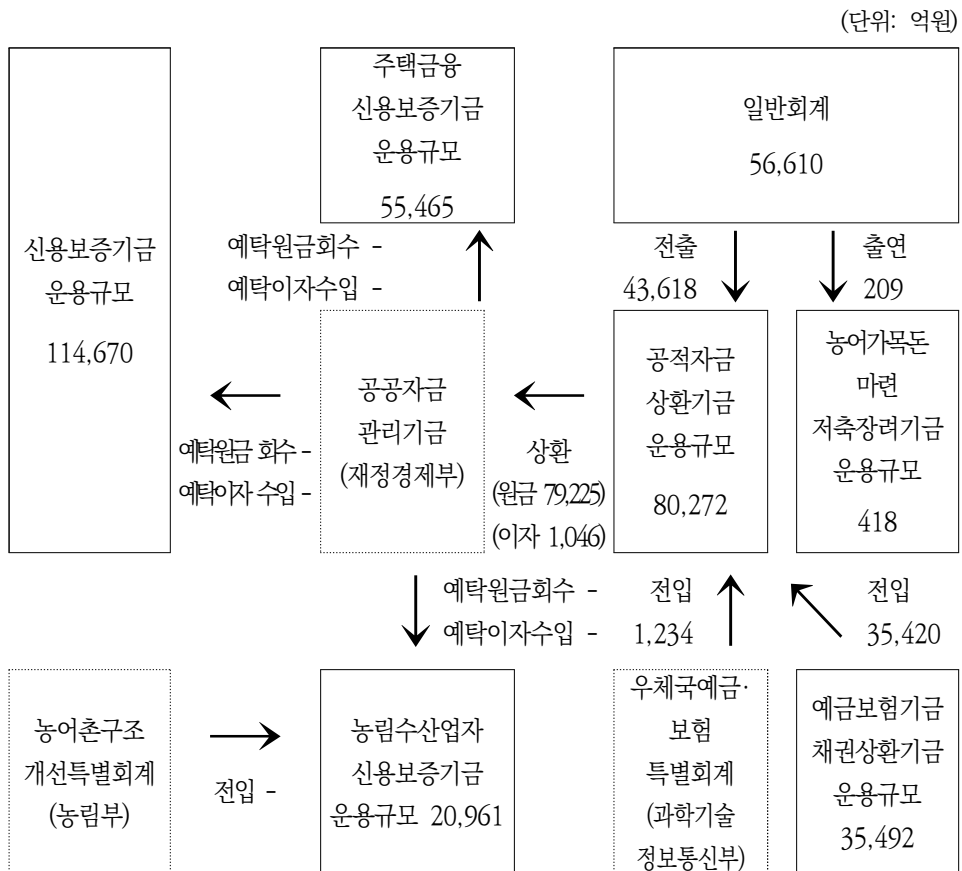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4조 3,618억원을 전출하고,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209억원을 출연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7조 9,225억원의 예수원금 및 1,046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경우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3조 5,420억원을 전출한다.



2027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청년 자산형성 지원’ 세 가지이다.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출자예산(국민성장펀드 1조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500억원),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50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생계비 등 필수자금도 적정 금리로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금융약자를 위한 ‘K-민생지킴대출(3,000억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5,0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계속사업으로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828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 펀드에 부모가 납입하고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年 최대 120만원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1,465억원)’,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금융 이차보전(597억원)’,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286억원)’을 편성하고, ‘청년미래적금(1.7조원)’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다.

상기 서술된 사업 중 국민성장펀드, 청년미래적금(이상 계속사업), 우리아이자립펀드, 주택금융 이차보전,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이상 신규사업)은 기획예산처 소관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편성될 예정이다.

20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특정 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프로그램 출시가 확정되는 경우 꼭 필요한 차주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세부 기준 마련과 연체시작 시점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정부기여금 지원 기준에서 소득요건을 폐지하는 것은 청년층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되는 장점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고소득 청년층에 대한 지원 분산 가능성, 우대금리 제공에 따른 민간 부담 증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기회자금의 경우 기존 햇살론유스 보증을 이용한 미취업 청년의 경우 대출 한도 확대 및 이자면제, 거치기간 연장 등으로 지원혜택이 대폭 확대된 신규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없도록 설계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 햇살론유스 이용 미취업 청년들도 청년기회자금의 확대된 대출 한도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조건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금융 이차보전 재원이 투입되는 청년미래보증자리론의 공급대상 주택유형을 비아파트로 제한하는 것은 부동산 유형별 매매가격 변동 추이와 청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장기적으로 원하는 주택유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급대상 주택 가격(4억원) 외에 유형까지 제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우대금리를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청년 개인의 소득 수준 또는 지역별 전월세 비용 차이 등에 따라 수도권 청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8,050억원 규모이다.

‘K-민생지킴대출’ 사업은 생계비 등 필수자금을 적정 금리로 구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위한 장기·저리 대출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사업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및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 조정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은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AI 기술력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 지원 및 청년 AI 전문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3개)	K-민생지킴대출	300,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500,000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5,000
합 계		805,000

자료: 금융위원회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자금세탁방지추진,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자본시장조사인프라 운영(정보화),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등이 있다.

① 자금세탁방지추진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분석·추적 솔루션 등) 구축 예산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었고, ② FIU전산망구축운영 사업은 신종 범죄유형·초국가 범죄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AI 기반 심사분석지원시스템 구축 예산 등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③ 자본시장조사인프라운영 사업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엄중 대응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증거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다. ④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사업은 2027년 청산

이 예정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잔여부채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 금액이 증액되었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개)	자금세탁방지추진	969	969	3,288	2,319	239.3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801	4,801	14,662	9,861	205.4
	자본시장조사인프라 운영 (정보화)	286	286	563	277	96.9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498,794	2,498,794	4,361,802	1,863,008	74.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II

주요 사업 분석

1

K-민생지킴대출 사업의 지원대상 소득요건 설계 필요성 검토

가. 현 황

K-민생지킴대출(가칭) 사업¹⁾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²⁾에 근거하여 정부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액대출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3,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K-민생지킴대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K-민생지킴대출	-	-	-	300,000	30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K-민생지킴대출은 정부가 금융권 대출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직접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용 하위 50%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최초 100만원에 성실상환 시 100만원 추가가 가능하다. 금리는 4.5%이며, 10년 만기로 설계되어 있다.

한편, 기존 정책금융 대출 상품이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공급에만 집중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금융위원회는 대출 연체 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등 금융과 기초복지 통합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1831-894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K-민생지킴대출 상품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저소득층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출 공급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50%
대출한도	최초 100만원 - 6개월 성실상환 시 100만원 추가
대출금리	4.5%
만기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월 1만원 상환)
기타 지원	연체 시 위기징후 사전탐지 및 복지부 위기발굴시스템 연계 등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나. 분석의견

K-민생지킴대출의 지원기준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고소득자에게 정책자금 지원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이라는 동 사업 취지에 비추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규 대출 상품 이용대상 소득요건 설계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득 불안정으로 생계가 어려운 최저소득계층이 낮은 신용으로 금융권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운용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한 새로운 정책금융 대출 상품으로서 K-민생지킴대출을 신규 편성하였다.

즉 이번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동 사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저소득·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투입한다는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지원대상과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로 사업내용을 일부 개선함으로써 강화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K-민생지킴대출의 지원대상은 신용 하위 50% 이하인 자로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지원대상(신용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비해 신용요건이 완화되고 소득요건은 완전히 폐지된다. 금리는 4.5%

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12.5%)에 비해 대폭 인하되었으며, 만기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등 지원내용이 강화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기존) K-민생지킴대출(신규) 상품 개요]

구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K-민생지킴대출
사업목적	저소득층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출 공급	
지원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신용평점 하위 50%
대출한도	100만원	최초 100만원 + 추가 100만원
대출금리	12.5% (전액 상환 시 이자 50% 페이백)	4.5%
만기	2년	10년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 12.5%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정책금융으로 보기에는 높은 수준이라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보이며, 만기 연장 또한 지원대상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금융 지원강화라는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지원대상에서 소득요건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집중 지원의 필요성과 고소득층의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금융 상품 지원요건으로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경우 NICE, KCB 등의 개인신용평점을 적용하게 되는데, 해당 개인신용평점 산정지표에는 소득수준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요건을 완화하면서 소득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고소득층의 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비교적 생계 압박이 심하지 않은 소득수준을 가진 채무자의 저금리·초장기 대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공급 여력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KCB 신용평점 기준 국내 신용등급 하위 50% 국민의 소득구간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요건이었던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약 1,504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7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요건

폐지로 인해 확대되는 지원대상 인원이 약 500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용평점 하위 50% 국민 중 약 16만명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로 나타났다.

[신용평점에 따른 소득구간별 인구분포]

(단위: 명)

소득구간	신용평점 하위 20%	신용평점 하위 50%
1억원 초과	64,088(0.7%)	161,160(0.8%)
5,000만원~1억원	574,608(6.4%)	1,362,020(6.8%)
3,500~5,000만원	1,542,906(17.3%)	3,477,209(17.3%)
2,000~3,500만원	5,750,927(64.5%)	12,990,719(64.8%)
2,000만원 이하	982,096(11.0%)	2,050,913(10.2%)
합 계	8,914,625(100.0%)	20,042,021(100.0%)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중임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이 제출한 KCB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신용평점 하위 50% 중 상대적 고소득자가 상당한 상황에서 소득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저소득자에게 집중되어야 할 정책 자금이 분산되어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까지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한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에는 다소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수립한 계획(안) 중 지원대상 소득요건 폐지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용평점 하위 50% 국민의 소득구간별 분포,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소득구간별 현황, 저소득 집중 지원 필요성 및 고소득 지원에 따른 재정 여력 분산 가능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사업¹⁾은 금융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채무자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5,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	-	-	500,000	50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집합제한 등이 시행되던 시기에 시작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시키는 내용의 동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를 통해 설립한 SPC가 채권 매입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차주의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연계하고, 상환능력이 아예 없는 차주의 채권은 소각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매입 대상 채권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대출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채권이다. 별도 신청 없이 채권 보유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일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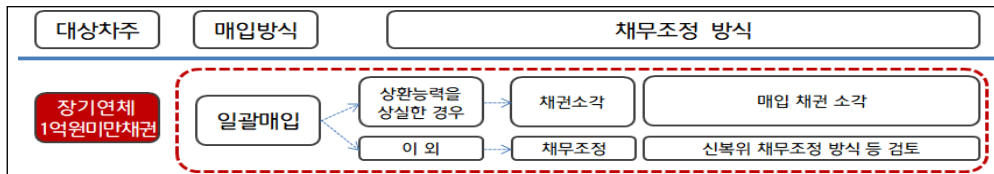
1) 코드: 일반회계 2432-306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코로나 피해(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피해 경감
지원대상	코로나 위기기간 중 (예: 2020.3.~2023.6.)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매입채권 종류	무담보(대위변제된 보증부 포함) 가계+사업자 대출
매입대상 채권	'23.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채권
매입한도	금융회사별 1억원 미만
신청여부	일괄 매입 (신청 불요)
지원내용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코로나 피해(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사업 수행체계(안)]



자료: 금융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5,000억원은 매입 대상 채권 규모 약 5.4조원에 매입가율 약 9.5%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코로나 피해(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근거]

출자금 5,000억원 = 매입대상 채권 5.4조원 × 매입가율 약 9.5%
1) 매입대상 채권 5.4조원
- 코로나 위기 종료 이전 연체된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약 5.1조원
- 코로나 위기 종료 이전 연체된 1억원 미만 법인소상공인 연체채권 약 0.3조원
2) 매입가율 9.5%
- 새출발기금 매입시가테이블 활용 무담보 연체채권 매입가율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특정 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프로그램 출시가 확정되는 경우 꼭 필요한 차주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세부 기준 마련과 연체시작 시점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존에 채무자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를 통해 운용해온 유사 프로그램으로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이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며,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소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동 사업을 통해 출시하려는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새출발기금과 유사하며, 지원방식은 일괄매입채권 소각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새도약기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요 비교]

구분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신규 프로그램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채권종류	무담보·담보 가계+사업자 대출	무담보 가계+사업자 대출	무담보 가계+사업자 대출
연체기간	①90일이상(부실차주) ②연체전~90일미만 (부실우려차주)	7년이상 (18.6월 이전 연체)	'23.6월 이전 연체
한도	채무조정한도 : ①무담보 5억원 이하 ②담보 10억원 이하	매입한도: 금융회사별 5천만원 이하	매입한도 : 금융회사별 1억원 미만
신청여부	채무자 신청	일괄 매입 (신청 불요)	일괄 매입 (신청 불요)
지원내용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최대 90%)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진행된 기간(‘20.3.~’23.6.) 동안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 동 사업 출자를 통한 신규 프로그램 출시를 추진하면서 매입대상은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채권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사업영위 기간과 연체 시작 시점 설계만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같은 시기에 사업을 영위했더라도 사업장 소재 지역 또는 업종 등에 따라 코로나 피해 여부와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당기간 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입증요건을 부과할 경우 실제 코로나 피해가 있음에도 그 입증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원 사업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폭 넓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으나, 동 사업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온전히 상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무 자체를 소멸시켜주는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확실한 차주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기준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특정 시점에 사업을 영위하고 연체가 시작되어 상환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를 소각시켜주는 과정에서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채무자가 지원을 받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면, 성실상환자와 일반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체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가 더 크더라도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해온 차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제도가 설계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정책 특성상 형평성 문제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2023년 6월(코로나 위기 종료 시점) 이후 연체가 개시되어 상대적으로 연체기간이 짧은 차주는 현재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능력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신규로 편성된 동 사업은 매입 채권의 채무조정만 지원하던 새출발기금과 달리 차주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채권을 아예 소각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차주는 상환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만이 가능할 뿐, 신규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소각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문제는 여전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동 사업에 편성된 재정 출자를 통해 출시하려는 신규 프로그램은 상환능력이 온전히 상실된 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소멸시켜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규 프로그램 출시가 확정된다면 꼭 필요한 차주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세부 기준 마련과 연체 시작 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기준 구체화 필요 등

가. 현 황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¹⁾은 금융 AI 실증·매칭 지원 업무와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업무를 담당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	-	-	-	5,000	5,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융혁신 기술의 사업화와 청년 실무인재 양성을 연계하려는 목적으로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① 금융 AI 실증·매칭 지원 사업과 ②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두 내역사업으로 구분된다. 금융 AI 실증·매칭 지원은 청년 핀테크 기업의 AI 기술을 검증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고,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은 청년 대상 금융 AI 오프라인 교육과 실무 프로젝트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두 내역 사업에 각각 30억원과 20억원의 보조금이 편성되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일반회계 1134-303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 개요]

내역사업명	금융 AI 실증·매칭 지원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사업목적	청년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기술 검증 및 매칭 지원	금융권의 차질없는 AI 전환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
사업내용	① 합성데이터 기반 1차 검증 지원 ② 금융회사 데이터 기반 2차 실증 지원 ③ 매칭 금융회사와의 상용화 전과정 지원	① 금융회사, 핀테크,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반영한 표준 교육과정 운영 ② 금융회사, 핀테크 실제 과제 배정하여 8주간 팀프로젝트 진행 ③ 교육생 중 우수 이수자 선발 후 참여 기업 및 금융회사 실증현장 배치 지원 ④ 수료생 중 600명 대상 금융 관련 자격증 응시료, 교재비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
예산안	30억원	2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청년 핀테크 참여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등에 대한 사전 선별 과정이 동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결정할 핵심 요인으로 보이므로, 금융위원회는 청년 핀테크 참여기업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금융 AI 실증·매칭 지원 내역사업은 높은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두 단계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인 상용화 과정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정된 청년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이 합성·제공하는 테스트환경에서 AI 모델의 정확도 등에 대한 1차 테스트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외부 검증기관과 금융보안원이 기술완성도 및 보안 위험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러한 1차 테스트를 통과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도입 수요가 있는 금융회사의 실데이터 환경에서 2차 실증테스트 기회가 주어진다. 이때 실데이터 환경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동 내역사업의 매칭 금융회사로 참여하게 된다.

모든 검증과 실증을 통과한 청년 핀테크 기업은 매칭 금융회사와 해당 기술의 상용화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되며, 실증 참여기업과 매칭 금융회사가 후술할 다른 내역사업인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교육과정 참여 청년 중 일부를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3개월치 인건비가 지급된다.²⁾

[금융 AI 실증·매칭 지원 사업 추진절차(안)]

절차	내용
기업 선정	높은 AI 기술 보유 청년 핀테크 기업 공모·심사 선정
1단계 기술검증	한국신용정보원 테스트환경에서 AI 모델 정확도 검증
정량·정성 및 보안성 검증	기술 완성도 및 보완 위험 점검
2단계 실증	기술 도입 수요 금융회사 제공 실데이터 환경에서 실증
사업화 지원	기술검증·실증 통과 기업은 매칭 금융회사와 상용화 전과정 지원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같은 사업구조를 살펴볼 때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 핀테크 기업 선정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보유한 AI 기술 수준, 해당 기술의 사업화·수익화 가능성, AI 기술 활용을 위한 인력 운용 필요성, 매칭에 참여할 금융회사 기술 수요, 기존 금융회사 기반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이 면밀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가 미흡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테스트 과정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기술 수준이 높더라도 수익화 가능성이 없거나 금융회사가 원하지 않는 종류의 것이라면 상용화를 위한 매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으로 편성·제출된 현시점에서 청년 핀테크 기업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며, 금융위원회는 향후 기술성, 사업성, 정책효과, 실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 4대 보험 등 기타부담금 및 기타 수당은 채용 기업이 자체 부담한다.

다만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청년 핀테크 참여기업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신규로 편성된 동 사업의 핵심 사항으로서 국회의 사전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참여기업이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단순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있는 금융회사를 매칭하여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상용화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참여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등에 대한 사전 선별과정이 신규사업 성과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핀테크 참여기업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 교육과정을 통한 채용연계 제도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기(3개월)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실증 참여기업 또는 매칭 금융회사의 장기채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 제도적 보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사업에는 교육생 중 우수 이수자를 선발해 인턴십 과정으로 연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공공기관 등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5개 권역 1,00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기본 교육과정과 실무역량 팀 프로젝트 등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100명에 대해서는 인턴 체험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이수자 100명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역할은 앞서 살펴본 금융 AI 실증·매칭 지원 내역사업에 참여한 실증 참여기업과 매칭 금융회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활용하여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과 금융회사에 인당 월 223만원의 인건비 3개월치가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혁신 청년인재 육성 사업 추진절차(안)]

절차	내용
교육과정 운영	금융회사, 핀테크, 공공기관 수요조사 반영한 표준교육과정 운영 (5개 권역, 연간 1,000명 예정)
실무역량 강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실제 과제를 배정하여 프로젝트 수행
인턴십 연계	우수 이수자 약 100명을 선발하여 실증 참여기업 및 매칭 금융회사 현장 배치 (3개월간 인당 월 223만원의 인건비 정부 부담)
역량검증·자격취득 지원	수료생 중 600명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자격증 응시료, 교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기타 채용연계	반기별 채용설명회 1회, 잡매칭 3회 등 실시

자료: 금융위원회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청년들을 단순 참여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우수 이수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실증기업 또는 매칭 금융회사 입장에서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3개월 이후 장기 채용으로 연계할 유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 채용이 3개월에 그치는 경우 AI 관련 실무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신규사업의 정책 목적 달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인턴십이 단기 종료되면 AI 실증 참여기업과 매칭 금융회사는 사실상 아무런 부담 없이 지원 사업의 혜택만 받는 것으로 사업이 운영될 여지가 있다. 실증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진행한 테스트와 금융회사가 제공한 실증 환경을 통해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고, 금융회사는 실증 환경을 제공한 것만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 인턴십 기간에 대한 인건비까지도 정부 재정으로 지원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턴십 채용 기간 장기화 또는 정규직 채용 유도로 이어질 수 있는 설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I 실증·매칭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핀테크 기업이나 매칭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턴십 장기화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거나, 반대로 채용 이후 인턴십 기간(3개월) 중

료 이전에 해고하는 기업 또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원금 미지급 외 다른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동 사업 교육과정에 참여한 이수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미래적금 사업의 지원대상 소득요건 폐지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청년미래적금 사업¹⁾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²⁾에 근거하여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층 적금 상품 납입액에 비례하는 기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추경 대비 9,564억 6,400만원이 증액(128.4%)된 1조 7,010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청년미래적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청년미래적금	-	744,625	744,625	1,701,089	956,464	128.4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은 현정부 국정과제³⁾에 포함되어 2026년 신규 편성을 통해 2026년 6월 출시된 적금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자가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월 최대 50만원, 만기는 3년으로 설정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가입자의 납입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정부 재원으로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미래대응기금(청년계정) 4234-300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3) 국정과제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2027년 예산안에는 2026년도 기가입자와 2027년 신규가입자에 대해 예상 납입액에 따른 매칭비율과 가입기간 등을 반영한 재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청년미래적금 사업 계획안 편성 세부내역]

- ① 기여금 지원: 1,691,412백만원
 - (산출) 1,691,412백만원
 * '26년도 기가입자 및 '27년 신규 가입자 × 기여금(6~25%) × 납입액(월 최대 50만원) × 가입기간
- ② 인프라 구축: 9,367백만원
- ③ 청년미래적금 운영 지원: 310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정부기여금 지원 기준에서 소득요건을 폐지하는 것은 청년층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되는 장점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고소득 청년층에 대한 지원 분산 가능성, 우대금리 제공에 따른 민간 부담 증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6년 6월 신규로 출시한 청년미래적금을 운용하면서 가입자의 연소득·연매출에 따라 기여금 매칭 여부 또는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7년부터는 매칭 여부와 비율이 적용되는 소득요건 자체를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2027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납입을 통한 적립금의 6% 이상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27년 청년미래적금 상품 개편 주요내용(안)]

구분	기존(2026)	변경안(2027)
가입요건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자	만 19~34세 청년 전체
기여금 미지급 대상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은 허용하되 기여금 미지급	가입대상 청년 전체에 대한 기여금 지급
기여금 비율	급여·소득 수준에 따라 6~12%	급여·소득 수준에 따라 6~15% *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25%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자산 대비 소득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요건 설계로 인한 고자산 청년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 지원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자산요건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고소득 청년층에 대한 혜택 부여로 인해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청년층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다 시급한 분야에 투입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의 정부기여금을 제외한 적금 상품 금리는 7~8% 수준으로,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 2~3%가 가산되어 있어 일반 적금 상품에 비해 비교적 큰 혜택이 부여되는데, 해당 우대금리는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가입 요건에서 소득수준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고소득 청년의 고금리 적금 상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금융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수반되는 것이다.

[청년미래적금 상품 적용 금리 구조]

적금 상품 적용 금리	7~8%
기본금리	5%
상품 취급 은행 자체 부담 우대금리	2~3%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결론적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청년층을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모든 청년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정부 재정 여력, 상대적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동 사업의 당초 취지, 민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구조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과 정부기여금 매칭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 청년층 자산·소득 현황,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의 중·장기 가용규모, 고소득 청년층 가입 지원에 따른 민간 부담 증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당초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연 2회 각 2주간으로 제한하면서 가입을 원하는 청년층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이전에 운용한 유사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당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을 매년 6월과 12월 2회 각 2주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제로 2026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 후 적금 상품 가입기간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만 운영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가입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청년층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⁴⁾ 금융위원회는 2022년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이 상품 출시 초기에 가입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미래적금 또한 기여금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한시적 운영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정무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운용 계획]

구분	내용
개요	2026년 6월 출시 후 매년 반기별 1회 가입 신청기간 운영
가입 신청	매년 6월·12월 각 2주간 운영
가입 요건 확인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 4~5주 소요
계좌 개설	가입 적격자에 대한 계좌개설 업무 2주 소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허용	2026년 6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1회 허용

주: 2026년 상품 출시 당시 계획임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지급 대상인 가입인원을 320만명으로 추산한 상황에서 실제 가입 유지인원은 약 136.9만명에 불과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운영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운용한 유사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특별중도해지 전환가입 또한 1차 가입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는데, 청년미래적금 가입자 중 청년도약계좌로부터 전환가입한 인원은 26.2만명으로 당초 목표인 135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⁵⁾

[청년미래적금 가입실적]

기여금 지급 목표 인원	320만명
실제 신규가입 인원	138.5만명
2026.8. 가입유지 인원	136.9만명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전환가입 인원	26.2만명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5) 2025년말 신규 가입이 종료된 기존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2027년도 예산은 135만명에 대한 기여금이 편성되었는데, 기여금 산출 근거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2026년말 가입유지 예상 인원 270만명 중 135만명 정도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가입할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나머지 인원에 대한 기여금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실적이 목표 대비 부진한 사유가 단순히 짧은 가입기간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나, 금융위원회의 당초 설명처럼 상품 출시 초기 가입이 집중되어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입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상품 운용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별도의 가입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청년들의 상시 가입을 허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와 상품 구조가 완전히 같은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의 상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수행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행정적 편의 제고 외에 특별한 장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실적이 목표에 비해 크게 부진하고, 가입기간을 연간 1~2회 각 2주 정도씩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입을 원하는 청년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기간을 기존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청년기회자금 사업¹⁾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²⁾에 근거하여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대출 공급 및 이차보전에 필요한 재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1,026억 7,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청년기회자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청년기회자금	-	-	-	102,676	102,676	순증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기회자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생애 2,000만원 한도로 실행되는 금융권 대출을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고, 대출 채무자 중 취업준비자에 대한 이자면제와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고졸 미취업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요건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층에 대해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용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기존 상품인 햇살론유스를 통해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었으나, 정부는 햇살론유스 지원대상 중 미취업자를 따로 구분하여 지원 한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이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미래대응기금(청년계정) 4234-320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그 외 대출금리 2~5%(선취 보증료율 0.1~1%p 포함), 보증비율 100%, 거치기간 최대 8년, 상환기간 최대 7년 등의 사업구조는 햇살론유스와 유사한 구조와 내용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청년기회자금 및 햇살론유스 제도 개요 비교]

구분	청년기회자금	햇살론유스
사업 목적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기간 중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제도권 금융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자(제외) - 청년기회자금으로 이관 대학(원)생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하)
대출 한도	1인당 생애 2,000만원* * 1회 500만원, 연간 750만원	1인당 생애 1,200만원* 이내에서 용도에 따라 지원 * 1회 300만원, 연간 600만원 (특정용도 900만원)
대출 금리	(잠정) 일반: 4%(보증료 1.0%p 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1.9% (은행 자체인하 △0.5%p, 이차보전 △1.6%p) (보증료 0.1%p 별도) 고졸 미취업자: 2.4% (이차보전 △1.6%p) (보증료 0.1%p 별도)	일반: 4%(보증료 1.0%p 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1.9% (은행 자체인하 △0.5%p, 이차보전 △1.6%p) (보증료 0.1%p 별도)
보증 비율	100%	100%
거치 기간	(잠정)최대 8년	최대 8년
상환 방식	(잠정)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정부출연금 1,026억 7,600만원은 보증재원 900억원과 이차보전 재원 28억 8,000만원, 이자면제 재원 97억 9,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증재원은 대출 보증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손실을 보전 해주기 위해 출연되는데, 총 4,500억원 규모의 보증공급 계획에 대하여 20%의 예상 사업손실률을 반영한 것이다.

이차보전 재원은 보증을 이용하는 미취업 청년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와 고졸 미취업자 비중을 각각 15%, 25%로 적용하였으며, 이자면제 재원은 취업 준비 청년의 신청 수요를 감안해 공급목표의 60%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청년기회자금 계획안 편성 세부내역]

○ 사업출연금(350-02): **102,676백만원**

1. 보증재원:

$4,500\text{억원(공급목표)} \times 20\%\text{(사업손실률)} = 90,000\text{백만원}$

2. 이차보전 재원

사회적배려대상자, 고졸 미취업자 이차보전

$4,500\text{억원(공급목표)} \times 40\%\text{(이차보전 대상 비중: 사회적배려대상자 15\% + 고졸 미취업자 25\%)} \times 1.6\%\text{(이자보전 규모)} = 2,880\text{백만원}$

3. 이자면제 재원

$4,500\text{억원(공급목표)} \times 60\%\text{(미취업자 중 취업준비자(실업자) 비중)} \times 3.6\%\text{(면제이자 평균)} = 9,796\text{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나. 분석의견

첫째, 기존 햇살론유스 보증을 이용한 미취업 청년의 경우 대출 한도 확대 및 이자면제, 거치기간 연장 등으로 지원혜택이 대폭 확대된 신규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없도록 설계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 햇살론유스 이용 미취업 청년들도 청년기회자금의 확대된 대출 한도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조건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 준비 기간 중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불편 해소를 돕기 위해 기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별개 상품인 동 사업 청년기회자금으로 분리 편성하였다.

동 사업의 설계(안)에 따르면, 미취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기존 1,200만원(1회 300만원, 연간 600만원)에서 2,000만원(1회 500만원, 연간 750만원)으로 확대되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이차보전 외에 고졸 미취업자에 대한 이차보전이 추가된다. 또한, 미취업자가 취업 준비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자면제 지원이 제공되며, 햇살론유스 이용 미취업자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이 4년이나 청년기회자금 이용 미취업자의 거치기간은 8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즉, 취업 준비 청년은 청년기회자금을 통해 기존 햇살론유스보다 확대된 규모의 자금을 이자 부담 없이 긴 거치기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햇살론유스 대비 청년기회자금 추가 지원 내용(안)]

구분	내용
대출 한도	대출 한도 확대 (총 1,200만원 → 총 2,000만원)
이자 지원	취업 준비 증빙 시 거치기간내 이자면제, 고졸 미취업자 추가 이차보전
거치 기간	거치기간 연장 (최장 4년 → 최장 8년)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이처럼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 준비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 자체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청년기회자금을 통해 미취업자만을 특정하여 추가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이미 햇살론유스 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같은 조건의 미취업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햇살론유스 보증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에는 청년 기회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품을 먼저 이용했다는 이유로 비교적 작은 한도에 따른 상대적인 자금 부족과 짧은 거치기간으로 인한 상환 압박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마련한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햇살론유스를 이용한 미취업 청년의 대출 약정을 상대적으로 유리한 청년기회자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구조이며, 두 보증상품의 중복 이용 허용 여부 및 제도 간 연계방안 등에 대한 설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 햇살론유스 이용 미취업 청년이 신규 상품 출시 전에 보증을 먼저 신청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상환부담을 지게 되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햇살론유스에 비해 확대된 청년기회자금 대출 한도분에 대해서는 청년기회자금의 조건으로 추가 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연계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 결산 심사 및 추가적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정 사업손실율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사업 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업 보증재원 900억원은 보증공급 목표 4,500억원 중 최종적으로 20% 정도의 사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전제하고 편성된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 보증으로 실행된 대출의 연체가 발생하여 보증주체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기관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고액 중 채무자로부터의 구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최종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비중이 전체 보증의 약 20%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유스 연도별 보증공급분의 현재 대위변제율 추이를 참고하여 청년기회자금의 예상 사업손실율 20%를 추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햇살론유스 2020년 공급분의 순대위변제율이 2024년말 20.3%, 2025년 6월 20.9% 정도인 것을 고려하여 청년기회자금 사업손실율 또한 20% 정도로 예상하였다는 것이다.

[햇살론유스 연도별 공급분의 시점별 순대위변제율]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6월
20년 공급분	0.2	6.3	10.7	17.6	20.3	20.9
21년 공급분	-	0.7	4.9	13.7	18.6	19.6
22년 공급분	-	-	0.3	6.8	13.4	15.6
23년 공급분	-	-	-	1.0	6.6	9.1
24년 공급분	-	-	-	-	1.2	2.7
25년 공급분	-	-	-	-	-	0.005

주: 대위변제분에서 구상채권회수분을 차감한 순대위변제 수치임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그러나 청년기회자금과 햇살론유스는 전체 지원대상이 상이하고, 거치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대위변제와 구상채권 회수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이 미취업 청년 외에도 대학생, 대학원생,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년기회자금은 미취업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특정화 하면서 거치기간은 기존 햇살론유스가 대학생에게 제공하던 최장 8년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원대상별 최장 거치기간]

지원대상	자격요건	햇살론유스	청년기회자금(안)
취업준비생	미취업자	2년 (4년)	8년
	대학생	6년 (8년)	-
	대학원생	4년 (6년)	-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1년 (3년)	-
청년사업자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	1년 (3년)	-

주: 괄호 안은 군입대 예정자에 대한 2년 추가 거치기간을 부여한 수치임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즉, 동일한 조건의 미취업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출 시점으로 부터 2년(추가기간 부여 시 4년)이 도래하자마자 상환의무가 발생하지만, 청년기회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8년간 상환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가능성은 줄어들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의 거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지원대상 청년의 취업 준비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가 부여될 것이므로, 거치기간 종료 후 일부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취업에 따른 최종적인 구상채권 회수에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유스의 현재 기준 순대위변제율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연체 가능성은 작고 구상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기회자금의 사업손실율을 유사한 수준으로 추산한 것은 다소 정합성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장래 소득이 불분명한 미취업 청년의 특성상 보증공급을 시작하기도 전에 최종적인 사업손실율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 결산 심사 및 추가적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정 사업손실율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사업 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공급 대상 주택유형(비아파트) 제한 계획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주택금융 이차보전 사업¹⁾은 청년층의 생애 최초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적용에 필요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596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주택금융 이차보전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주택금융 이차보전	-	-	-	59,660	59,660	순증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규 정책모기지로서 2027년 1월부터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해당 상품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금리인하 재원을 정부가 보전해주기 위해 편성된 것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기존에 운용해오던 일반보금자리론에서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특정하고 지원내용을 강화한 상품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의 비아파트로 설정되어 있으며, LTV 최대 80%, 우대금리 적용, 해당 상품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미래대응기금(청년계정) 4233-300

[일반보금자리론 및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 개요 비교]

구분	(기존) 일반보금자리론	(신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안)
지원대상	민법상 성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 39세 이하)
공급주택	6억원 이하 주택	4억원 이하, 비아파트(85㎡ 이하)
LTV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10%p 차감) (생애최초 80%(수도권·규제지역 70%))	최대 80%
소득요건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금리	4.90~5.20%	우대금리 (기본우대+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
기타 혜택	이용 시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소멸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유지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2027년도 예산안 596억 6,000만원은 2027년 공급목표 3조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조달비용에서 평균 대출금리를 차감한 이차보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었다.

[주택금융 이차보전 사업 계획안 세부 산출근거]

○ 이차보전금(320-05): 59,660백만원 - '27년 공급규모 3조원 × [5.630%(예상 주금공 조달비용 및 제비용) - 3.641%(예상 평균 대출금리)]
--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나. 분석의견

주택금융 이차보전 재원이 투입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공급대상 주택유형을 비아파트로 제한하는 것은 부동산 유형별 매매가격 변동 추이와 청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장기적으로 원하는 주택유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급대상 주택 가격(4억원) 외에 유형까지 제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2027년 신규로 출시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공급대상 주택을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자산·소득 수준, 주택 유형별 가격분포 등을 고려하여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대상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²⁾

그러나 이는 공급대상 주택가격을 4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나, 주택 유형을 비아파트로 한정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6년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1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 주택 소재가 수도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4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매매 수요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기준 주택유형별 평균 매매가격]

구분	아파트	오피스텔 (40~60㎡)	다세대주택
전국	5.1억원	2.7억원	2.1억원
서울	13.3억원	4.1억원	3.8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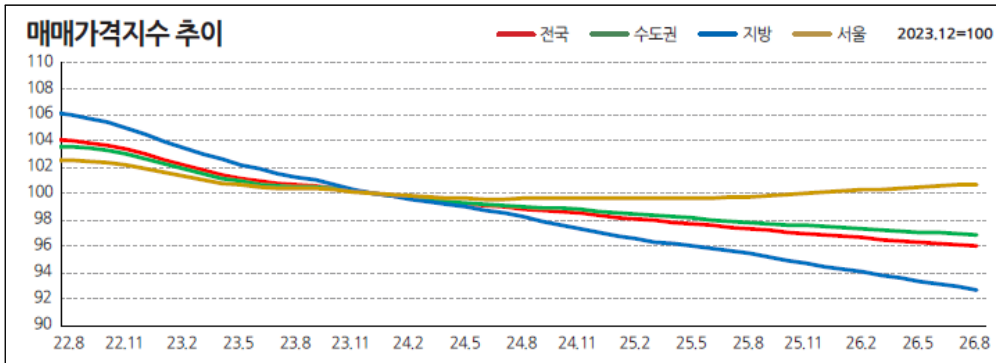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정부가 신규로 출시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통한 주택매매 대출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한 이유는 지원대상 청년층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거주에 머무르지 않고 원하는 주거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당 상품이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인데, 주택 유형을 비아파트로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하여 주택유형별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8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최근 1년간 매월 하락하고 있다.

2) 2025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 가구 평균 순자산은 2.19억원, 평균 연소득은 6,758만원 수준이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추이]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026년 8월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아파트 가격동향과 비교해보면 2026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비아파트는 세부유형·지역 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서는 향후 아파트 매매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026년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전월대비 변동률]

(단위: %)

구분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5월	8월	5월	8월	5월	8월	5월	8월
전국	0.25	0.39	△0.10	△0.12	0.19	0.29	0.09	0.07
수도권	0.55	0.76	△0.06	△0.09	0.29	0.44	0.25	0.26
지방	△0.04	0.05	△0.24	△0.22	△0.09	△0.09	0.04	0.02
서울	1.06	1.05	0.10	0.00	0.76	0.93	0.46	0.42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2026년 8월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존 대출 상품인 일반보금자리론의 2025년 공급규모 19조원 중 청년층에게 실행된 공급규모는 12조원인데, 이 중 아파트 구매를 위한 공급이 11.6조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청년층의 자가 매입 수요는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2025년 일반보금자리론 청년층 공급현황]

구분	전체	아파트	비아파트
전체	19조원	18.4조원	0.6조원
청년층	12조원(100.0%)	11.6조원(96.7%)	0.4조원(3.3%)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보면, 신규 상품의 공급대상 주택유형을 비아파트로 제한 하면서 아파트 구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동 사업의 설계는 향후 주택 유형별 가격 변동 추세에 따라 성과가 제한적일 우려가 있는 것이다. 매매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동 사업은 수도권 아파트 공급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청년층의 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우려도 있다.

한편,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매입 대상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³⁾ 오피스텔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원하는 주거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4억원 이하의 주택구매 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정되나, 공급대상 주택유형을 비아파트로 제한하는 것은 주택 유형별 가격 변동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의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역별 우대금리 차등 적용 계획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 사업¹⁾은 청년층의 전월세결합보증 상품 우대금리 적용에 필요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86억 1,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	-	-	-	28,616	28,616	순증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규 보증상품으로서 2027년 1월부터 ‘청년전월세 결합보증’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동 상품은 기존에 운용해온 청년 특례전세대출 보증과 청년 특례월세대출보증²⁾이 각각 전세 대출과 월세 대출을 보증할 수 있으나 보증금과 월세가 결합되어 있는 전월세(반전세)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았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신규 상품의 지원대상은 소득 7,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청년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90% 또는 2억원이 적용된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미래대응기금(청년계정) 4233-310

[일반 전세대출보증 및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등 상품 개요 비교]

구 분	일반 전세대출보증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청년 특례전세대출보증	청년 특례월세대출보증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 (규제대상 APT 제외)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
소득요건	-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계약조건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80%, 4억원	임차보증금 90%*, 2억원** * 월세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신혼·유자녀는 3억원	임차보증금 90%, 2억원* * 신혼·유자녀는 3억원	2년치 월세액, 12백만원
보증비율	90% (수도권·규제지역 80%)	100%	100%	100%
이자보전	-	이자보전 (지방·저소득 청년)	-	-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2027년 예산안 286억 1,600만원은 2027년 보증공급 목표 4조 5,820억원에 대해 지역별·소득요건별 이차보전 금리 분할적용을 통해 산정되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 산출근거]

28,616백만원 = 대출공급액(4.58조원) × 이차보전금리(지역별·소득수준별 차등적용) × 1/2(분할실행에 따른 평균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나. 분석의견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우대금리를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청년 개인의 소득 수준 또는 지역별 전월세 비용 차이 등에 따라 수도권 청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로 출시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기존에 청년층에게 제공되던 전세보증과 월세보증에는 없던 금리인하 지원이 추가되며, 정부 재정은 금리인하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재원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차보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별·소득조건별 이차보전 규모를 차등 적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2.0%까지, 비수도권의 경우 1.0%에서 최대 3.0%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우대금리 적용 계획(안)]

(단위: 억원, %, 백만원)

구 분		공급액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이차보전을	이차보전 규모
수도권	3천만원이하	4,004	2.0	8,009
	4천만원이하	6,413	1.5	9,620
	5천만원이하	7,849	1.0	7,850
	5천만원초과	11,596	-	-
비수도권	3천만원이하	2,382	3.0	7,147
	4천만원이하	4,192	2.5	10,479
	5천만원이하	4,744	2.0	9,487
	5천만원초과	4,640	1.0	4,640
합 계		45,820	-	57,232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처럼 소득수준별로 적용금리를 차등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지역별로 적용금리를 차등하는 것은 전월세 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청년층의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에 비해 전월세는 세입자가 비교적

단기간의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청년층의 경우 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 준비 또는 취업 초기 직주근접 필요에 따라 지역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수도권 청년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한 자산증식 등의 목적 없이, 단순히 외부적인 여건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별개로 수도권 전월세를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도 비수도권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 해소, 지방경제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방 청년에게 우대금리 1%p 추가 적용을 결정하였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수도권 청년의 평균 소득이 지방 청년의 평균 소득에 비해 높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매입이 아닌 전월세의 특성상 자산증식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자신의 선택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청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 청년의 평균 소득 외에 전월세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24) 기반 재구성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평균 보증금과 평균 월세가 지방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수도권·지방 평균 월세 및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른 연환산 임차료]

(단위: 만원)

구분	평균 월세	평균 전세보증금	연환산 임차료 ¹⁾
수도권	43.3	2,790.7	684.3
지방	34.4	939.1	468.2

주: 1) 전월세 전환율 5.9%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24) 통계를 바탕으로 제출

동 사업이 주택매매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금리지원을 통한 자산증식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가격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겠으나, 전월세의 경우 수도권 청년이라고 해서 해당 대출 상품 이용을 통해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

2) 다만 수도권·지방 간 청년가구 소득, 전월세비용 규모에 따라 소득에서 전월세비용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비수도권 전월세 이용 청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거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보증금 부담과 월세 부담을 져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년층 반전세 대출보증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월세대출, 전월세대출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우대금리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다만, 지원에 따른 자산증식 효과가 없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지역별 적용금리에 차등을 두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전월세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차이까지 함께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¹⁾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²⁾에 근거하여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 펀드에 대해 소득별로 구분된 기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1,465억 3,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우리아이자립펀드	-	-	-	146,531	146,531	순증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우리아이자립펀드는 현정부 국정과제³⁾에 포함되어 2027년 하반기 신규 출시를 앞두고 있는 펀드 상품으로, 2026년 9월 이후 출생한 만 0~18세 아동 가구의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부모 납입금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정액 또는 매칭)해줌으로써 장기간의 적립·투자를 통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정부는 기여금 지원 외에도 펀드 투자수익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세 비과세 혜택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비과세 혜택은 부모납입금과 정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미래대응기금(청년계정) 4234-310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3) 국정과제 82-4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방안 장기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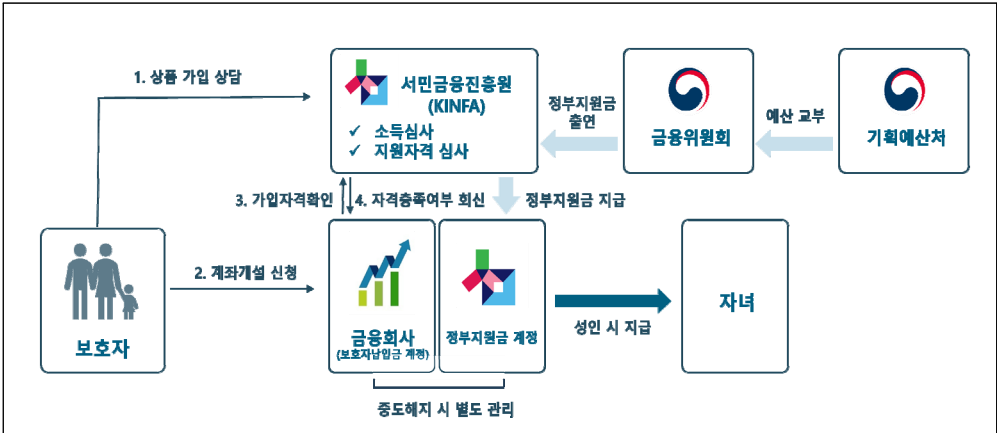
부기여금 모두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부여되며, 기여금 지원 대상이 아닌 중 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상품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증장기 자산형성 지원
가입 및 지원대상	2026년 9월 이후 출생한 만 0~18세 이하 아동 가구 가입 가능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정부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①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차등 지원(정책 120만원 또는 매칭 최대 100만원) ②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 과세혜택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 집행체계(안)]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정부기여금 1,373억 4,500만원과 인프라 구축비용 88억 7,600만원, 기타 운영비 3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 계획안 세부 산출근거]

- 우리아이자립펀드: 146,531백만원
- 정부기여금 지원: 137,345백만원
 - 인프라 구축: 8,876백만원
 - 기타 운영비: 310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나. 분석의견

첫째, 펀드 가입 및 기여금 지원대상을 2026년 9월 이후 출생 자녀 가구로 한정함에 따라 만기 시 과도한 혜택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의 상품이므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가입대상 요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해진 이자를 받는 적금 방식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펀드 투자성가에 따른 이익 향유가 가능하며, 펀드 운용·투자기간이 장기로 설정되어 있어 복리효과를 통해 목돈 마련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지원대상 연령을 만 0~18세 아동·청소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소득이 없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납입을 통해 형성된 종잣돈을 사회진출 시점에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층이 SNS를 통한 불법도박 또는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 유도 등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에 가입한 가구의 청소년에게 부모와 함께 건전한 투자 상품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대상을 2026년 9월 이후 출생한 만 18세 이하 아동 가구로 제한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동 상품을 통해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연간 최대 120만원(소득별 차등)의 기여금이 지원되는 큰 혜택이 부여되는데, 출생일 단 하루 차이로도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소득수준별 보호자 납입금 및 정부기여금(안)]

소득수준	보호자 적립금 최대한도	정부 지원금액	적립 : 지원 매칭비율
중위소득 50% 이하	연 80만원	연 120만원	매칭 없이 정액 지원
중위소득 50~100%	연 100만원	연 100만원(최대)	1:2 매칭
중위소득 100~150%	연 100만원	연 100만원(최대)	1:1 매칭
중위소득 150% 초과	연 200만원	없음	정부 지원 없음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예를 들어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연 200만원을 19년간 투자하는 경우 만기 시 가용자산이 약 7,157만원 수준(연 수익률 6% 가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정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달라진 결과로 받아들이기에 과도한 수준의 차이일 수 있는 것이다.⁴⁾

[우리아이자립펀드 만기 운용에 따른 가용자산 규모(예시)]

구분	2026년 9월 이후 출생 자녀 가구 만기 시 가용자산 규모
연 120만원 투자 시	약 4,294만원
연 200만원 투자 시	약 7,157만원

주: 1. 연 수익률 6% 가정 및 세금 미반영 시 수치임

2. 만기까지의 정부지원금 규모가 아니라 납입금, 지원금, 투자수익 등을 모두 포함한 예상치임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물론 투입 가능한 정부 재정의 한계 등에 따라 지원대상 특징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겠지만, 2027년 신규 출시 펀드의 가입대상을 2026년까지 소급 확대하면서 출생시기를 9월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연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힘든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대상 요건이 최소한 연령에 따른 통일성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요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재정 여력 하에서 기여금 지원 없이 펀드 가입을 통한 투자 참여 및 비과세 혜택만이

4) 다만 실제 보호자 적립 규모, 정부 지원금 매칭 비율, 연 수익률, 과세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라도 최대한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펀드 운용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보완과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아이자립펀드의 펀드 운용 주체와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 부모 납입금과 기여금으로 구성된 전체 펀드를 단일 운용사가 관리할 것인지 개별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 투자 분야를 제한하거나 주목적 투자 분야를 설정할 것인지, 블라인드 또는 프로젝트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득요건이 변하는 경우 기여금 매칭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설계도 보완되어야 한다. 최초 소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기여금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⁵⁾ 주기적으로 소득수준을 심사하여 기여금 매칭 비율을 변경할 것인지⁶⁾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입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상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아이자립펀드는 가입 대상 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장기 적립·투자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투자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상품 운용 기간이 긴 만큼 기간 내 가입자의 신변 또는 소득수준 등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점까지의 기여금과 수익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해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만기 시 펀드를 완전 청산하고 모든 납입금과 기여금, 투자수익 등을 일시에 인출하도록 할 것인지, 추가 납입과 기여금 지원만 종료하고 펀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금인출 수요와 시장

5)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기여금 매칭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2026~)이 운용한 방식이다.

6)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기여금 매칭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2023~2025)가 운용한 방식이다.

여건을 고려한 인출시점 탄력 적용 방안과 만기 도래 후 다른 자산형성 사업 및 금융교육·재무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이 당장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동 사업은 신규상품 출시를 앞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사업이므로 중장기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양한 유형의 세제 혜택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아이자립펀드 가입 및 투자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한 조문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생략)

정부 또한 입법조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세제혜택 부여에 관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종합적으로 동 사업은 아동·청소년기의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금을 납입하며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청년층 사회진출 시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타당하나, 출생월에 따른 재정지원 요건 설계로 인한 형평성 문제, 펀드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비 문제,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법개정 논의 지연 문제, 중도해지 또는 만기도래 시 후속절차 등에 대한 일부 사업설계 미흡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앞서 살펴본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방안과 향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제출할 필요가 있다.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지원대상 사업장 사업화 가능성 점검 및 재구조화 절차 지원 필요

가. 현 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사업¹⁾은 부실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목적의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5,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	-	-	500,000	500,000	순증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체 공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공적 자금 5,000억원을 마중물로 약 6,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총 1.1조원 규모의 1차 PF 사업장²⁾ 정상화 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은 2차 펀드 조성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총 3조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하여 부실사업장 또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3조원 중 1.5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1년차 출자금 5,000억원이 이번 계획안에 반영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경유 출자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3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여 부실·부실우려 PF 채권을 인수하거나, 사업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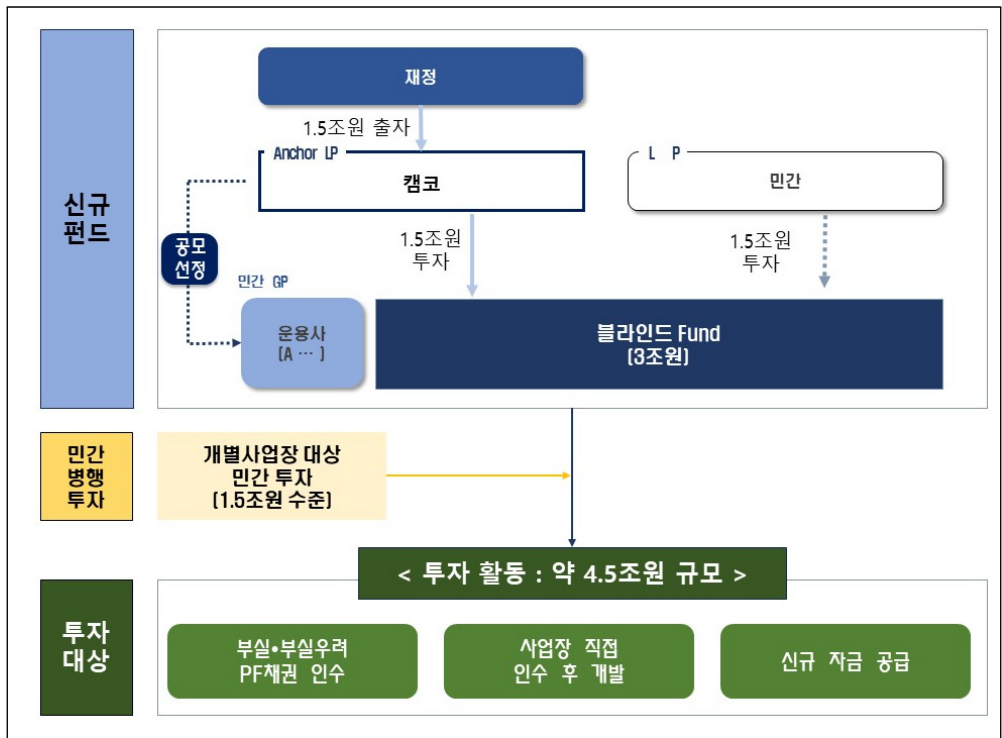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 4235-330

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개별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과 사업 현장을 말한다.

인수하여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펀드에 참여한 1.5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외에도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민간 투자가 약 1.5조원 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부실·부실우려 PF 사업장에 총 4.5조원의 투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사업 수행체계(안)]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부실·부실우려 PF 사업장의 특성상 펀드 투자금 공급만으로는 사업장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투자 대상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 사업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

는 사업장 소재 지역, 주택 유형 및 성격, 주거 수요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 집행 이후 후속적인 재구조화 절차 진행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재정을 3년간 투입하여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려는 동 사업에는 부실·부실우려 주택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 추세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주택·준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사업장을 주목적 투자 분야로 설정하여 재정 출자를 통해 조성한 3조원의 펀드 재원의 60%인 1.8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투자금 조성 및 배정 계획(안)]

재원 조달 계획	펀드 조성 계획	투자 집행 배정 계획
재정 출자: 1.5조원	펀드 조성 규모: 3조원 이상	주목적분야: 1.8조원(60%) (주거사업장)
민간 투자 모집: 1.5조원 이상		일반 분야: 1.2조원(40%)

주: 초기 3년간 집중투자 계획으로 연차별 재정투입 전 자금 부족 시 캠프가 우선출자 후 재정보전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주거사업장에 대한 1.8조원 규모의 펀드 재원 투자를 통해 약 1.8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1차 펀드의 2026년 8월 기준 총 투자액 8,193억원 중 3,730억원이 주거사업장에 투자된 결과 약 3,881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현황을 참고한 것이다.³⁾

펀드를 통해 조성한 투자금의 집행은 채권 인수, 사업장 직접 인수 후 개발, 신규 자금 공급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실사업장의 채권을 인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단일 채권자가 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인수하여 신규 시행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으며, 단순히 신규 자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본 PF 실행을 위한 후속 절차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

3) 투자 사업장 16개 중 7개가 주택사업장으로, 약 3,881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투자 집행 방식]

구분	내용
채권 인수	기존 PF 브릿지대출이 기한이익을 상실하거나 만기 연장 등 지속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캠프 PF펀드에서 기존 채권 인수 후 채권자로서 계속사업의 발판을 제공 - 기존 다수 채권단을 단일화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이자를 만기에 일시납 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계속사업 지원
사업장 인수 후 개발 진행	캠프 PF펀드에서 사업 부지를 매입하거나 진행 중인 경·공매에 직접 참여하여 부동산 실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업 정상화 추진 - 신규 시행법인 설립(출자전환) 후 실물 부동산 취득과 함께 기존 인허가 변경 등의 사업장 재구조화로 사업성 제고
신규 자금 공급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제공하여 대주단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조력자 역할 수행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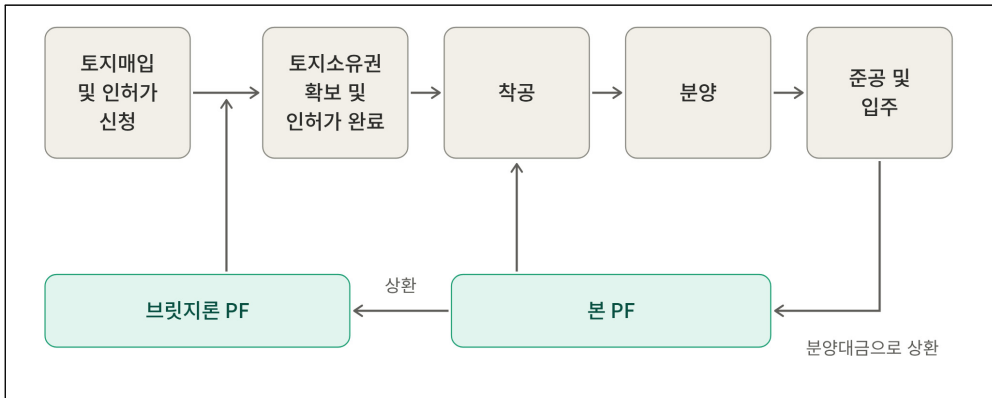
이처럼 유동성 문제로 착공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해 채권매입, 사업장 인수 등의 방법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동 사업의 취지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동 사업 출자를 통해 조성하는 펀드의 지원대상은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유동성 공급만으로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사업자는 본 PF 실행 전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절차 수행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고금리 단기 대출⁴⁾을 이용하게 되는데, 향후 본 PF 투자금과 대출금 등으로 브릿지 대출을 상환한 후 본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PF 사업장이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본 PF 투자금 모집에 실패하여 브릿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즉, 동 사업 지원 대상인 부실사업장은 충분한 투자를 받지 못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큰데, 이는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투자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4) 통상 '브릿지 대출', '브릿지론'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PF 사업 흐름도(예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책 자금을 통해 조성한 펀드 재원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장 정상화에 효과가 제한적일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애초에 자금 공급만으로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장이었다면 민간 투자 모집 또는 금융권 대출 실행이 가능했을 것이고, 부실화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 사업 지원대상인 본 PF 진행 전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근본적인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된 곳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펀드 투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투자 이후 후속적인 재구조화 절차 진행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투자 대상 주택사업장 선정 과정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 지역, 주택 유형 및 성격, 해당 지역 주거 수요 등을 바탕으로 분양 가능성을 포함한 사업성 점검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투자금 지원 후에는 본 PF 전환 여건 마련을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주택유형을 변경하는 등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성 제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⁵⁾

5) 금융위원회는 제1차 펀드 지원대상 사업장 중 정비계획 변경(도시형 생활주택 → 아파트)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시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국민성장펀드 사업¹⁾은 첨단전략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금융 프로젝트인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 출자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조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국민성장펀드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민성장펀드	-	1,000,000	1,000,000	1,000,000	-	-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란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 금융 프로젝트를 말한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배당형으로 투자하는 통상적인 ‘펀드’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 지분투자, 간접투자(펀드), 인프라투·융자, 저리대출 등의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위 전체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대전환 추진 대표과제로 민관합동 15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향후 전 세계적 산업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는 첨단전략산업의 자금 수요를 민간 투자만으로 충분히 조달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바탕으로, 공적자금(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함으로써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50조원(연간 30조원) 이상의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구체적인 재원 구성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을 투입하여 민간투자 75조원 이상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 재정을 매년 1조원씩 출자하여 후순위 보장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²⁾³⁾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 4235-300

10-1. 국민성장펀드 운용 규모 확대에 따른 세부계획 마련 필요

가. 현 황

정부는 2026년 7월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50조원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는 「2027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발행액 한도를 2026년 15조원에 비해 3조원 증액된 18조원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자원 조성 계획]

구분		자원 조성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투자	정부 재정출자
2026 계획	연간	30조원	15조원	15조원	1조원
	총(5년)	150조원	75조원	75조원	5조원
2027 계획	연간	40조원 이상	18조원 ¹⁾	22조원 이상	1조원
	총(5년)	200조원	미정	미정	5조원

주: 1) 2027년 국가보증동의안 제출 기준임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분석의견

국민성장펀드 총 운용 규모 확대(150조원 → 200조원)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연도별·분야별·투자방식별 투자계획은 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총 운용 규모 확대 계획을 반영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현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성장펀드의 5년간 총 운용 규모는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투자 규모 또한 30

2) 후순위 보강이란 투자 손실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우선 떠안음으로써 선순위(민간) 투자자의 원금을 보호하는 조치로서,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3) 자세한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 국민성장펀드 운용 현황 분석」 참고

조원에서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투자 규모는 30조원으로,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저리대출 10조원으로 2026년 계획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정부 출자 규모 또한 1조원으로 2026년과 같은 수준이다. 즉 국민성장펀드 총 운용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함께 자금 조성을 위한 국가보증채권 발행 규모는 상향되었으나, 자금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조정되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 국민성장펀드 투자 계획]

(단위: 조원)

구분	총 운용 규모	연도별 투자계획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투· 융자	저리대출
2026	150	30.0	3.0	7.0	10.0	10.0
2027	200	30.0	3.0	7.0	10.0	10.0

자료: 각 연도별 정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규모 상향에 따른 연도별·분야별·투자방식별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립 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은 2026년 12월 중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의 기초적인 계획이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위한 정부 재정 출자금 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총 운용 규모 확대(150조원 → 200조원) 계획을 반영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10-2. 유사 목적의 정책펀드·사업 간 중복투자 가능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외에도 다양한 정책금융·펀드 사업 추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략산업 장기 투자를 위한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모태펀드 결성 자금 조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7대 SEED(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첨단산업에서 민간의 선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사업펀드를 조성·운용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사업인 우주항공청의 뉴스페이스투자지원 등이 편성되어 있다.

[2027년도 주요 정책펀드 사업별 예산안 편성 현황(예시)]

(단위: 백만원, %)

소관	회계·기금	사업명	2026 계획(A)	2027 계획안(B)	증감	
					B-A	(B-A)/A
재경부	미래기금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	-	500,000	500,000	순증
금융위	미래기금	국민성장펀드	1,000,000	1,000,000	-	-
금융위	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50,000	50,000	-	-
중기부	중진기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80,000	1,300,000	420,000	47.7
중기부	미래기금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	-	20,000	20,000	순증
우주청	미래기금	뉴스페이스투자지원	100,000	100,000	-	-

자료: 각 부처별 2027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27년도 신규사업인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비롯한 여러 사업이 전략산업 분야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정책펀드 간 투자대상·투자단계·투자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 펀드의 역할과 투자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간 기능 중복에 따른 운용상의 비효율을 예방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27년 예산안에는 다양한 펀드 조성·운용을 위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정부가 2027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는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방산·에너지·우주 등 전략산업과 해외 공급망 기업 등에 장기·대규모 자본을 공급하는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사업목적과 방식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투자대상 측면에서는 전략형 국부펀드 투자대상에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중복투자가 불가피한 구조이다.

[전략형 국부펀드 투자대상]

① [투자대상] 국내 전략산업 + 기간산업 + 해외공급망 등

① (전략산업) 투자기간이 길더라도 파급효과가 크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

*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포괄적으로 규정

② (기간산업) 데이터센터·에너지 클러스터 등 전략산업 분야 인프라 + 은행·보험 등 금융 분야에도 투자 추진

③ (해외공급망) 국내 밸류체인 보완을 위한 해외 공급망기업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

④ (기타) 국부 창출·축적이 가능한 다양한 자산운용방안 검토·추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7.31.),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또한 지원대상 산업 분야 측면에서도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승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반도체·AI 분야를 지원하는 2027년 예산사업을 예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다.

[2027년도 반도체·AI 분야 지원 주요 사업 예산안 현황(예시)]

(단위: 백만원, %)

분야	소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2027	증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반도체	국방부	전력운용 시설 확보 및 장비 획득/이전 등	-	-	316,900	316,900	순증
	기후부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	-	-	119,640	119,640	순증
	산업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	-	1,500,000	1,500,000	순증
		K-온디바이스AI반도체 기술개발(R&D)	166,554	166,554	113,980	△52,574	△31.6
	과기부	반도체원천기술개발(R&D)	122,864	122,864	122,953	89	0.1
		AI반도체 실증 지원	113,370	113,370	113,370	-	-
		화합물반도체R&D상생팝구 축(투자형R&D)	-	-	40,000	40,000	순증
AI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61,760	61,760	841,509	779,749	1,262.5
	산업부	제조암묵지활용AI솔루션개발(R&D)	-	-	290,000	290,000	순증
		풀스택 AI 팩토리 및 제조AI 파운데이션모델기술개발(R&D)	-	-	120,000	120,000	순증
	과기부	협업지능 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76,666	76,666	145,704	69,038	90.1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66,666	66,666	98,604	31,938	47.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방식을 활용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지원 사업 간 차별화 및 구체적인 역할조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운용상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자원 조성을 위한 민간 투자가 여러 펀드로 분산될 수 있으며,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책임이 불명확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전략형 국부펀드 등 정책펀드 간 투자대상·투자단계·투자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 펀드의 역할과 투자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간 기능 중복에 따른 운용상의 비효율을 예방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3. 지역별·산업 분야별 균형 투자 및 중소기업 우선 지원 필요

가. 현 황

2026년 9월 기준 국민성장펀드 투자 누적 승인 실적을 살펴보면, 직접투자 실적 2.83조원은 AI·반도체·미래형모빌리티 분야에 1.98조원, 바이오·백신 분야에 0.5조원, 로봇 분야에 0.35조원이 승인되었으며, 간접투자 실적 1.59조원은 방산펀드 0.5조원과 국민참여펀드 및 K-콘텐츠펀드 1.09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리대출의 경우 AI·반도체·미래형모빌리티 분야 4.05조원, 디스플레이 분야 1.5조원, 이차전지 분야 0.87조원, 바이오·백신 분야 0.41조원, 로봇 분야 0.03조원 등 6.86조원이 승인되었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방식별·산업 분야별 투자 승인 실적(누적)]

(단위: 조원)

구분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저리대출	합계
목표	3.0	7.0	10.0	10.0	30.0
실적	2.83	1.59	7.62	6.86	18.9
AI·반도체·미래형모빌리티	1.98	-	-	4.05	6.03
디스플레이	-	-	-	1.5	1.5
이차전지	-	-	-	0.87	0.87
방산	-	0.5	-	-	0.5
바이오·백신	0.5	-	-	0.41	0.91
인프라	-	-	7.62	-	7.62
로봇	0.35	-	-	0.03	0.38
콘텐츠·국민참여펀드	-	1.09	-	-	1.09

주: 2026년 9월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분석의견

첫째,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간 균형적 배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투자를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지역성장 프로젝트나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과 연계·투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성장펀드 운용 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투자 승인 실적 18조 328억원 중 수도권 9조 9,803억원(55.3%), 호남권 5조 1,690억원(28.7%), 영남권 1조 4,415억원(8.0%), 충청권 1조 3,620억원(7.6%), 강원·제주 800억원(0.4%) 순으로 집행되었는데, 지역 간 투자 편중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국민성장펀드 지역별 투자승인 실적]

(단위: 건, 억원, %)

구분		수도권	호남	영남	충청	강원·제주	합계
승인건수		11	6	8	9	1	35
승인 금액	직접투자	19,791	3,500	-	5,000	-	28,291
	간접투자	2,200	-	5,000	-	-	7,200
	인프라투·용자	27,962	45,570	2,700	-	-	76,232
	저리대출	49,850	2,620	6,715	8,620	800	68,605
	합계 (비중)	99,803 (55.3)	51,690 (28.7)	14,415 (8.0)	13,620 (7.6)	800 (0.4)	180,328 (100.0)

주: 1. 2026년 9월말 기준임

2. 국민참여펀드와 K-콘텐츠펀드가 제외된 수치임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물론 국민성장펀드는 기본적으로 지역별 투자 비중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 지역을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산업별 투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며, 아직 본격적인 운용 초기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편중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장기간 자금 조성과 투자가 진행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격과 지역균형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비추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 집행 과정에서 지역 균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이 가진 산업 여건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역 간 산업구조와 규모의 차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간 균형적 배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투자를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지역성장 프로젝트나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과 연계·투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조성한 재원이 특정 산업 분야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산업 분야별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 분야별 투자 승인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투자액 18.9조원의 31.9%에 해당하는 6.03조원이 AI·반도체·미래형모빌리티 분야에 집중되었다. 풍력발전소 등의 대규모 인프라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이 투입된 인프라투·융자 방식의 실적을 제외하는 경우 AI·반도체·미래형모빌리티 분야의 투자 승인 규모는 전체 투자액 11.28조원 대비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방식별·산업 분야별 투자 승인 실적(누적)]

(단위: 조원)

구분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저리대출	합계
AI·반도체·미래형모빌리티	1.98	-	-	4.05	6.03(31.9%)
디스플레이	-	-	-	1.5	1.5
이차전지	-	-	-	0.87	0.87
방산	-	0.5	-	-	0.5
바이오·백신	0.5	-	-	0.41	0.91
인프라	-	-	7.62	-	7.62
로봇	0.35	-	-	0.03	0.38
콘텐츠·국민참여펀드	-	1.09	-	-	1.09
합 계	2.83	1.59	7.62	6.86	18.9(100.0%)

주: 2026년 9월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러한 실적은 최근 들어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빠르고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투자 수요가 국민성장펀드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미래전략산업 각각의 성장 가능성을 분명하게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 생태계를 균형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통해 조성한 재원이 특정 산업 분야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산업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운용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특히 저리대출 재원의 경우 자금 확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운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성장펀드에 포함된 여러 금융 수단들 가운데 저리대출 방식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성장펀드 저리대출은 신규 시설자금 및 장비 구매자금 또는 R&D 용 자금에 대해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하여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6년 9월말 기준 저리대출 방식의 기업규모별 승인 실적을 살펴보면 총 6조 8,605억원 중 대기업 5조 8,900억원(85.9%), 중견기업 8,105억원(11.8%), 중소기업 1,600억원(2.3%) 등으로 대출액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성장펀드 저리대출 기업규모별 대출 승인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건수	8	13	2	23
금액 (비중)	58,900 (85.9%)	8,105 (11.8%)	1,600 (2.3%)	68,605 (100.0%)

주: 2026년 9월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국민성장펀드 운용 초기에 첨단전략산업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해당 산업군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다.

다만 특정 산업군이 자생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군의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건실한 기업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국고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하는 저리대출 방식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금융시장에서 자체적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집중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리대출 재원의 경우 자금 확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운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0-4. 국민성장펀드 운용 성과 점검을 위한 실효적인 성과지표 개발 필요

가. 현 황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운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국민성장펀드 투자 승인 실적’ 단일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투자 승인 규모가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성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성장펀드 성과지표]

(단위: 조원, %)

성과지표		2026	2027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투자 승인 실적	목표	30.0	30.0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 승인 실적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
	실적(9월말)	18.9	-		
	달성도	63.0	-		

자료: 정부, 2027년도 성과계획서

나. 분석의견

정부는 국민성장펀드가 다양한 금융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투자 집행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출범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성장펀드 운용의 근본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 결과 투자 승인 실적을 단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첫째, 국민성장펀드는 통상 펀드라고 칭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 인프라투·융자, 저리대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 금융 프로젝트이다. 즉 국민성장펀드로 조성한 재원은 자금집행 방식이 서로 다른 다양한 금융 수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집행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별 단위사업 또는 세출예산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되는 여러 사업방식

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실효적인 성과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투자 승인 실적은 국민성장펀드 운용의 최종적인 성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하는 목적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성하거나 조성한 자금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 집행을 통해 첨단전략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성과지표인 투자 승인 실적의 2027년 목표치를 30조원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국민성장펀드 운용 규모 확대(200조원, 연간 40조원 이상)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서,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대한 성과관리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① 국민성장펀드는 다양한 금융 수단이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종합적인 정책 금융 프로젝트인 점, ② 국민성장펀드의 근본적인 운용 목표는 투자 집행을 통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민성장펀드에 포함된 각각의 금융 수단에 따라 근본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1

현황

가. 세입·세출예산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7억 9,400만원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다.

[202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15	794	794	794	-	-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1,405억 4,0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88억 2,100만원(25.8%) 증가하였다.

[202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04,333	111,719	111,719	140,540	28,821	25.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홍보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고(2026년 11.5억원 → 2027년 7.8억원), ② AI 대전환(AX) 등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 5개 정보화 사업 예산 총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2026년 216.5억원 → 2027년 404.1억원), ③ 신고자 보·포상금 등 예산이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순감하였다(△48.8억원).

국민권익위원회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237억 2,4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운영 사업은 110콜센터를 운영하고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에서 분리하여 신설한 사업이고, 집단갈등및특이민원조사활동 사업은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을 조사·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에서 분리하여 신설한 사업이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 운영 사업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을 유지·관리·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청렴교육원 교육 운영(舊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에서 분리하여 신설한 사업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3개)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운영	15,860
	집단갈등및특이민원조사활동	6,994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 운영	870
합 계		23,72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이 있다.

①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1단계 추진 등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AI 기반 범정부 전화상담 허브 구축 1단계 추진 등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3,895	3,895	18,352	14,457	371.2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 (정보화)	11,987	11,987	16,751	4,764	39.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기금(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7년도 총수입은 1,18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53억원(87.6%) 증가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99,914	63,134	63,134	118,458	55,324	87.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99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67억원(36.6%)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838억원, 공익신고장려기금 157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5,633	72,884	72,884	83,817	10,933	15.0
- 일반회계	65,633	72,884	72,884	83,817	10,933	15.0
기 금	-	-	-	15,737	15,737	순증
- 공익신고장려기금	-	-	-	15,737	15,737	순증
합 계	65,633	72,884	72,884	99,554	26,670	36.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세입·세출예산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185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53억원(87.6%) 증가하였다.

[2027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99,914	63,134	63,134	118,458	55,324	87.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838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9억원(15.0%) 증가하였다.

[2027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5,633	72,884	72,884	83,817	10,933	15.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 기금운용계획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만 구성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57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 대비 157억원 순증하였다.

[2027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익신고장려기금	-	-	-	15,737	15,737	순증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회계·기금 간에는 내부거래가 없다.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일 반 회 계	
수 입	지 출
1,185	838

주: 1. 총계기준

2. 공익신고장려기금(기획예산처 소관)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지출액은 제외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7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7억 9,500만원), ②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42억 5,200만원), ③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20억원) 등 3개 사업이 일반회계에 신규 편성되었다.

기존 주요사업의 예산 역시 ④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억 7,600만원(30.8%) 증액된 4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⑤ 개인정보침해방지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 투자 감경 제도 운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억 5,700만원(27.8%) 증액된 39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익신고장려기금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사업은 기금 설치와 신고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및 세부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 93억 6,900만원이 편성된바, 관련 입법과 제도설계를 완료한 후 소요재원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은 피해자 간접구제라는 기금의 성격과의 부합성 및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를 고려하여 일반회계 전환 여부와 지원범위·예산규모의 조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은 타 부처의 유사한 피해자 지원사업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도록 지원내용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출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출연사업의 일부 예산을 직접사업이나 용역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실제 수행업무와 역할은 상당 부분 KISA에 유지되고 있는바, 출연비중의 외형적 조정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

회·KISA 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수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KISA는 기관의 공통 운영경비를 출연사업비에 분산하여 계상·집행하지 않도록 출연사업 경비와 기관운영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안전·사이버보안 R&D와 개발대상 및 기술영역이 일부 중첩되고 위원회의 기존 R&D와도 연계 가능한바, 기존 연구성과 활용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포함하여 동 신규사업의 차별성을 구체화하고 과제 중첩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R&D 사업 기획·평가·관리를 KISA에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IITP 등 다른 전문기관의 활용과 기관 간 기능분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 사업은 실태점검 기능이 여러 조직과 사업에 분산되어 있는바, 예방적 실태점검 기능의 일원화와 조사·점검 정보의 통합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연방식 대신 위원회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위험분류·점검기준 등 감독정책의 핵심 업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스템 구축비를 경비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재편성하고, 점검용 소프트웨어는 기존 보유 제품과의 중복 및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도입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사업의 ‘AX 플랫폼 구축 ISP’는 통합 검토 범위와 개별 투자계획 간 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신규 시스템 구축·기존 시스템 개선과 별도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바, 현 시점의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7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70억 4,700만원 규모이다.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은 AI 개발·활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존의 가명처리만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원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특례 제도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은 AI·데이터 전 생애주기에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주체 권리행사를 실질 보장하여 신뢰 기반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은 고위험군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기초 위험지도 구축을 통해 위험 기반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 확산 및 정보보호공시 연계방안 마련 등 예방 제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3개)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	4,252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	2,000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795
합 계		7,047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시스템 운영(정보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위원회송무지원,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개인정보 침해방지 등이 있다.

①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시스템 운영(정보화)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현황·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으며, ③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사업은 원본데이터 안전활용

기술개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다. ④위원회송무지원 사업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수행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고, ⑤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사업은 AX 플랫폼 구축 및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ISP 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으며, ⑥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은 전년 대비 8억 5,700만원(27.8%) 증액된 39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개)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시스템 운영(정보화)	60	60	267	207	345.0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2,171	2,171	5,497	3,326	153.2
	위원회송무지원	800	800	1,550	750	93.8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6,138	6,138	8,187	2,049	33.4
	글로벌 개인정보보호표준개발 (R&D)	1,482	1,482	1,975	493	33.3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R&D)	3,000	3,000	4,000	1,000	33.3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3,164	3,164	4,140	976	30.8
	개인정보 침해방지	3,079	3,079	3,936	857	27.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I

주요 사업 분석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익신고장려기금 사업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공익신고장려기금 계획안에 신규사업으로 증
거 은닉·폐기 신고포상금,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개인정보 피
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등 3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다. 계획안은 총 157억 3,700
만원이다.

[2027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장려기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	-	-	9,369	9,369	순증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 체계 운영	-	-	-	5,098	5,098	순증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	-	-	1,270	1,270	순증
합 계				15,737	15,737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

가. 현 황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¹⁾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신고포상금 92억 6,900만원과 홍보비 1억원 등 총 93억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	-	-	9,369	9,369	순증
증거 은닉 폐기 신고포상금 지급	-	-	-	9,269	9,269	순증
신고포상금 홍보비 등	-	-	-	100	1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법률상 근거와 세부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재원이 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설치 법안도 국회 심사 중인 상황에서 관련 예산 93억 6,900만원을 편성한바, 관련 법률 및 하위규정을 우선 마련한 이후 사업내용과 소요재원을 구체화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지급대상과 요건, 산정기준 및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실제 주요 신고포상금 제

1) 코드: 공익신고장려기금 3010-462

도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하위규정에 지급대상과 산정기준을 두고 이를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각 부처의 신고포상금 제도 비교]

구분	금융위 (‘26.5.26. 시행)	공정위 (‘26.6.18. 시행)	권익위 (시행령 개정중)	개보위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 규정 마련 예정)
근거 법령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회계관련 부정행위 및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부당한 공동행위 등 14개 행위 유형	내부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제보 내용 및 조사·처분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계획
산정 기준	과징금 또는 부당이득 총액의 30% × 기여율	과징금의 최대 10% × 포상률	수입회복액의 최대 30%	타부처 주요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참고할 계획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의 근거를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²⁾은 2026년 9월 14일 및 17일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지급대상·기준 및 절차를 법률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의 재원이 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설치 법안 역시 2026년 9월 발의되어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점에는 기금의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포상금의 지급근거와 대상, 지급요건 및 산정방식 등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고·제보 내용과 조사·처분에 대한 기여도

2) [의안번호 213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2026.9.14. 발의)
[의안번호 214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6.9.17. 발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산정하고 타 부처 제도를 참고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현재 편성된 92억 6,900만원의 산정기준 역시 향후 입법 및 시행령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현재 계획액의 산정 전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또는 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 자체를 집행하기 어렵다. 이처럼 사업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제도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포상금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근거와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에 관한 입법을 우선 완료하고, 하위규정을 통해 지급대상·요건·산정방식 및 절차를 구체화한 후 이를 토대로 적정 소요재원을 산정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1-2.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편성의 부적절성 및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가. 현 황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³⁾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소·영세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과 유출사고 복구를 지원하고, 다크웹 등에 노출·유통되는 개인정보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공익신고장려기금 계획안에 총 50억 9,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소·영세기업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에 24억 6,600만원, 중소·영세기업 개인정보 유출사고 회복 지원에 22억 3,200만원, 다크웹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에 4억원이 편성되었다. 중소·영세기업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은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종합 컨설팅과 청년층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인력 양성을, 유출사고 회복 지원은 사고 원인 분석·긴급조치·유출통지 및 재발방지 지원을, 다크웹 탐지는 불법 유통 개인정보의 신속한 탐지·안내를 통한 정보주체의 2차 피해 방지를 각각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7년도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	-	-	5,098	5,098	순증
중소 영세기업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	-	-	-	2,466	2,466	순증
중소 영세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복구 지원	-	-	-	2,232	2,232	순증
다크웹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	-	-	-	400	4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코드: 공익신고장려기금 3131-436

나. 분석의견

첫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의 피해자 간접구제 사업으로 중소기업·영세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컨설팅·인력양성 및 유출사고 복구지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보다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보호역량 강화와 법령의무 이행·사고복구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바, 기금의 설치목적과 피해자 간접구제 제정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포상금 지급 외에도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예방·교육·법률구제 등 피해자 간접구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간접구제 제정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예방·확산 방지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장려기금 개요]

- 설립목적: 공익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금 지급과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관리
- 총 지출 규모: 2,659억 2,400만원
- 기금 계정 구성
 - 1) 포상금계정: 2,549억 4,600만원 (95.9%)
 -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주요 계정
 - 각 부처의 신고포상금을 통합 관리
 - 2) 간접구제계정: 109억 7,800만원 (4.1%)
 - 불공정행위 등에 따른 피해자 지원
 - 소비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등 지원
 - 피해 예방교육 및 법률 구제 사업

주: 포상금계정의 총지출은 신고포상금 2,545억 8,700만원과 기금운영비 3억 5,900만원으로 구성되며, 계정 간 전출금과 여유자금운용을 포함한 기금의 총계는 3,055억 4,000만원임

자료: 기획예산처 공통요구자료 및 기금 관련 기획예산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러나 동 사업의 세부 계획을 보면, 사업내용이 피해자 간접구제의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중소기업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사업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지원 성격이 강하다. 동 내역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 24억 6,600만원 중 15억원은 기업의 접근권한·암호화·접속기록,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점검·개선하는 종합 컨설팅에 사용되고, 9억 6,600만원은 IT 관련 전공 청년층을 교육하여 기초 컨설팅 현장에 투입할 개인정보 보호인력을 양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이라기보다 기업의 사전적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법령 준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 가깝다.

또한, 중소기업 개인정보 유출사고 회복 지원사업도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사고수습과 보호조치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 복구, 보안체계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유출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기업의 시스템 복구와 보안체계 개선, 재발방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고수습·보호조치 비용을 피해자 간접구제를 위한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개요]

- **중소 영세기업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
 -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예방적 차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종합 컨설팅 수행(150개사)
 - IT·정보보호 전공 청년층을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인력으로 양성 및 기초 컨설팅 현장에 투입
- **중소 영세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복구 지원**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보안 투자 여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복구지원 (기술 및 법적) 컨설팅 제공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 지원
- **다크웹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
 - 다크웹 불법유통 개인정보 탐지체계 구축, 사업자·국민·유관기관과의 탐지 결과 공유 및 대민 서비스 반영 등 대응 노력으로 2차 피해 최소화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의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에서는 다크웹 개인정보 탐지·대응, 유출사고 이후 추가 피해 차단 등 정보주체의 피해 예방·확산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중소·영세기업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컨설팅·전문인력 양성 및 사고기업의 시스템 복구·보호 체계 개선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기업지원 사업은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영세기업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 내역사업은 기금의 피해자 간접구제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존 일반회계 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소기업 보안지원 사업과 지원대상·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바, 기존 사업을 통한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와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중소·영세기업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 내역사업은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IT·정보보호 관련 전공 청년층을 교육하여 기초 컨설팅 현장에 투입하는 개인정보 보호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4억 6,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반회계의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자율규제단체와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지원 컨설팅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신규사업의 종합 컨설팅과 현장 중심 인력양성은 이러한 기존 사업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지원·인력양성 분야 기존 및 신규 사업 비교]

세부사업 (내역사업)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개인정보 교육 지원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중소·영세기업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
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공익신고장려기금
주요 지원내용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 교육·컨설팅, <u>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기술지원 컨설팅</u>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활동지원	공공·민간 개인정보처리자 교육, <u>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u>	<u>중소·영세사업자 개인정보 관리체계 종합 컨설팅</u> , IT·정보보호 전공 <u>청년층 교육</u> 및 기초 컨설팅 현장 투입
2027년 예산	2억 9,000만원	4억 8,100만원	24억 6,600만원
주요 산출내역	자율규제단체·회원사 활동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종합 컨설팅 15억원, 현장 중심 개인정보 보호인력 양성 9억 6,600만원
수행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통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 AI 위협 대응 서비스 지원’⁴⁾ 사업을 신설하고, 이 중 ‘AI SECaaS 제공’ 내역사업에 500억원을 편성하였다. 동 내역사업은 중소·영세기업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 내역사업과 동일하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며, 중소·중견기업 1만개사를 대상으로 IT 자산 및 보안체계를 진단하고 기업 환경에 맞는 관리적·기술적 보안 컨설팅과 AI 기반 보안 서비스(AI SECaaS)⁵⁾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중소기업의 보호역량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통해 관리적·기술적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지원대상과 기능이 중첩될 수 있다.

4) 코드: 일반회계 2333-314

5) AI SECaaS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SECaaS)에 AI 기반 분석·판단·대응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보안 서비스로 AI 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보안위협(미토스 등)을 AI로 대응하는 서비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소기업 AI 위협 대응 서비스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중소기업 AI 위협 대응 서비스 지원 (AI SECaaS 제공)
회계	일반회계
2027년도 예산안	(AI SECaaS 제공 내역사업 기준) 500억원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1만개사
주요 지원내용	기업의 IT 자산 및 보안체계 진단, 관리적·기술적 보안 컨설팅, AI 기반 보안서비스 도입 지원
산출근거	기업당 500만원 × 1만개사 (AI SECaaS 제공 및 기술성·보안성 검증, 보안 컨설팅 등 포함)
수행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통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러한 점에서 부처별로 지원대상과 기능이 유사한 컨설팅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와 정보보호를 연계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진단·컨설팅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일반회계 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소기업 보안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 가능성과 사업 간 역할분담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중소·영세기업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 내역사업의 지원범위와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1-3. 타 부처 유사사업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업운영 필요

가. 현 황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⁶⁾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단말기 악성코드·스토커웨어 점검 등 기술지원 및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계획안에 1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¹⁾에의 출연을 통해 법률인력 4명, 기술인력 4명, 심리인력 2명 등 총 10명 규모의 피해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27년도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	-	-	1,270	1,27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에게 법률·기술·심리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등 타 부처에서 유사한 피해자 지원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지원기능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별도 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단말기 악성코드·스토커웨어 점검 등 기술지원 및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27년도 계획안에 1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2027년도 시범사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 본원에 법률인력 4명, 기술인력 4명, 심리인력 2명 등 총 10명을 배치하여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6) 코드: 공익신고장려기금 3131-43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타 부처 피해자 지원사업 비교]

구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명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온라인피해365센터)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대상	온라인상에서 각종 피해를 입은 인터넷 이용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주요 지원내용	전문상담을 통한 피해 대응방안 안내, 관련 기 관 안내·연계, 법률상담 지원	전문상담 및 심리치유,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초기 삭제 지원, 수사·법원 동행, 의료·법률지원 연계	단말기 악성코드·스토커웨 어 점검 등 기술지원, 법률상담, 심리상담
운영방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상담 관리인력 2명· 상담원 7명 등	전국 16개 지역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 본원 (법률 4명, 기술 4명, 심리 2명 등 총 10명 배치 예정)
2027년 예산	8억 3,300만원	11억 9,600만원	12억 7,000만원

자료: 각 부처 공통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에 대하여 전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2027년도에도 법률상담 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수립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역시 디지털성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과 심리치유, 삭제지원, 수사·법원 동행 및 의료·법률지원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상 피해에 대한 상담·법률·심리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기능을 각 부처가 별도의 지원체제로 구축할 경우 동일·유사 기능에 재정이 중복 투입되고 피해지원체계가 부처별로 분절될 우려가 있다. 특히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피해구제기관 연계는 개인정보 침해에 특화된 기능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다른 부처의 피해지원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별도의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다시 제공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동 사업에서 기존 피해지원체계와 차별화되는 주요 기능은 단말기 악성코드·스토커웨어 점검 등 개인정보 침해에 특화된 기술지원이나, 이를 수행할 기술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 본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단말기 악성코드·스토커웨어 점검 등 기술지원은 피해기기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과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나주 소재 단일 거점을 중심으로 전국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차별화된 기능인 기술지원 역시 이용 접근성과 지원방식에 한계가 있어, 별도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은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투입의 타당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체계 등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지원내용 및 전달체계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되, 기존 사업과의 연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별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피해지원센터의 신규 설치·운영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제3항¹⁾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제1호2)에 근거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함과 동시에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교부하고 있다.

2027년도 예산안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부사업 26개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출연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은 개인정보침해방지 사업 등 19개 사업³⁾으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의 출연금은 2022년 279억 9,400만원에서 2026년 403억 7,2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1.9% 증가한 492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사업비 및 출연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증감률 (‘26대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4,719	42,721	48,538	47,188	54,967	80,095 ¹⁾	45.7
(출연사업) 한국인터넷진흥원	27,994	33,222	33,867	33,311	40,372	49,228	21.9
출연비중	80.6	77.8	69.8	70.6	73.4	61.5	

주: 1) 2027년 예산안 합계에는 공익신고장려기금(기획예산처 소관)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1)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업무의 위탁)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3) 코드: 일반회계 1031-300, 1031-301, 1031-302, 1031-305, 1031-306, 1031-307, 1032-302, 1032-303, 1032-305, 1033-305, 1033-307, 1033-308, 1033-309, 1033-310, 2034-301, 2034-304, 2034-305

공익신고장려기금 3131-432, 3131-436

2-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의 출연 비중 축소를 위한 형식적 사업분할 지양 및 사업수행 체계의 전반적 개편 필요

가. 현 황

2027년도 예산안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부사업 26개 중 19개 사업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사업비 800억 9,500만원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금은 492억 2,8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1.5%를 차지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금은 2026년 403억 7,200만원에서 2027년 492억 2,800만원으로 88억 5,600만원(21.9%) 증가하였다.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높은 출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존 출연사업의 일부 과업과 예산을 직접사업 또는 별도 용역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KISA가 담당하던 실질적인 과업과 역할은 상당 부분 유지된 채 출연금만 축소되고 있는바, 출연금 비중의 외형적 조정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별 수행방식을 명확히 하고 양 기관 간 업무분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KISA에 대한 높은 출연 의존도는 그간 국회의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KISA의 기술적 전문성이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업무나 KISA가 출연금을 교부받은 후 다시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업무까지 출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되어 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연사업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

구분	지적사항
2022 예산 예정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연사업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홍보사업의 경우 출연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점과 직접 수행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출연사업이 아닌 직접 수행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
2023 예산 정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 행사의 위탁·간접 수행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동 행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2023 결산 예정처 예결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본경비를 제외한 예산의 77.8%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재위탁하는 등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2025 예산 예결위	국제컨퍼런스 운영 사업은 KISA의 기술적 전문성이 필수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출연사업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접 수행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
2025 예산 예결위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은 전액 KISA에 출연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본질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자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보고서(정무위원회)

그러나 202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26개 세부사업 중 19개 사업에 KISA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업에서 KISA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기술적·전문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을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책지원·교육·국제협력·마이데이터·침해사고 대응·연구개발 등 광범위한 업무가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 수행체계가 적정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출연금 비중 조정 방식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높은 출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존 KISA 출연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과업을 위원회 직접사업 또는 별도 용역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출연금 비중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2027년도 예산안의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이러한 조정의 상당 부분은 기존 과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KISA의 업무를 위원회로

실질적으로 이관하는 형태라기보다, 조사·연구·시스템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연구비·정책연구비·관리용역비·공공요금 등 다른 비목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41.4억원)의 가명정보 제도 운영 지원 내역사업은 2026년 3억 1,400만원 전액을 KISA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7년에는 총 3억 1,500만원 중 외부 용역으로 수행 가능한 가명정보 실태 모니터링 9,300만원을 일반연구비로, 가명정보 제도개선 연구 8,400만원을 정책연구비로 각각 분리하고, 결합전문기관 제도 운영 및 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1억 3,800만원만 KISA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연사업 비중 축소 사례1]

구분	(내역사업) 가명정보 제도 운영 지원	
	'26년 예산 산출내역	'27년 예산안 산출내역
안전한 데이터 활용	○ 사업출연금(350-02) : 314,000천원 가. 가명정보 실태 모니터링 : 109,000천원 = 1식 × 109,000천원 나. 가명정보 제도개선 : 205,000천원 · 결합전문기관 점검 : 81,000천원 = 21개기관(관리감독) × 2,480천원 + 3개기관(재지정) × 9,600천원 · 제도개선 : 99,000천원 = 60,000천원(연구 운영) + 39,000천원 (전문가 회의 등) · 국제표준화 : 25,000천원 = 2회 × 7,500천원(국제회의 참석) + 5회 × 2,000천원(전문가 회의)	○ 일반연구비(260-01) : 93,000천원 가. 가명정보 실태 모니터링 : 93,000천원 = 1식 × 93,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84,000천원 나. 가명정보 제도개선 : 84,000천원 · 가명정보 제도 개선 연구 : 84,000천원 1) 정책 및 법제연구 : 60,000천원 × 1식 = 60,000천원 2) 책자제작 등 연구운영비 : 2,400천원 × 10회 = 24,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138,000천원 나. 가명정보 제도개선 : 138,000천원 · 결합전문기관 제도 운영 : 113,000천원 1) 결합전문기관 감독 : 23회 × 2,300천원 = 52,000천원 2) 결합전문기관 지정 심사 : 4개기관 × 3회 × 4,300천원 = 52,000천원 3)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회 : 2회 × 4,500천원 = 9,000천원 · 국제표준화 : 25,000천원 1) 국제회의 참석 : 2회 × 7,500천원 = 15,000천원 2) 전문가회의 : 5회 × 2,000천원 = 10,000천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통요구자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정보화) 사업(97.39억원)의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내역도 유사하다. 2026년에는 안전한 마이데이터 활용 제도·정책 연구와 개인정보 전송 비용분담·보상체계 연구에 소요되는 4억 7,000만원 전액을 KISA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7년에는 관련 연구비 2억 2,900만원을 일반연구비로 분리하여 편성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연사업 비중 축소 사례2]

구분	(내역사업)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26년 예산 산출내역	'27년 예산안 산출내역
개인 정보 전송요 구권 보장 (정보화)	○ 사업출연금(350-02) : 470,000천원 가. 안전한 마이데이터 활용 제도·정책 연구 : 170,000천원 * 85,000천원× 연구용역 2식 = 170,000천원 * 연구용역 1식당 산출 내역 - 책임연구원: 7,412천원×1명×6개월×60% - 연구원: 5,683천원×2명×6개월×50% - 연구보조원: 3,799천원×2명×6개월×50% - 전문가 활용비: 200천원 × 5명 × 5회 - 원고비 : 1,000천원 × 5회 - 임차료 : 500천원 × 5회 - 회의운영비: 25천원 × 5명 × 5회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5% - 이윤: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8% - 부가세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10% 나. 개인정보 전송과금·보상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 : 300,000천원 - 책임연구원: 7,412천원×1명×9개월×90% - 연구원: 5,683천원×2명×9개월×95% - 연구보조원: 3,799천원×2명×9개월×90% - 전문가 활용비: 200천원 × 5명 × 20회 - 회의운영비: 20천원 × 5명 × 20회 - 일반관리비: (인건비 + 경비) × 5% - 이윤: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8% - 부가세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10%	○ 일반연구비(260-01) : 229,000천원 가. 안전한 마이데이터 활용 제도·정책 연구 : 79,000천원 ■ 전문가 활용 제도·정책 연구 등 : 1식 × 79,000천원 = 79,000천원 나. 전송 비용 분담 보상체계 구축방안: 150,000천원 ■ 정책연구 및 전문가 활용 과제 기획 등 : 1식 × 150,000천원 = 150,000천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통요구자료

이외에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 내역사업은 2026년 클라우드 이용료, 운영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34억 2,600만원을 전액 KISA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7년에는 클라우드 이용료 20억 2,3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HelpDesk 운영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7억 5,500만원을 관리용역비로 각각 직접 수행 방식으로 편성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사업(24.04억원)의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발굴 및 설계 내역 역시 2026년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 연구 및 법제 정비,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개정, 국내외 정책 환류 및 동향 조사 등에 소요되는 2억 2,100만원 전액을 KISA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7년에는 이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국내외 정책 환류 및 동향 조사비 4,400만원을 일반연구비로 분리하고, 정책 개선 연구·법제 정비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에 소요되는 1억 5,800만원만 KISA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연사업 비중 축소 사례3]

구분	(내역사업)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발굴 및 설계	
	'26년 예산 산출내역	'27년 예산안 산출내역
개인정보 보호정책 지원	○ 사업출연금(350-02) : 221,000천원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 연구 및 법제 정비 지원 : 110,000천원 · 개인정보 신규 이슈 분야 연구반 · 미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발 자문단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개정 : 60,000천원 · 해설서, 가이드라인 제·개정 다.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류 및 동향 조사 : 51,000천원 · 이해관계자 정책 공유 및 의견수렴 - 설명회 : 4식 × 5,000천원 - 간담회, 의견조사 : 3식 × 5,000천원 · 국내외 입법 현황 조사분석 : 번역(6,000천원) + 원고비(1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4,000천원 가.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류 및 동향 조사 : 44,000천원 · 이해관계자 정책 공유 및 의견수렴 : 44,000천원 - 설명회 : 4식 × 5,000천원 = 20,000천원 - 간담회, 의견조사 : 4식 × 6,000천원 = 24,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158,000천원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 연구 및 법제 정비 지원 · 개인정보 신규 이슈 분야 연구반 · 미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발 자문단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개정 · 해설서, 가이드라인 제·개정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통요구자료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39.36억원)에서도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내역의 수행방식이 조정되었다. 2026년에는 4억 3,100만원 전액을 KISA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7년에는 일반연구비 3억 5,600만원과 일반수용비 1,000만원으로 분리하여 위원회 직접사업 방식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접사업 또는 용역 방식으로의 전환이 곧 KISA의 과업 축소나 위원회로의 실질적인 기능 이관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7년에 직접사업으로 전환된 과업의 상당수는 연구·조사·시스템 운영 등 외부 용역을 통해 수행되는 업무로, 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반면, 제도 운영·기술지원·사업관리 등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책임은 상당 부분 KISA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의 정책사업을 구성하는 일부 용역성 과업만 위원회 직접사업으로 분리할 경우, 동일한 정책과업을 위원회 직접사업·별도 용역과 KISA 출연사업으로 나누어 수행하게 되어 사업관리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 또한 예산상 출연금 비중은 감소하더라도 위원회가 새롭게 담당하는 업무는 외부 용역의 발주·관리 중심에 그치고 KISA가 수행하는 실질적인 업무와 책임은 종전과 유사하게 유지될 경우, 출연 의존도가 실질적으로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연기관은 감소한 출연재원으로 기존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② 위원회와 출연기관 간 명확한 업무분장 및 이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KISA에 대한 과도한 출연 비중과 높은 사업수행 의존도는 출연 여부와 수행주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용역⁴⁾에서도 출연사업은 일단 특정 기관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편성되면 수행방식에 대한 재검토 없이 동일 기관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위원회의 인력과 내부 전문성 부족도 KISA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책제안·제도개선 연구, 홍보·교육, 통계조사 등 과업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외부 용역 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기술분석·침해조사 등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여, 과업의 성격에 따라 수행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4) 한국행정연구원(2025.05.), “위원회 출연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연금 비중을 낮추기 위해 기존 출연 사업에서 일부 용역성 과업만 분리하기보다, 사업의 주된 기능과 수행책임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직접 책임질 기능과 KISA가 출연기관으로서 수행할 기능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업내용과 산출물을 사전에 구체화할 수 있고 위원회가 사업내용과 성과를 직접 설계·관리할 수 있는 업무는 위원회 직접사업으로 편성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용역을 활용하고, 침해사고 조사 지원, 기술분석, 고위험 분야의 기술적 점검 등 KISA의 전문인력·기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관련 기능과 재원을 함께 출연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즉 동일한 정책기능을 위원회 직접사업과 KISA 출연사업으로 분절하기보다, 기능별 책임주체와 관련 재원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수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6		2027		
		예산	출연액	예산(안)	출연액	출연비중
합 계		47,269	40,372	60,482	49,228	81.4
일반회계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2,538	1,901	2,404	1,646	68.5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004	1,694	2,737	1,877	68.6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시스템 운영(정보화)	60	60	267	267	100.0
	개인정보 교육 지원	1,284	1,218	1,056	990	93.8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42	873	1,383	814	58.9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	795	624	78.5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3,164	3,164	4,140	3,963	95.7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시스템 운영(정보화)	3,292	3,292	1,162	1,162	100.0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정보화)	11,540	8,790	9,739	5,732	58.9
	개인정보침해방지	3,079	2,491	3,936	1,945	49.4
	개인정보침해방지 시스템 운영(정보화)	4,586	3,609	4,086	3,159	77.3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	-	-	4,252	2,524	59.4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2,660	2,660	1,995	1,995	100.0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6,138	6,138	8,187	8,187	100.0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1,482	1,482	1,975	1,975	100.0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3,000	3,000	4,000	4,000	100.0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	-	-	2,000	2,000	100.0
공장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	-	1,270	1,270	100.0
기금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	-	5,098	5,098	100.0

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출연금이 편성된 사업에 한정하여 작성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예컨대 개인정보 교육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대부분을 KISA에 출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의 상당 부분은 다시 외부기관과의 용역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KISA의 고유한 인력·기술·시설을 직접 활용하기보다 외부 교육용역의 발주·관리가 사업수행의 중심인 경우라면, 교육사업의 기획·관리와 용역 발주를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고 이에 맞추어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수행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신규사업의 KISA 출연방식 집중 편성 재검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KISA 출연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7년도 신규사업 6개 중 5개 사업도 KISA 출연을 포함하여 편성하고 있는바, 신규사업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KISA 출연을 전제로 하기보다 위원회 직접수행, 외부용역 및 다른 전문기관 활용 가능성을 비교하여 사업별 수행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과 달리 사업목적과 세부과업, 수행주체 및 추진방식을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최초 편성 단계에서 어떠한 수행체계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 일단 특정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수행체계가 형성되면 이후 인력·예산 및 사업관리 구조가 이에 맞추어 정착되고, 계속사업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수행주체를 다시 변경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출연사업이 별도의 수행방식 검토 없이 동일 기관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사업은 이러한 출연 의존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7년도 신규사업의 편성현황을 보면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등 대부분의 신규사업에 KISA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KISA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2027년도 신규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2027 신규사업	2027 예산안	KISA 출연액	출연 비중	KISA 업무내용	외부 재위탁·용역 부분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795	624	78.5	· AX 프라이버시 통합지원 상담·접수 관리체계 마련 및 지원 창구 운영	· AX 프라이버시 지원 창구 운영(상담 및 접수)
				· AI특례 사전분류·검토, 권 설령·신청 지원 및 이행점검	
				· AI 프라이버시 정책 기반 연구 기획·관리	· AI 프라이버시 정책 기반 연구 수행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	2,000	2,000	100.0	· 기술 수요 발굴·과제기획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 연구성과 평가 및 사업화· 기술이전 등 성과 확산 지원	· 개인정보 신기술 연구 수행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	4,252	2,524	59.4	· 사전실태점검 장비 도입 등 예방점검환경 구축 · 고위험 분야 개인정보 처 리 현황 사전실태점검	
				· 개인정보 기초 위험지도 구축 관련 기초 현황 조사 방법 마련 및 조사수행 용 역 발주·관리	· 기초위험 지도구축 관련 기초 현황조사 방법론 연구 · 업종·분야별 사업자 개인정보 기초 현황 조사
				· 기업 개인정보 보호 투자 실 태 및 활성화 용역 발주·관리	· 기업 개인정보 보호 투 자 실태 및 활성화 연 구 수행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1,270	1,270	100.0	· 사업 총괄 및 용역 발주·관리 · 침해신고센터 연계 및 분야별 전문상담을 통한 고충 해소 지원	· 피해회복 지원 전문인력 용역 -전문 법률 상담, 기술 적 분석·조치, 심리 상 담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 체계운영	5,098	5,098	100.0	· 사업 총괄 및 용역 발주·관리 · 컨설팅 인력양성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협력채널 관리 및 운영	· 종합컨설팅 및 인력양성 지원 용역
				· 다크웹 탐지 인텔리전스 솔 루션 도입(2종)을 통한 계정 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운영	

주: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 체계운영'은 공익신고장려
기금(기획예산처 소관)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편, 이러한 신규사업 편성방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간 제시해 온 KISA 출연 의존도 축소 및 직접수행 확대 방향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출연사업 중 조사·연구·시스템 운영 등 비교적 과업이 정형화된 일부 업무를 직접사업이나 별도 용역으로 전환하여 출연 비중을 낮추고 있는 반면, 2027년에는 사업내용과 수행체계를 새롭게 설계하여야 하는 신규사업의 대부분을 다시 KISA 출연 방식으로 편성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사업에서는 일부 과업을 분리하여 출연 비중을 낮추면서 신규사업의 기획·집행 및 관리기능은 다시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출연 의존도 축소가 위원회의 실질적인 직접수행 역량 강화보다는 예산상 출연 비중을 조정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

아울러 KISA로의 출연사업 방식은 법령상 가능한 방식 중 하나일 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업을 반드시 KISA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제3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은 위탁기관으로 KISA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KISA 외 다른 전문기관을 활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신규사업에서도 기존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수행체계가 형성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기존 KISA 출연사업의 상당 부분이 KISA가 직접 수행하기보다 다시 외부기관에 용역·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도 신규사업의 수행방식을 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연·보조사업 중 피출연·보조기관이 직접 수행한 비중은 41.5%에 불과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3년 내부 검토에서도 KISA 출연 38개 내내역사업 중 약 89.5%에서 외부기관을 활용한 과업 수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⁵⁾ 재위탁 사유에는 전문업체의 전문성 활용 뿐 아니라 단순·반복업무 수행이나 KISA 자체 인력 부족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2024년에도 제도 운영·평가 지원, 서비스 운영·개선, 정책·제도 연구 등 다양한 업무에서 외부 용역·위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KISA의 기술·전문역량을 직접 활용하기보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과업은 위원회가 직접 기획·관리하고 외부용역을 활용하는 방식과 비

5) 한국행정연구원(2025.05.), “위원회 출연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안”

교하여, KISA를 중간 수행기관으로 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KISA가 단순·반복업무나 자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출연방식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사업 중 ‘고위험군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과 같이 기술적 취약성 분석과 전문적인 판단·대응이 필요한 업무는 KISA의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과업범위와 산출물을 사전에 구체화할 수 있고 KISA의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조사·연구 등의 업무까지 동일한 출연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 기존의 KISA 출연방식을 관행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위원회의 직접수행 가능성, 전문기관의 고유역량 활용 필요성, 외부용역 비중 및 다른 전문기관의 활용 가능성을 사업별로 사전에 검토하여 수행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원회가 직접 기획·관리하면서 외부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형화된 업무는 직접사업으로 편성하고, 지속적인 기술·전문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기관 출연방식을 활용하되 KISA 외 전문기관의 참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신규사업의 수행체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2. 출연사업비와 출연기관 기관운영경비를 구분한 예산편성 필요

가. 현 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등 총 19개 사업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위탁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다.

2027년도 예산안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부사업 26개 중 19개 사업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사업비 800억 9,500만원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금은 492억 2,8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61.5%를 차지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금은 2026년 403억 7,200만원에서 2027년 492억 2,800만원으로 88억 5,600만원(21.9%) 증가하였다.

나. 분석의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7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연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를 개별 출연사업비에 분산하여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연금 산정부터 교부·집행·정산까지 사업 직접경비와 기관운영경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19개 세부사업에 총 492억 2,800만원의 KISA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다. 출연금은 개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별 출연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수행으로 직접 발생하는 비용과 KISA 기관 전체의 운영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거 출연사업의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이러한 구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연사업에서는 정보통신화선료,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통합출력관리시스템 임차료 등 KISA 기관의 공통 인프라 운영과 관련된 경비 3억 9,179만원이 다수의 출연사업에 분산하여 집행되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기관 주요사업 홍보 등 기관 공통 교육·홍보비 4,671만원도 여러 출연사업에서 나누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출연사업의 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부적정 지출내용	비목	해당 사업	연간 총액
기관 공통 인프라 비용의 사업비 분할집행	소계			391,786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용역	관리용역비	7개 사업	199,520
	정보통신회선료	공공요금 및 제세	8개 사업	128,425
	공용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선스 구매	임차료	8개 사업	40,685
	대표 홈페이지 민간클라우드 인프라 이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8개 사업	4,132
	통합출력관리시스템 임차료	임차료	8개 사업	12,390
	VDI 클라우드 SW 라이선스 구매	임차료	8개 사업	4,647
	NiCloud 서비스 이용계약 갱신	임차료	8개 사업	1,987
기관 공통 교육·홍보비의 사업비 분할집행	소계			46,707
	직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용역 (ESG추진팀)	일반용역비	7개 사업	16,599
	기관 주요사업 인식제고 온라인 홍보비 (국민소통팀)	일반수용비	7개 사업	30,108

주: 해당 비목의 월별 '법인카드 자동이체(628,807,594원)' 건으로 확인 불가한 내용은 제외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이와 같은 집행사례는 2027년도 출연금 산정 단계에서 기관 공통경비와 사업별 직접 소요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통신회선, 공용 소프트웨어, 기관 공통 교육 등 KISA의 다수 사업과 조직이 함께 사용하는 경비를 개별 출연사업의 소요예산에 포함할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실제 필요한 재정규모보다 출연금이 크게 산정될 수 있고 사업별 원가와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특히 기관 공통경비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연사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를 모두 배제할 필요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라 추가 발생한 비용인지, 여러 사업에 배분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담액을 산정하였는지 등을 출연금 산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KISA가 기관 차원에서 지출하는 공통경비의 일정 비율을 여러 출연사업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개별 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여러 부처의 출연금으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통합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비용을 배분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유지보수 예산을 소관 부처별로 명확히 구분·편성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2025회계연도 집행내역에서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정보통신회선료 등 기관 공통 성격의 경비가 다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연사업에 분산하여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단순히 사후 집행기준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공통경비와 사업별 직접경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7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연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를 개별 출연사업비에 분산하여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개별 사업 수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에 한하여 객관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연금 교부 및 정산 과정에서 사업별 직접 소요 경비와 기관운영경비의 구분 여부 및 산정근거를 점검하는 등 출연사업비에 기관운영 성격의 비용이 부당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R&D 사업¹⁾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도에는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신규사업인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 등 총 5개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R&D 예산안은 총 181억 5,700만원으로, 2026년도 132억 8,000만원 대비 48억 7,700만원(36.7%) 증가하였다.

한편, 2027년도 5개 R&D 사업의 예산은 총 181억 5,700만원 전액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KISA가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과제 기획·선정·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7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1,500	2,660	2,660	1,995	△665	△25.0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	6,138	6,138	8,187	2,049	33.4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	1,482	1,482	1,975	493	33.3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R&D)	-	3,000	3,000	4,000	1,000	33.3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	-	-	-	2,000	2,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1033-305, 1033-307, 1033-308, 1033-309, 1033-310

3-1.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의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구체화 및 과제 중첩 방지 필요

가. 현 황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²⁾은 AI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규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2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	-	-	-	2,000	2,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분석의견

동 신규사업은 세부 연구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안전·사이버보안 관련 연구개발과 개발대상 및 기술영역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존 R&D 및 타 관련 사업과도 연계 가능한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구체화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과제 중첩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신규 R&D 사업인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은 AI·데이터의 생성·활용부터 삭제 및 사후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RAG 개인정보 보호·삭제증명 과제와 개인정보 전주기 모니터링 및 권리행사 지원 과제 등 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별 연구기간은 4년, 총사업비는 각 48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2) 코드: 일반회계 1033-310

[2027년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 연구과제]

구분	연구과제
사전예방형 안전 데이터· 모델 구조 설계 기술	① 검색증강생성(RAG) 프라이버시 기반 개인정보 보존형 검색(Retrieval) 및 실시간 삭제증명 (Forget-by-Design) 기술 개발
	② 글로벌 위협 대응형 개인정보 전주기 모니터링 및 주권 기반 자율 통제 기술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개인정보 보호를 AI 시스템과 서비스의 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동 사업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된 독립적인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과기정통부가 AI 안전·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서비스 안전성 검증, 사이버 위협 대응 등의 기술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결합하는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³⁾ 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된 추가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이를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① ‘검색증강생성(RAG) 프라이버시 기반 개인정보 보존형 검색 및 실시간 삭제증명’ 과제는 RAG·LLM 서비스가 기존 문서·로그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검색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필터링하고 삭제요청 시 관련 인덱스·캐시·로그에서의 삭제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공존가능한 신뢰 AI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AI 위협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핵심기술개발’ 사업에서는 LMM 생태계의 보안 위협·취약점 분석과 안전성 검증, AI 에이전트의 자율통제 및 선제적 억제, AI 서비스 전주기 평가 프레임워크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AI 모델·서비스의 위험을 분석·통제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술개발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동 과제와 개발대상 및 기술영역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RAG의 색인·검색·생성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내재화하고 삭제 이행을 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점을 차별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AI 안전·보안 연구성과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부터 AI Safety,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디지털 역기능 대응 등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안티-딥페이크, 보이스피싱 탐지·예측, AI 기반 변조 콘텐츠 탐지·차단 등 AI 활용에 따른 안전·사이버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별도로 개발하여야 할 기술이 무엇인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기존 개인정보 보호·활용 R&D 사업의 신규과제로 추진할 수 없는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시된 차별성만으로는 별도의 신규사업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사 과제 비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	공존가능한 신뢰 AI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R&D) (AI의 위험을 완화·제거하기 위한 안전 핵심기술 개발)
(과제1. 검색증강생성(RAG) 프라이버시 기반 개인정보 보존형 검색 (Retrieval) 및 실시간 삭제증명 (Forget-by-Design) 기술 개발)	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핵심 기술 개발(R&D) (AI 서비스의 개발부터 배포까지 전주기의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과제, LMM 생태계의 보안 위협 및 취약점 분석과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AI 에이전트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통제 및 선제적 억제기술 개발 등)

자료: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 사전기획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통요구자료

또한 ② ‘글로벌 위협 대응형 개인정보 전주기 모니터링 및 주권 기반 자율 통제 기술’은 기업·기관의 내부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권리요구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증빙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이다. 제시된 연구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 관리 및 법규 준수 업무를 전산화·자동화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 솔루션의 활용이나 개별 시스템의 개선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적 난제가 무엇인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처리흐름 시각화, 권리요청 자동 전파 및 이행 증빙 등의 기능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연구개발 요소와 국가 R&D를 통한 지원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솔루션의 활용·고도화 가능성과 여러 기업·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별도 연구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사전기획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기능의 내재화, 삭제증명 및 정보주체 권리행사의 기술적 구현 등을 차별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성이 별도 사업 신설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안전·사이버

보안 사업 및 위원회 기존 사업과의 세부 개발목표·기술요소·성과물을 비교하여, 기존 연구성과와 시스템으로 충족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의 대규모 기술개발 영역을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AI 모델·서비스의 위험 분석, 안전성 검증, 다크웹 분석 등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AI·사이버보안 기술개발은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와 전문성을 보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과 적용기준을 제시한 후 개발된 기술을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 실증·검증하고 정책·제도에 활용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부처 간 기능분담과 재정투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안전·사이버보안 관련 연구개발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고 위원회 자체적으로도 관련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성과 활용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포함해 동 신규사업의 차별성을 구체화하고 과제 중첩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국가 R&D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위험 분석·안전성 검증·자율통제 등의 기술을 개인정보 분야에서 별도로 중복 개발하기보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특화된 기준과 기술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에 반영·연계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간 역할분담과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2. 개인정보 R&D 전문기관의 KISA 단일 지정·운영체계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연구개발(R&D) 사업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과제비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한 기획평가관리비로 구성되며, 기획평가관리비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집행하고 과제비는 공모·평가를 통해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제4항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업무를 KISA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KISA에 집중하고 있으나, 타 부처 R&D와 기술적으로 인접한 과제가 반복적으로 기획되고 과제기획 업무의 일부가 다시 외부용역으로 수행되고 있는바, KISA 단일 전문기관 체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국가 R&D 기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전문기관은 연구비의 교부·집행관리뿐만 아니라 기술수요를 발굴하여 신규과제를 기획하고, 기존 국가 R&D와의 기술적 차별성과 중복 여부를 검토하며, 과제 선정·평가와 성과분석·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연구개발사업에서도 KISA는 전문기관으로서 사업·과제기획, 공고 및 신규과제 평가, 수행관리, 연차평가,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AI 안전,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영역이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업무의 위탁)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연구개발 간의 기술적 접점도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Safety, 디지털 딥페이크 범죄대응, 신종 보이스피싱 탐지·예측, 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AI 사이버 실드 돔 등 AI·사이버보안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상당 부분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통해 기획·평가·관리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규 R&D사업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안전·사이버보안 R&D와 개발대상 및 기술영역이 유사한 연구과제가 포함되어 있다.⁵⁾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 사업의 RAG 개인정보 보호·삭제증명 과제는 AI 모델·서비스의 위험을 분석·통제하고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존가능한 신뢰 AI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 및 ‘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핵심기술개발’ 사업에서 추진하는 AI 위험 대응, 보안 위협·취약점 분석, AI 서비스 전주기 평가 등의 기술개발 과제와 기술적 접점이 크다.

이처럼 동일하거나 인접한 기술영역을 여러 부처가 동시에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각 부처의 정책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연구개발을 기획하기보다, 국가 R&D 전체의 관점에서 기존 과제와 기술요소 및 연구성과를 비교하여 신규 기술개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판단하더라도, 그 필요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핵심기술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AI·정보보호 분야의 기존 국가 R&D를 함께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평가관리비의 편성 측면에 있어서도 KISA를 전문기관으로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KISA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과제기획·평가·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2026년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의 경우 기획평가관리비 2억 3,400만원 중 9,500만원이 ‘신규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용역’으로 편성되어 전체의 약 40.6%를 차지한다.

과제기획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나 전문용역을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에 과제기획·평가·관리를 위한 별도 재원을 출연하면서 과제기획

5) 본 보고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석의견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의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구체화 및 과제 중복 방지 필요” 참고

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다시 외부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전문기관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와 현행 기획평가관리비의 산정·수행방식이 적정한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타 부처와 기술적으로 인접한 연구과제가 계속 기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KISA에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이 부처 간 R&D를 비교·조정하고 신규과제의 기술적 추가성을 검증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인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지정 해제나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을 특정 기관에 계속 의존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특히 IITP와 같이 AI·정보보호 분야의 국가 R&D를 직접 기획·평가·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분야 신규과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사이버보안 R&D와 동일한 기술적 관점에서 비교·검토함으로써 유사·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존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기획평가관리비의 수행기관을 KISA에 한정하기보다 IITP 등 AI·정보보호 분야 국가 R&D의 기획·평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전문기관을 다변화하거나 관련 기능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신규과제의 기술적 추가성과 기존 국가 R&D와의 차별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¹⁾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7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고위험군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기초 위험지도 구축,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확산을 위한 예방활동 기반 조성 등을 추진 내용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직접수행·출연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총 42억 5,200만원으로, 예방 점검 및 활동 지원 37억 1,900만원, 예방활동 기반 조성 5억원, 개인정보 예방점검 사업 수행 경비 3,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	-	-	-	4,252	4,252	순증
예방 점검 및 활동 지원	-	-	-	3,719	3,719	순증
예방활동 기반 조성	-	-	-	500	500	순증
개인정보 예방점검 사업 수행 경비	-	-	-	33	33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기능이 서로 다른 조직과 세부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는 가운데, 신규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리시스템도 일부 실태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2034-305

점검 결과만을 중심으로 구축될 경우 위험정보를 종합적으로 축적·활용한다는 사전 예방체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바, 실태점검 기능을 일원화하거나 기존 조사·점검 결과까지 통합적으로 연계·관리하도록 사업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에 예방조정심의관 소관으로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고위험군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과 개인정보 기초 위험지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고위험군 실태점검은 본래 조사조정국이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에서 수행하던 실태점검 기능의 일부를 조직개편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이관한 것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처리·관리 실태점검, 생활밀접 분야 및 플랫폼·신기술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등 다른 실태점검·조사 기능은 여전히 조사국 소관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에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하는 유사 기능이 예방조정심의관과 조사국,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사업과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으로 분산되어 수행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 내 실태점검 과업 및 예산]

구분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	개인정보 침해방지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
	고위험군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개인정보 기초 위험지도 구축
'27 예산 편성 내역	○ 사업출연금 : 1,724,000천원 가. 실태점검 인건비 나. 실태점검 출장비 다. 실태점검 운영비 라. 점검환경 구축 ·점검 장비라이선스 등 도입비 ○ 일반연구비 : 100,000천원 가. 위험평가모델 및 점검기준 개발	○ 사업출연금 : 1,011,000천원 가. 실태점검 용역비 ·실태점검 사전검토 나. 실태점검 인건비 다. 실태점검 출장비 라. 실태점검 운영비	○ 일반용역비 : 458,000천원 가. 생활 밀접 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나. 플랫폼 및 신기술 기반서비스개인정보 분석·점검	○ 일반연구비 : 356,000천원 가.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 실태 조사·용역 ○ 일반수용비 : 10,000천원 가. 법률자문 및 실태조사 관련 각종 제작·운영	○ 사업출연금 : 700,000천원 가. 조사 방법 연구 나. 사업자 표본조사 ○ 일반연구비 : 1,195,000천원 가. 개인정보 처리실태 관리 시스템 구축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통요구자료

한편,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와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취약요인은 향후 위험군 분류와 점검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정보임에도, 조직과 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이러한 정보가 사전예방체제로 체계적으로 환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는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사업에서 새롭게 구축하려는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리시스템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동 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통합하여 위험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한 뒤 점검 결과를 다시 위험정보에 환류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신규사업에서 수행하는 표본조사와 고위험군 실태점검 결과만을 축적하고 조사국이 수행하는 기존 실태점검·모니터링 및 조사 결과를 연계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 축적되는 위험정보가 일부 점검유형과 분야에 한정되어 개인정보처리자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완결성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조사국의 실태점검에서는 실제 법 위반 여부, 침해사고 발생 여부, 안전조치 미흡사항 등 사전예방 관점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가 축적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신규 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하면서 한편에서는 별도의 위험지도를 새로 구축할 경우, 동일한 개인정보 처리위험에 관한 자료를 서로 다른 사업에서 분절적으로 수집·관리하게 되고 점검대상 선정이나 위험평가 과정에서 기존 조사·점검 결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선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과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사업에서 각각 수행하는 실태점검의 대상·목적·기준을 재검토하여 예방적 실태점검 기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태점검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취지에 맞춰 조사국의 실태조사는 예방조정심의관의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조사국의 모니터링 및 사고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위험군 분류·점검대상 선정·점검결과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규 사전예방체계가 특정 사업의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위원회 전체의 조사·점검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군 분류,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기준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의 기본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업무는 위원회의 정책·감독기능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출연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는 단순한 조사사업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떠한 요소를 위험지표로 사용할 것인지, 위험수준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사업자를 우선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향후 위원회의 점검대상과 감독방향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그럼에도 상호 연계된 과업 가운데 조사방법 연구는 KISA 출연방식으로 추진하고, 위험평가모델·점검기준 및 시스템 구축은 위원회 직접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사방법과 관리항목은 위험평가 모델과 점검기준을 바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과업을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사방법 개발과 같이 과업내용과 산출물을 사전에 특정할 수 있는 연구는 위원회가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 KISA의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위험분류체계와 점검기준 등 감독정책의 기본방향은 위원회가 직접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관리하는 것이 정책수립과 집행 간 책임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규 사전예방체계의 조사방법, 위험평가모델 및 점검기준을 하나의 정책기획 과정으로 통합하여 직접 관리하고, 전문기관 출연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술적·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는 등 사업 수행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리시스템 구축비 중 전산장비와 자산으로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일반연구비에 일괄 편성하고 있으며, 점검환경 구축을 위해 도입하려는 일부 소프트웨어도 위원회가 이미 보유한 제품 또는 신규 도입 도구 간 기능이 중복되는바, 경비 성격에 맞게 비목을 조정하고 기존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도입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리시스템 구축비 11억 9,500만원 전액을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였다.

서버 등 전산장비와 자산으로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연구비와 구분하여 자산취득비(430-01) 등 경비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개발비와 장비·소프트웨어 취득비를 일반연구비에 일괄 편성할 경우 자산취득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취득 이후 자산관리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고위험군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장비 구매(안) 내역은 사전검토·현장점검·결과분석을 위한 11종의 도구 도입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기능이 중복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기존에 X-Ways Forensics 6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데이터 정밀분석·교차검증을 위해 X-Ways 7식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개인정보·민감정보 탐지를 위한 Spirion 6억원도 기존에 보유한 SERVERFILTER 및 AIFILTER와 기능이 중첩될 소지가 있다. 저장매체의 원본 복제·검증을 위한 Falcon-NEO2 9,800만원과 위협정보 수집을 위한 Recorded Future 1억 7,500만원 역시 각각 기존 포렌식 소프트웨어와 Any.Run Enterprise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규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도구 간에도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Censys와 Rapid7은 각각 외부 노출자산 탐지와 취약점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현장점검용 Tenable One은 자산 노출과 취약점을 통합하여 진단·분석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세 제품을 각각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과분석 단계에서도 Splunk를 별도로 도입하면서 Power BI와 MS Copilot을 각각 로그 시각화 및 AI 분석 용도로 추가 편성하고 있으므로, Splunk 등 하나의 분석환경으로 해당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위원회가 구매·사용하는 만큼, 기존 보유 제품의 활용 가능성과 실제 추가 수요를 우선 확인한 후 필요한 범위에서 도입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동일·유사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사업별로 별도 구매하기보다 기관 전체의 보유 현황과 활용도를 기준으로 추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Censys, SpyCloud, Spirion, Splunk 등 상당수 도구가 연간 라이선스 방식으로 도입되는 만큼, 신규 구매는 2027년도 일회성 구축비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갱신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리시스템 구축비 중 전산 장비와 자산으로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구분하여 경비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하고, 점검환경 구축비에 대해서도 기존 보유 제품의 공동 활용 가능성과 신규 도입 도구 간 기능 중복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제품 또는 하나의 신규 솔루션으로 대체 가능한 도구는 도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금액을 2027년도 예산에서 감액함으로써 중복 취득과 향후 반복적인 라이선스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보유 장비와 2027년도 구매 예정 점검 장비 비교]

구분	도구명	기능	2027년 견적 세부내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 보유 제품
사전 검토	Censys	인터넷에 노출된 자산(서버, 장비) 탐지 * 해커의 공격표면 확인	80백만원 (연간 라이선스)	
	SpyCloud	인터넷, 다크웹에 계정·개인정보 유출 확인	80백만원 (연간 라이선스)	
	Rapid7	보안취약점 확인 * CVE(공인 취약점 번호) 기준	56백만원	
	Recorded Future	악성코드, 해킹 공격 정보 등을 수 집해 위험 정보 제공	175백만원	Any.Run Enterprise 56백만원 (악성코드·해킹 공격 정보 수집 기능 중복)
현장 점검	Tenable One	보안취약점, 자산 노출 등 위험을 통합 진단·분석	100백만원 2,100 Unit 사용료	
	Spirion	서버 등의 민감정보, 개인정보 잔존 현황 정밀 탐지, 분석	600백만원 연간 라이선스 * 현장 탐지 6식	SERVERFILTER V3.0, AIFILTER V2.0 (개인정보 탐지 기능중복)
	Falcon- NEO2	저장매체의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복제하고, 훼손여부 검증	98백만원 * 14백만원 × 7개	Magnet AXIOM Advanced, FTK 8.1, X-Ways Forensics, Forensic Explorer 각 6식 (원본 복제·훼손 검증 기능)
	X-Ways	데이터 정밀 분석·교차검증	21백만원 * 3백만원 × 7개	X-Ways Forensics 6개 39.6백만원 (동일 제품)

구분	도구명	기능	2027년 견적 세부내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 보유 제품
결과 분석	Splunk	로그 결과 통합 분석	175백만원 (연간 라이선스)	Event Log Explorer Forensic Edition 6식, 통합보안관리 APC (유사 기능)
	Power BI	로그 시각화 분석	3백만원 * 24\$(36,000원) × 12개월 × 7명	
	MS Copilot	AI를 통한 로그 분석 SW	50백만원(사용량 기준) * 서버/장비당 약 15일 x 150개(현장점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사업의 'AX 플랫폼 구축 및 정보시스템 통합' ISP의 추진시기 및 과업범위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¹⁾는 내부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와 국민·기업 대상 개인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정보화 체계 구축' 내역사업에 18억 8,5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중 7억 9,400만원은 AX 플랫폼 구축 및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이다.

동 ISP는 분산된 개인정보 규제지식을 통합한 '개인정보 규제지식 아카이브' 구축과 AX 플랫폼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통합·재설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7년도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2,042	2,171	2,171	5,497	3,326	153.2
정보화 체계 구축	-	-	-	1,885	1,885	순증
정보화 체계 유지관리	970	1,098	1,098	1,906	808	73.6
정보화업무지원	44	45	45	45	0	0.0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운영	1,028	1,028	1,028	1,661	633	61.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규 시스템 구축과 기존 시스템의 재구축·기능개선을 통합 ISP와 같은 시기에 별도로 추진하면서도 통합 검토범위와 예산 산정근거를 충분히 구체화하지 않은바, 현 단계에서 통합 ISP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추진을 유보하고, 기존 구축·개선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후 시스템별 통합 필요성과 ISP 추진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에 AX 플랫폼 구축 및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ISP 수립비 7억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동 ISP는 현재 운영 중인 15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스템 간 연계·통합 및 AX 기반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²⁾

[AX 플랫폼 구축 및 정보시스템 통합 대상이 되는 위원회 시스템 목록]

(단위: 명, 백만원)

내(내역) 명	시스템명	'26년 이용자 수	'26년 운영비	
정보화체계 유지관리	1. 업무포털	101,014	HW·SW	181
	2. 안전관리시스템	65,655	갱신 및 이용료	11
	3. 대표홈페이지(국문/영문)	17,310,257	클라우드 이용료	-
	4. 분쟁조정시스템	(내부) 2,614 (외부) 111,092	인건비	346
개인정보보호지원 시스템 운영	5. 개인정보포털	8,140,271	HW·SW	92
	6. 개인정보배움터	2,532,753	갱신 및 이용료	237
	7. 개인정보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4,902	클라우드 이용료	-
	8.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350,892	인건비	699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기능 개발·운영	9.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내부) 60, (외부) 4,275	유지보수비	295
			HW·SW	490
			클라우드 이용료	-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원)	10. AI 개인정보 침해평가시스템	1,600	SW	3
			유지보수비	189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초 기존 15개 정보시스템을 통합 검토대상으로 제시하였으나, 신규 시스템과의 연계·통합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시된 이후 2027년 신규 구축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현황·이력 관리시스템도 통합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단위: 명, 백만원)

내(내역) 명	시스템명	'26년 이용자 수	'26년 운영비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체계운영	11.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	-	시스템 운영	530
			H/W·S/W	400
	12. 탈린 내 정보찾기	506,786	통신망	220
개인정보 침해신고 시스템 운영	13.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027,222	유지보수 용역비	67
			시스템 운영 경비	50
			HW·SW	50
가명정보 활용지원시스템 운영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운영)	14.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27,139	HW·SW	220
			IDC 이용비	180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	15.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328,705	SW	772
			갱신 및 이용료	713
			클라우드 이용료	1,941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① 통합 ISP와 개별 정보화사업의 동시 추진에 따른 ISP 실효성 문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P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통합·재설계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같은 시기에 신규 시스템 구축과 기존 시스템의 재구축·기능개선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ISP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위원회가 당초 제시한 기존 15개 통합 검토대상 중 일부는 ISP 수립과 별개로 2027년에 재구축·기능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주체권리행사 연계지원 시스템은 6억 9,200만원을 들여 재구축하고, 안전관리시스템과 분쟁조정시스템에는 총 3억 9,900만원의 기능개선비를 별도로 편성하였다. 위원회는 ISP를 통해 개별 시스템의 효율성·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통합 또는 독립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나, 재구축·기능개선이 ISP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면 현황분석 이후에도 대상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ISP의 검토 결과와 사업 완료 후 실제 시스템 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2027년도에는 개인정보 처리실태 관리시스템 11억 9,500만원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현황·이력 관리시스템 2억 700만원 등 신규 시스템의 구축도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CPO 현황·이력 관리시스템도 통합대상으로 고

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신규 시스템의 구축과 통합 여부 검토가 같은 시기에 진행 된다는 점에서 추진 순서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구축 과정에서 기능과 구조가 구체화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기능 중복도와 연계성, 독립 운영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경우, 검토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2027년에 신규 구축되거나 별도로 재구축·기능개선이 추진되는 시스템 관련 예산은 총 24억 9,300만원이며, 이 중 일부 시스템은 통합 검토대상에도 포함되어 있다. 개별 시스템의 구축·개선과 통합 여부 검토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기능과 구조가 변경되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통합방향을 설계하게 되어 ISP 결과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2027년도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재구축·기능개선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시스템명	통합 ISP 대상 여부	구축연도	'27 예산안
재구축	위원회정보화 지원(정보화)	정보주체권리행사 연계지원 시스템 재구축	통합 고려대상	2021	692
		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2020	399
		분쟁조정시스템 기능개선		2016	
소계					1,091
신규 구축	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실태 관리시스템	미포함	2027 (신규)	1,195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시스템 운영(정보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현황·이력 관리시스템	통합 고려대상	2027 (신규)	207
소계					1,402
합계					2,493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② ISP 과업범위 및 예산 산정근거 불명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 검토대상과 세부 과업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은 채 ISP 수립비 7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업무량과 소요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위원회는 현재 통합 검토 중인 시스템 가운데 실제 통합대상은 ISP 과정에서 효율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고, 통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효과도 이후 산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통합방식은 ISP에서 정하더라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최소한 어떤 시스템을 어떤 목적으로 연계·통합하려는지, 검토대상의 포함·제외 기준은 무엇인지, 개별 구축사업과는 어떤 관계인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동 ISP 예산은 대상 시스템 수와 수행업무의 범위에 따라 소요 업무량을 산정하는 '컨설팅 업무량 방식'으로 산출되었으므로, 검토대상 업무·시스템의 범위와 세부 과업별 투입공수 등 산정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ISP에는 AX 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과 기존 시스템의 통합·재설계 등 성격이 서로 다른 과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통합 검토대상인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이미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 중이며 2026년 기준 클라우드 이용료로 19억 4,100만원이 소요된다. 반면 동 사업의 AX 플랫폼은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이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클라우드 환경을 유지하면서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연계할 것인지, 기존 시스템의 운영환경까지 변경할 것인지 등 통합의 범위와 방향이 불명확하고, 이에 따라 ISP에서 검토할 과업과 소요 업무량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AX 플랫폼 영역의 '개인정보 규제지식 아카이브'와 AI 기반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과제 공모에 제안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사업과 내용이 같다. 당시 위원회는 별도 ISP 없이 9개월간 18억원으로 직접 구축하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목표시스템의 세부기능, 추진일정, 항목별 사업비까지 구체화한 바 있다.

[2026년 공모 제안서와 2027년 ISP 요구내용 비교]

구분	2026년 공모 제안서 (미선정)	2027년 ISP 요구
사업 방식	직접 구축(9개월)	ISP 수립 후 구축
소요 비용	구축비 1,800백만원	ISP 794백만원 (총사업비 약 100억원 규모로 추정)
규제지식 아카이브	포함 (데이터 정비·표준화 600백만원)	포함
AI 활용	범정부 AI 공통기반 이용 (이용료 300백만원)	범정부 AI 공통기반 이용 (AX 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모델 구축)
기존 시스템 통합	없음	포함
기획 수준	목표시스템 개념도, 계층별 세부기능, 추진일정, 항목별 사업비 제시	AX 플랫폼 ISP (목표시스템 개념도, 주요기능), 정보시스템 통합 ISP (종합지원 서비스 모델)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런데 위원회는 당초 18억원으로 구축하려던 AX 플랫폼에 기존 정보시스템 통합을 추가하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약 1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별도의 ISP 수립비 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기존 AX 플랫폼의 기능과 구축범위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기존 시스템의 통합을 위해 어떠한 과업과 비용이 추가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통합할 것인지도 불명확하여, 기존 구축계획과 비교해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별도의 ISP를 추진할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③ 최근 구축 시스템의 재설계 필요성 검토 부족

동 사업의 통합 검토대상에는 최근 구축되었거나 현재 구축 중인 시스템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 구축성과를 충분히 확인한 후 동 사업을 통한 추가적인 통합·재설계의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2024~2026년에 걸쳐 구축 중이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은 2024년,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은 2023~2024년에 구축되었다. 이들 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운영기간이 짧아 운영성과와 시스템 간 연계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스템을 다시 통합·재설계 대상에 포함할 경우, 기존 구축사업에 이어 단기간 내에 추가적인 정보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포털,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및 개인정보배움터는 2022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대민서비스 창구를 이미 단일화하였고 유지보수도 통합하여 수행 중인바, 추가적인 통합·재설계를 통해 어떠한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³⁾

아울러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도 2027년에 별도의 재구축·기능개선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해당 투자를 통해 개선된 기능과 운영성과를 확인한 후 추가적인 통합·재설계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구축되었거나 현재 구축·개선 중인 시스템은 일정 기간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별 통합 필요성과 검토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별 시스템의 구축·재구축이 진행 중이고 통합 검토범위도 구체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27년도 통합 ISP 추진을 유보하고 수립비 7억 9,4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개별 시스템의 구축·개선 결과와 일정 기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시스템별 통합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 기획내용의 활용 가능성을 반영하여 ISP 과업범위와 소요비용을 재산정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개인정보포털은 2022년 '개인정보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차)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민서비스를 단일창구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2023년 3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개인정보배움터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통합포털 운영' 사업을 통해 유지보수가 통합 수행되고 있다.

개인정보 교육 지원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및 제28조²⁾ 등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처리 실무 및 보호체계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취약계층 등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가명·익명처리 전문인력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7년도 개인정보 교육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개인정보 교육 지원	1,133	1,284	1,284	1,056	△228	△17.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1031-30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1. 개인정보 교육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자부담 도입 검토 필요

가. 현 황

개인정보 교육 지원의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에는 공공·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자 수준별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수준별 교육의 2027년도 예산안은 3억 1,500만원으로 2026년도 4억 2,500만원 대비 1억 1,000만원 감액 편성되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에는 가명·익명처리 전문인력 양성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대상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교육의 2027년도 예산안은 각각 3억 3,400만원과 8,100만원이다.

[2027년도 개인정보 교육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개인정보 교육 지원	1,133	1,284	1,284	1,056	△228	△17.8
개인정보보호 교육	635	785	785	575	△210	△26.8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498	499	499	481	△18	△3.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수요와 교육내용의 고도화 필요성이 지속될 것을 고려하여, 전액 재정지원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교육대상과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자부담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등 전문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AI·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관련 위험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CPO에게는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점검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보호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CPO가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조사·개선,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CPO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CPO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역시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예방적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법 및 개정법상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직무 변화]

구분	개정 전	현행법 (2026. 9. 11. 시행)	비고
CPO의 역할 정의 (제1항)	개인정보 <u>처리</u> 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자	개인정보 <u>처리</u> 및 <u>보호</u> 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할 자	“보호” 업무 명시
지정 절차 (제3항 신설)	별도 규정 없음	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정·변경·해제 (법인에 한정) ② 보호위원회에 지정·변경·해제 신고 의무	신설 규정
독립성 보장 (제7항)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익 금지, 독립적 업무 수행 보장	(현행과 동일하되) 인력·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권 부여로 실질적 독립성·권한 강화	직무 신설을 통한 실효성 제고
위임사항 (제10항)	자격요건 업무, 독립성 보장 등	자격요건, 신고 방법·절차, 업무, 독립성 보장 등	신고 절차 관련 위임 근거 추가

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는 2026년 3월 개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1일 시행됨

자료: 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2024년에는 CPO 직무의 이해, 국내외 법령 및 제도, 개인정보 처리단계 관리, 유출사고 대응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

으나, 2025년에는 개인정보 거버넌스,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CPO 우수사례 토론 등을 추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구축·운영,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개인정보 유출사례 심층 분석, 유출사고 시나리오 및 대응 실습 등 실무·전문교육을 확대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과정 커리큘럼]

구분	2024	2025	2026
Basic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O 직무의 이해 · 국내외 법령 및 제도 · 개인정보 처리단계 관리 방안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 정보주체 권리 보장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보호 방안 · 클라우드 개인정보 위협 동향 및 보호 ·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O 직무의 이해 · 국내외 법령 및 제도 · 개인정보 처리단계 관리 방안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보호 방안 · 클라우드 개인정보 위협 동향 ·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 최신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 정책 환경 변화와 CPO 역할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방안 · 정보주체 권리 보장 (보호, 활용 권리)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전략(사례, 과징금 부과 등) · 개인정보 활용체계 구축 (마케팅, 가명정보 등) ·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구축·운영
Advanced (심화)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 CPO 업무 시 고려사항 · 가명정보 처리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실습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p>(공공기관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준진단 제도 · 개인정보 보호 특례 · 개인정보 파일 작성 및 관리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O가 알아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이해 · 개인정보 유출사례 ·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 CPO 주요업무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실습 · CPO 우수사례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 정책 환경 변화 및 CPO의 역할 ·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구축·운영 · 개인정보 활용 체계 구축 및 사례(AI 특례 등) · <u>개인정보 유출사례 심층 분석</u> · <u>개인정보 유출사고 시나리오의 이해</u> · <u>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실습</u>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히 유출사고 대응 실습이나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관련 전문교육은 온라인 교육만으로 충분한 교육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워 대면·실습형 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에 따라 전문강사 확보와 실습환경 조성 등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와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내용이 실무·실습 및 전문교육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기존 커리큘럼의 개편 및 전문강사 확보 등에 지속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7년도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예산안은 4억 8,100만원으로 2026년도 4억 9,900만원 대비 1,800만원(3.6%) 감액 편성되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교육이수자를 오프라인 실습교육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나, 교육방식의 조정만으로 교육 수요 확대에 대응하면서 교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교육과정의 확대와 품질 제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액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현행 재원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른 부처의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사업에서도 정부가 교육비 전액을 부담하기보다 교육생이나 참여·수행기관에 일정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K-Digital Training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과정보로 교육생에게 일정한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부의 일부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운영단체 또는 수행기관에 일정 비율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AI 기반 방송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2027년부터 자부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부담 있는 정부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 사업]

사업	과정	소관(전담기관)	비용 부담
K-Digital Training	AI·반도체 등 디지털·첨단 분야	고용노동부	(훈련생 부담 / 구직자, 재직자는 단기과정) 훈련비 90% 이상 국비 지원, 자부담은 훈련비 구간별 10% 또는 30만~60만원
AI 디지털 기반 미디어융합인재	AI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융합인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 2027년부터 재직자 교육 20% 자부담 적용 검토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플랜트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고용노동부	(훈련생 부담/ 구직자) KDT와 같은 구간별 자부담(최대 60만원)
미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미술 교육·연수 과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단체 부담/ 대학·협회) 국고보조금 대비 10% 자부담 편성 필수, 단체당 연 최대 1.4억원 지원
특화단지 재직자교육	반도체 등 특화단지 재직자 교육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기관 부담/ 특화단지 기업 재직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대비 10% 이상 기관부담 매칭,
한국형 퀵스타트 (Quick Start) 프로그램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기업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인당 275만원 이내, 매칭된 지방비·참여기업 부담금으로 교육 운영

자료: 각 부처(수행기관) 공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처럼 전문인력 양성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정부가 상당 부분을 지원하면서도 사업의 성격과 교육대상 등에 따라 교육생 또는 참여기관이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3)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역량 확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CPO 전문교육을 통해 향상된 역량 역시 해당 CPO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위험 대응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역량 강화에 필요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 교육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교육은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자 간 보호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적 기능도 있으므로, 모든 교육대상에 일률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비용부담 능력, 교육과정의 전문성 및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수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PO 전문교육의 지속적인 전문화·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소요비용과 민간 전문교육의 비용부담 수준 등을 조사하고, 중소·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현행 재정지원을 유지하거나 자부담을 감면하되 일정한 비용부담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소속 CPO 등에 대해서는 실무·실습 및 전문기술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차등적인 자부담 체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증가하고 AI를 활용한 해킹 등 침해위험이 고도화 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역량 강화는 개별 기관의 자율적인 교육 참여에만 맡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유출 시 피해가 클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CPO 등 핵심 인력의 정기적인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2. 교육사업 용역의 계약금액 산정·관리체계 및 수행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개인정보 교육 지원 사업 중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출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세부 교육 분야와 과업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운영,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구분하여 외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7년도 사업 예산안은 10억 5,600만원이며, 이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금은 9억 9,000만원이다. 교육 관련 용역계약 금액은 2025년 9억 5,020만원, 2026년 9억 7,153만원으로, 각 연도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외부 용역에 활용하고 있다.

[2027년도 개인정보 교육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개인정보 교육 지원 사업	1,134	1,284	1,056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금	1,068	1,218	990
용역계약 금액 합계	950	971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용역계약은 2021년 개인정보 보호·가명처리 통합교육 개발·운영 1건에서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2025년 각각 3건으로 구분하여 체결되었다.

계약업체는 2021~2025년 모두 씨드젠이며, 2026년에는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은 씨드젠이, 나머지 교육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상상앤컴퍼니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교육 분야별 용역과제 및 계약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용역 과제명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개인정보 보호·가명처리	864.6	-	-	-	-	-
통합교육 개발·운영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전문가 풀 운영	-	478.5	577.5	321.00*	331	332.53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발·운영	-	484.99*	455.62*	546.59	452	639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	323.40*	265.87*	169.73	167.2	-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개발·운영	-	-	146.3	-	-	-
합계	864.6	1,286.89	1,445.29	1,037.32	950.2	971.53
계약업체	씨드젠	씨드젠	씨드젠	씨드젠	씨드젠	씨드젠 / 한국개인정보 보호책임자협 의회·상상앤 컴퍼니

주: 1. 제출자료의 '내내역 이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용역명은 축약함

2.*는 단일응찰에 따른 유찰 후 수의계약을 의미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교육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수행하면서 총액확정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의 집행내역이나 이에 준하는 정산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관리하지 않고 있는바, 2027년도 용역 계약부터 주요 비용항목의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보완하고 이를 향후 교육사업의 적정 소요예산 및 계약금액 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교육 등의 운영을 외부 용역사와 총액확정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강사비, 교육운영비, 교재·콘텐츠 제작비 등을 반영한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조달청의 원가산정 절차를 통해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과업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

서를 통해 교육횟수와 교육인원 등 계약상 과업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 종료 후 계약 당시 산출한 각 비용항목이 실제 사업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에 관한 정산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사비, 교육운영비, 콘텐츠 제작비 등의 실제 소요수준과 계약 당시 산정액 간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보가 차년도 예산 및 용역계약 금액 산정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 교육사업은 동일·유사한 교육과정이 매년 반복적으로 용역 발주되고 있음에도 상당 기간 동일 업체가 계속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관련 용역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동일 업체가 계속 수행하였고, 개인정보 처리자·정보주체 및 전문관리자 대상 교육 역시 2021~2025년 주요 용역을 동일 업체가 수행하였다. 이처럼 동일·유사한 과업을 매년 반복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계약의 실제 투입인력과 비용, 과업별 소요수준 등을 분석하여 차년도 산출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비용정보에 대한 사후 검증 없이 동일·유사한 용역을 매년 반복할 경우, 과업내용이나 교육방식의 변화에 따른 적정 비용을 새롭게 산정하기보다 기존 계약금액과 산출기준이 관행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동 교육용역의 정산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총액확정계약의 경우 사후 정산 방식이 의무가 아니므로 별도의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⁴⁾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역사가 계약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비목별 실제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사업 수행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확정계약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계약문서에 따라 일부 비목을 사후정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별로 정산대상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⁵⁾ 더욱이 계약금액을 실제 지출액에 따라 사후정산할 의무가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그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는 입찰 전에 추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총액확정계약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정산의무가 없으며, (구)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및 계약서에서 일부 비목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국가계약은 계약상대자의 실제 비용지출내역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사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없다는 것과, 사업이 계약내용 및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관리하는 것은 구분하여야 한다. 사후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상 과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 용역의 계약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적용되며,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15조는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하나이며, 산출내역서상 투입 요소(강사 수·등급, 교육 횟수·인원, 교재 등)가 계약대로 실제 투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실비 정산이 아니라 이행 검사의 범위에 해당한다. 반면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는 산출물 중심으로 사업 수행상황을 보여줄 뿐이어서, 계약 당시 산정한 단가와 투입량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제3호)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제4호) 하고 있다. 동 법 제85조의2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개별 용역의 비목별 실제 집행내역 제출을 직접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되어 위탁 집행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소관 중앙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탁기관을 통하여 집행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관리 및 예산편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비목별 투입실적 보고 의무를 미리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비용정보가 관리되지 않으면 각 비용항목이 반복적으로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고 있는지, 교육과정이나 운영방식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어느 정

5) 총액확정계약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계약문서에서 사후정산하도록 정한 비목은 정산하여야 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 대가 지급 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를 차년도 사업비 및 용역계약 금액 산정에 활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단순한 법령 전달 중심에서 AI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유출사고 대응 및 실습 등 전문·실무교육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강사 활용, 대면·실습교육 운영 등 교육방식의 변화에 따른 적정 소요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⁶⁾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7년도 개인정보 교육사업의 용역계약 체결 시 강사비, 교육운영비, 교재·콘텐츠 제작비 등 주요 비용항목의 실제 투입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자료를 결과보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계약조건을 보완하고, 이를 추적·분석하여 향후 교육과정별 소요예산과 용역계약 금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6) 동 사업의 '6-1. 개인정보 교육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자부담 도입 검토 필요' 분석의견 참조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의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AX·결합지원 기능의 단계적 확대 필요

가. 현 황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²⁾ 및 제28조의3 등에 근거하여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결합·반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기술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가명정보 활용 실태조사,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가명정보 관련 제도·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가명정보 제도운영’과 전문인력 공급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설·분석도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7년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2,528	3,164	3,164	4,140	976	30.8
가명정보 제도운영	314	314	314	315	1	0.3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 운영	2,214	2,850	2,850	3,825	975	34.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1032-30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가명처리 등 주요 지원기능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실제 수요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AX 및 결합지원 기능 강화에 9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 단계에서 기능 확충을 추진하기보다 실제 이용수요와 지원실적 등을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센터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컨설팅, 교육·실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7년도에는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4억 2,700만원, 지역센터 운영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의 AX 및 결합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9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예산 편성 현황]

2026년 예산 산출내역	2027년 예산(안) 산출내역
○ 사업출연금(350-02) : 727,000천원 가.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 427,000천원 = 1개소 × 427,000천원 나.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지원 : 300,000천원 = 3개소 × 100,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1,702,000천원 가.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 427,000천원 = 1개소 × 427,000천원 나.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지원 : 300,000천원 = 3개소 × 100,000천원 다.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AX 및 결합지원 기능 강화 : 975,000천원 ·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AX지원 : 600,000천원 = 3개소 × 200,000천원 ·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결합지원 기능 강화 : 375,000천원 = 1개소 × 375,000천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통요구자료

신규 편성된 9억 7,500만원은 서울 및 지역센터 3곳에 AX 기능을 도입하여 가명 및 결합처리를 텍스트 중심에서 영상·음성·이미지 등 비정형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X 전환에 따라 비정형데이터의 활용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지역센터에서도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의 기존 주요 지원기능에 대한 이용실적은 센터별로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실적 현황]

(단위: 건, 명)

지역	지원 실적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서울	가명처리	8	16	25	17	15
	적정성 검토	2	3	15	9	10
	컨설팅	12	13	38	40	30
	교육/실습	76 / 489	62 / 409	63 / 518	77 / 484	52 / 608
강원	가명처리	10	6	17	7	3
	적정성 검토	7	14	21	8	3
	컨설팅	17	35	60	59	17
	교육/실습	9 / 237	31 / 1,333	27 / 842	14 / 365	4 / 275
부산	가명처리	2	8	9	13	15
	적정성 검토	1	3	10	10	14
	컨설팅	8	17	34	43	27
	교육/실습	8 / 99	21 / 1,098	17 / 214	13 / 293	6 / 180
인천	가명처리	-	2	3	2	2
	적정성 검토	-	1	2	1	2
	컨설팅	-	10	14	21	26
	교육/실습	-	0	7 / 557	7 / 233	4 / 315
대전	가명처리	-	0	4	10	1
	적정성 검토	-	0	8	6	3
	컨설팅	-	1	19	48	7
	교육/실습	-	3 / 52	9 / 283	11 / 425	6 / 237
대구	가명처리	-	-	7	38	15
	적정성 검토	-	-	1	31	4
	컨설팅	-	-	11	28	15
	교육/실습	-	-	11 / 252	13 / 263	11 / 121
전북	가명처리	-	-	0	2	1
	적정성 검토	-	-	0	6	3
	컨설팅	-	-	6	10	7
	교육/실습	-	-	8 / 167	13 / 250	4 / 11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컨설팅 등 간접적인 지원활동을 제외하고 실제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등 센터의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2025년 전국 7개 센터의 가명처리 실적은 총 89건, 적정성 검토는 71건으로, 센터당 연평균 각각 약 13건, 10건 수준이다.

특히 AX 및 결합지원 기능 강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서울·강원·부산·대전의 2025년 가명처리 실적도 각각 17건, 7건, 13건, 10건에 그쳐 기존 기능의 활용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2026년 8월까지의 실적 역시 강원 3건, 대전 1건 등 일부 대상지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능 강화 대상지역에서도 기존 가명처리 기능의 활용실적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AX 기능 강화를 뒷받침할 대상지역별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수요도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³⁾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명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AI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다. 가명정보의 활용 필요성 자체가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별도의 제도적 경로가 추가된 만큼 동일한 활용목적에 대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수요와 관련 인프라 확충의 상대적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편성된 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7억 2,700만원인 상황에서 이를 상회하는 9억 7,500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4개 센터에 AX 및 결합지원 기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재정투입의 필요성과 규모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특히 관련 기능과 인프라를 일단 구축할 경우 향후 유지관리와 기능 고도화를 위한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구축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AX 및 결합지원 기능 강화의 대상지역, 사업범위 및 예산규모를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플랫폼을 통해 비정형데이터 처리 관련 문의가 접수되고 있으며, 생성형 AI와 멀티모달 AI의 확산에 따라 비정형데이터의 활용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센터의 관련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정보화)¹⁾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²⁾ 및 제35조의4³⁾ 등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전송·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1) 코드: 일반회계 1032-305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송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과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년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사업 예산안은 97억 3,900만원으로, 2026년도 예산 115억 4,000만원 대비 18억 100만원(15.6%) 감액 편성되었다. 이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고도화가 2026년에 완료됨에 따라 2026년도에 편성되었던 플랫폼 구축 예산 27억 5,000만원이 2027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한 마이데이터 산업 간 연계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 등 계속사업의 예산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이 중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과 마이데이터 국민 포럼 및 사회적 활용 모델 실증 등을 포함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간 연계체계 구축 내역사업은 2026년 41억 9,400만원에서 2027년 46억 3,200만원으로 4억 3,800만원(10.4%) 증가하였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에는 9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개 과제를 과제당 3억 4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에는 마이데이터 국민 포럼 및 사회적 활용 모델 실증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하여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 참여 포럼과 인식조사·리빙랩 운영 등에 1억 5,000만원, 사회적 난제 해결·이익공유·AI 활용 등 마이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모델 3개 발굴·실증에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정보화)	12,028	11,540	11,540	9,739	△1,801	△15.6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4,670	4,194	4,194	4,632	438	10.4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1,380	1,170	1,170	1,329	159	13.6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3,765	2,750	2,750	-	△2,750	순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	2,213	3,426	3,426	3,778	352	10.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내역사업은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분야의 확대가 지연되면서 지원과제가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 집중되고 동일 사업자의 반복 참여도 나타나고 있는바, 2027년도에는 교육·고용·복지(돌봄) 등 신규 분야에 각각 1개 과제를 지원하되, 개별 기업의 서비스 기능 개발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초기 새로운 활용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민간기업·기관의 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도에도 9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3개 과제를 과제당 3억 400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2027년 예산안 산출내역]

산출내역
○ 사업출연금(350-02) : 912,000천원 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 912,000천원 ※ 304,000천원 × 3식 = 912,000천원 *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1식당 산출 근거(30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258.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인건비 : 80,786천원 - 제경비: 114.7백만원(직접인건비 × 142%) - 기술료: 39.1백만원((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부가세: 23.5백만원((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10%) ■ 회선 및 임차료: 19.4백만원 (12,000천원(1백/1M × 2중화 × 6개월) + 7,440천원(0.62백/월 × 2백 × 6개월)) ■ 장비비(클라우드 이용료) : 26.6백만원 (4,440천원 × 6개월)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러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선정된 선도서비스 17개 과제 중 의료 분야가 11개, 통신 분야가 4개(의료 분야와 중복 1개), 에너지 분야 2개, 자율(여행) 분야 1개로, 대부분 의료·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원분야 편중은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범위 확대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

부는 2023년 8월 관계부처 합동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보건의료, 복지, 통신·인터넷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교통, 여가를 10대 중점부문으로 선정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전송요구권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송 가능 정보의 범위와 정보전송자 기준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제도 시행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선도서비스의 지원분야 확대도 당초 계획보다 순연되고 있다. 2026년 10월 현재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 확대 예정이었던 교육·고용 분야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단계에 있다.

[마이데이터 10대 중점분야 단계별 확대 계획 대비 추진 현황]

단계	연도	분야	추진 현황
1단계	2025	의료, 통신	시행 완료
2단계	2026	에너지	시행 완료
		교육, 고용	입법예고 (2026. 6. 30.~8. 10.)
3단계	2027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미정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027년도에는 기존 지원이 집중된 분야에서 유사 서비스를 추가 선정하기보다 신규 분야의 새로운 활용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분야별 제도 시행과 실제 데이터 전송 여건을 확인하여,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구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원분야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자의 반복 참여도 나타나고 있다. NICE 평가정보는 2024년 선도서비스에 참여한 이후 2026년에도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의 주관기관으로 다시 선정되었으며, 2024년 과제를 수행한 톨루메딕도 2025년 별도의 의료 분야 과제에 다시 선정된 바 있다. 개별 사업자의 재참여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선도서비스 사업이 새로운 분야와 활용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기존 참여기업의 서비스 기능 확충에 지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 분야의 활용사례와 기존 지원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019년부터 의료·금융·교통·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개별 민간서비스의 개발·실증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과 지원 필요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선도서비스 지원은 개별 기업의 서비스 기능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는 활용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에 별도로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국민참여 혁신포럼 및 사회적 활용모델 실증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혁신포럼을 통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우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난제 해결·이익공유·AI 활용 등을 위한 사회적 활용모델 3개에 12억원을 투입하여 개발·실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2027년에는 신규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국민참여 혁신포럼 및 사회적 활용모델 실증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수요와 분야 간 데이터 융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실제 활용가능한 데이터 분야가 확대되면, 여기에서 발굴된 수요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융합 분야의 후속 과제를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선도서비스 3개 과제를 신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국민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실제 이용실적과 이용자 편익을 바탕으로 지원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4~2026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과제 및 분야 현황]

구분	사업자명	분야	서비스명
2024	룰루메딕	의료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해외 의료 서비스
	KTOA 컨소시엄	통신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서비스
	가톨릭중앙 의료원 컨소시엄	의료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중증 이환 예측 서비스
	NICE평가정보 컨소시엄	자율 (여행)	마이데이터로 떠나는 여행지원 서비스
	카카오헬스케어	의료	건강정보고속도로를 활용한 똑똑한 약물 비서 서비스
2025	룰루메딕	의료	(과제 중단)
	(주)메라키플레이스	의료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초개인화된 AI 솔루션
	삼성의료재단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라이프프로그램 약품 제공
	(주)메디에이지	의료	건강지표 기반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주식회사 웰로	의료· 통신	전국민·소상공인 대상 정책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2026	에스씨지랩	에너지	전기·가스 통합 가계 맞춤형 에너지 관리 서비스 제공
	NICE평가정보	에너지 (금융)	전기·가스 요금 납부 기록을 활용한 신용 점수 올리기 서비스
	뱅크샐러드	의료 (건강)	누적 시계열 의료데이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서비스 제공
	솔티랩코리아	의료 (건강)	On-Device PDS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 행동변화 유도형 챗봇·리워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당뇨병 환자 지원 서비스 고도화
	솔닥 컨소시엄	의료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 기반 의원급 전자 의무기록(EMR) 시스템 고도화
	현대그린푸드	의료 (돌봄)	의료·라이프로그 데이터 융합 기반 재가 중심 고령자 통합 돌봄·영양케어 서비스 제공
	오경컴텍	통신	마이데이터·AI 기반 가계통신비 절감 및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아정네트웍스	통신	마이데이터 기반의 시니어 통신비 컨설팅 서비스 개발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2672·1535)

ISSN 3058-6224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